

입법평가 연구 09-16-□□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Evaluation on Legislation of Establish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연구자 : 이준섭(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ee, Jun-Seob

정태용(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eong, Tae-Yong

소병천(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o, Byung-Chun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Kang, Hyun-Cheol

2009. 9. 30.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법제를 입법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체 수에서 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9%이상을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구조에 있어서의 중요성 역시 배가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구조라는 큰 화두 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배려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의 수는 약 16여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상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들이 중소기업의 경영과 운영에 있어서 관련이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법제들이 중소기업의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나 필수불가결하게 규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이러한 법률들을 입법평가를 하고 있다. 연구의 효율성 차원에서 16개 법률을 모두 입법평가하는 대신 1) 중소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 2) 벤처기업 창업 및 활동의 확대, 3)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4)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을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법(제22조, 제23조, 제292조, 제382조, 제383조 및 제409조), 상업등기법(제80조), 공증인법(제63조 및 제66조의2),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제11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33조) 동법 시행령(제9조 및 제20조)을 입법평가하였다. 또한 입법평가의 방법으로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공식 통계자료의 활용, 전문가 워크숍의 개최, 수범자 설문조사와 같은 방

법론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는 상기의 입법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1) 상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지역 내에서의 동일·유사상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규제개선 차원에서 중소기업이 법인설립에 의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사상호의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적 범위를 좁히거나 혹은 사용가능한 지역적 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규정을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2) 상법 제292조와 상법등기법 제80조, 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는 법인설립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을 설립등기의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으며 이들 서류에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고 있으나 자본금 10억 미만 규모회사의 면제기준을 철폐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창업시에는 위의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3) 상법 제382조 및 제383조는 이사의 선임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사의 원수를 최소 3인 이상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다만 10억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억 이상의 자본금규모를 가진 상법상의 중소기업 규모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필수적으로 감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상황을 벗어나도록 개정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제18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실험실공장의 특례규정도 실험실공장의 설치요건을 현재 보다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은 벤처기업이 창업보육센터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설립 및 제조

시설설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6) 창업지원 절차와 관련하여 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장기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설립 승인제도와 일원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7)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지출지원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자금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 제한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8)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 요건인 자본납입금 5000만원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을 제안한다. 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인 자본납입금 50억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을 제안한다.

※ 키워드 : 중소기업창업, 입법평가, 중소기업상담회사, 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Abstract

This research explores legal system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stablishment with evaluation point of view. More than 99% of total enterprise ar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which have less than 300 employees; moreover, they are the foundation of total industries. There are more than 16 laws relating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most of them aim to support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owever, those laws and regulations provide some regulation burden to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or this background, this paper evaluate the regulations in order to check the impacts of the regulation and make a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This research puts limitations on the scope of the laws and regulation for efficiency and clarification of the research. The research theme include 1) simplification of establishment procedures, 2) venture business establishment and stretching functions, 3) supporting establishment and establishment investment corporation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4) register requirements of consulting corporation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5) register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investment corporations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subject of evaluated laws and regulations are Commercial Laws(art. 22, 23, 292, 382, 383 and 409), Commercial Registration Laws(art. 80), Notary Laws(art. 63 and 66-2), Venture Business Rearing Measure Special Acts(art.11-2, 17-4, 18-2 and 18-3),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stablishment Supporting Acts and its Regulations(art. 15, 17, 20, 21, and 33; art. 9 and 20). This research takes post-evaluation methods and makes uses of official statistics data, experts workshops, and questionnaire examination.

This research brings to a conclusion as following; 1) it is necessary to eliminate or lessen the restriction of uses of firm titles in the same province such as metropolitan area, city bounce and county in order to open the fence of the entry markets, 2) criteria of amount of capital, a billion, which excludes from many requirement in establishing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ch as notarization of registries papers and numbers of executive boards, should be also mitigated, 3)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business scope of the new technology expert corporations in the article 11-2 of the Venture Business Rearing Measure Special Acts, 4) it is necessary to wide the exemption to establishing requirement for the lab factory in universities in the article 18-2 of the Venture Business Rearing Measure Special Acts, 5) it is required to lessen the procedur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anufactory in the establishment rearing center or new technology complex zones, 6) it is necessary to consolidate two procedures; establishment plan authorizing system and factory establishment authorizing system in order to simplify the establishment permit system; 7) it is necessary to lessen the restric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order to make inroads into foreign market and facilitate inducem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8) it is necessary to reduce requirement criteria of amount of capital, 5 billion, and 2 employee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investment corporation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e article 9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stablishment Supporting Regulations, and finally, 9) it is necessary to reduce requirement criteria of amount of capital, 50 million, and 2 employee requirement for establishment consulting corporation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e article 20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stablishment Supporting Regulations.

※ Key Words : Establishment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valuation of Legislation, Consulting Corporation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Venture Business
Establishment for Stretching Functions, Investment
Corporation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입법평가 요약서

입법평가 요약서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목 차】

- | | |
|------------|------------------------------|
| I. 연구의 배경 | 1. 창업절차규제법령의 개선방안 |
| II. 연구의 대상 | 2. 벤처기업 창업규제법령의 개선방안 |
| III. 연구방법론 | 3. 창업지원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
| IV. 대안제시 | 4. 간접지원 관련 중소기업창업지원 법령의 개선방안 |

I. 연구의 배경

성문법체계를 취하는 국가에서 규제는 대부분 법률이나 그 하위 법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률 통한 규제는 전통적으로 보건복지나 환경 등 필요불가결한 분야에 대한 규제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적 역할의 증대로 심지어 급부법(Leistungsgesetze)에까지도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민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국가행정 그 자체에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점에서 오늘날 선진 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사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내지 철폐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규제’(Better Regulation) 내지 ‘선진입법’(Better Lawmaking)의 길을 걷고 있다.

‘규제완화’(deregulation)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고 다의적인 개념으로서, 확고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용어가 흠결된 상태에서 각각의 관련자들의 목표설정을 통하여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란 한편으로는 규범총량의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완화의 목표로 종종 규범텍스트의 간이화, 규범텍스트의 이해가능성의 제고, 시장에 대한 국가적 영향의 감소 및 탈 관료주의화가 언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완화를 자유화, 민영화, 보충성, 탈국가화, 비판적 과제수행, 분권화, 자기책임의 재편, 각종 보조의 철폐 및 법과 행정의 간이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규제완화가 의문의 여지없이 다학제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규제완화는 현대 법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법적 차원에서의 규제완화’는 한편으로는 규범텍스트와 관련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규범의 양과 질에도 관련되어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적든 규제완화조치를 취하였고, 그에 상응하게 관련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이 실감되지 않을 정도로 규제의 양은 많고 질적으로도 높은 밀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현재 20개가 넘는 부처에서 1,5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 시책을 700개가 넘는 법령에 담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법제상으로도 너무 복잡한 구조가 되었다.¹⁾ 이는 수범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더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내부의 자체 조직을 활용하여 법령의 계폐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

1) 한상우, 중소기업 지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과 문제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제1주제 발표문, 2009. 6. 19, 9쪽.

서는 법률전문가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예가 드물고, 따라서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법 규정을 활용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편 질적인 측면에서 보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령집에서 “중소기업 분야”의 법률로 분류되고 있는 법률은 총 16건²⁾에 이른다. 이들 개별 법률은 각각의 정책유형을 토대로 제정된 것이지만, 각각의 법률이 - 비록 당해 법률이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 많은 적든 중소기업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선진적 규제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관련 법률의 수를 축소하여 양적인 규제완화를 달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법제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입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II. 연구의 대상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행법만해도 매우 많이 존재한다. 비록 중소기업 관련 법률들이 일반

2) 16개의 중소기업 관련법률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6)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8)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9)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1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1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4)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15)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16)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

적으로 ‘지원법’, ‘진흥법’, ‘특별(조치)법’ 등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법률들도 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별 법률들에 명시되어 있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법규정을 모두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간적·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다지 바람직스럽지도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규가 다양한 법률에 산재해 있다는 점, 다수의 법률들에 대하여 모두 한꺼번에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중첩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① 중소기업 창업절차의 간소화, ② 벤처기업 창업 및 활동의 확대, ③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④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요건,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이라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범위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짧은 연구기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위 중점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법령을 다룰 수 없기에 ① 상법·상업등기법·공증인법,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③ 중소기업창업지원법,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입법평가에서는 어떠한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되는 법령에서 어떠한 조항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위에서 선정한 대상 법률 중 입법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관련 조문을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표 1> 입법평가대상법령과 주요내용

법령명	구분	조문	내용
상법	법률	제22조	등기상호의 동일지역내 사용규제
상법	법률	제23조	상호의 동일지역내 사용규제

법령명	구분	조문	내용
상법	법률	제292조	정관의 등기
상업등기법	법률	제80조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의 등기
공증인법	법률	제63조 제66조의2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규제
상법	법률	제382조 제383조	이사선임의무 및 이사의 수 규제
상법	법률	제409	감사 선임 규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법률	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법률	제17조의4	신기술창업집적시설내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법률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의 제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법률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 설치에 관한 규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20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규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5조 제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및 해외투자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21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규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요건

Ⅲ. 연구방법론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다루고 있는 본 연구에서는 입법평가의 세가지 유형 즉, 사전적·병행적·사후적 입법평가 중에서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에 따르기로 한다. 이는 우리의

법현실에서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를 처음부터 예상하여 법안을 미리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법현실이 일반적·과학적으로 증명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는 적합하지 않고, 연구진이 선정한 입법평가의 대상 분야와 그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정들이 현재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으므로 해당 법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이미 제·개정되어 발효 중에 있는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을 대상으로 그 제정목적 또는 개정목적 달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후적 입법평가의 구체적 방법론의 적용단계는 ①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의 결정 단계, ② 사후 검증의 진행방식을 계획하는 구상 단계, ③ 구상 단계에서 기획한 사후 검증의 진행방식에 따라 자료를 조사하고 그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는 실행 단계, ④ 실행 단계에서 이루어진 개별적인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거나 평가하고 기록하는 평가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을 통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되 관련 자료의 조사는 크게 ① 공식통계자료의 활용, ② 전문가 워크숍의 개최, ③ 수범자 설문조사와 같은 방법론을 채택하였는바, 우선,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공식통계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중소기업청 등에서 작성·공포한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입법평가의 기초자료로 삼았음을 밝혀둔다. 또한 연구내용의 질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워크숍을 실시하였는바, 전문가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은 ① 최소 5년 이상의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 2인, ② (중소) 기업 관련 입법평가를 실시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학자 또는 전문가 1인, ③ 중소기업 창업상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었다. 그리고 워크숍의 내용적 부분은 ①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의 현황과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연구진), ② 현황과악의 소개에 대하여 워크숍 참가자들의 경험에 기초한 보충평가, ③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 적용시 그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면서 개별적인 토의 진행, ④ 가능한 법개정 또는 실무상의 운용개선에 관한 결론도출, ⑤ 기타 가능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대한 결론도출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수범자 설문조사는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게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설문조사지가 회송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자가 자신에게 문의된 설문문항에 대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지에 기재된 설문문항을 분명하고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진행내용을 다음과 같다.

- 설문지역: 경기도 수원시 및 안산시
- 설문대상: 경기도내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임원
- 설문조사형태: 표본조사 및 방문조사
- 설문지 발송건수: 600건
- 설문지 회수건수: 572건
- 최종적인 통계분석에 사용된 건수: 572건
- 설문일시: 2009. 8. 10. - 2009. 8. 25.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현재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가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IV. 대안제시

중소기업 창업규제와 관련 법제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수범자 설문 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연구진은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 결론에 더 잡아 현행 중소기업 창업규제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현행 법질서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규가 다양한 법률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지금까지 쟁점별로 논의한 각종 규제법규의 개선에 관한 정책만을 권고할 것이다.

1. 창업절차규제법령의 개선방안

법인설립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창업절차에 대한 규제도 실로 다양한 법률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다양한 법률과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에 의해 일반적인 창업절차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규제) 및 제23조(동일 시군구 지역내 상호사용규제), 상법 제80조(등기시 제출서류), 공증인법 제66조(정관인증절차) 및 동법 제66조의 2(법인의사록의 인증),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상법 제383조(이사의 수 및 임기), 상법 제409조(감사의 선임)를 선정하였다.

이들 규정은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에 있어 규제적 요소로 문제제기가 되어왔고,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 혹은 법인설립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수반하는 규제로써 인식되어 온 사항들이다. 이들 규제요소들 중 최근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본금 기준 일정규모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완화조치의 기준이 실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

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들 법령을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의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정책 권고를 하고자 한다.

첫째, 상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지역 내에서의 동일·유사상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시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나 등기된 상호사용의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가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중복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함으로써 현행 상법상의 비현실적 상호규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법인설립에 의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사상호의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적 범위를 좁히거나 혹은 사용 가능한 지역적 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규정의 개선을 권고한다.

둘째, 상법 제292조와 상업등기법 제80조, 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는 법인설립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설립등기의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서류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도록 하는 한편, 자본금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인증의무를 면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면제규정은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배려를 그 취지로 하고 있으나 실제의 중소기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법평가의 결과이다. 이에 관한 실무계의 실태조사에서도 소규모회사의 창업시에는 이러한 인증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부담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상 최저자본금규제가 폐지된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 규모회사의 면제기준을 아예 철폐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창업시에는 위의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식의 법개정을 고려할만 하다.

셋째, 상법 제382조 및 제383조는 이사의 선임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사의 원수를 최소 3인 이상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다만 10억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09조는 원칙적으로 감사의 선임을 의무화하면서도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한 의무경감은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시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사 또는 감사선임의무를 경감시키는 규제방식은 상법상 종전 5천만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 취지, 즉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라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올바른 규제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본 입법평가의 결과이다. 따라서 상법의 규정은 10억 이상의 자본금규모를 가진 상법상의 중소기업 규모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필수적으로 감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상황을 벗어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의 3인미만 이사선임기준과 감사선임 면제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기준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2. 벤처기업 창업규제법령의 개선방안

벤처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규제법규는 다양한 법률에 산재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규제와 관련된 입법평가의 대상법령으로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 제18조의2(실험실공장), 제17조의4 및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내의 공장설립의 특례)를 선택하였다. 원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이지 벤처의 창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벤처기업의 설립과 관련한 다양한 요건이나 절차 등을 동법에 규정해두지 않을 수 없고, 바로 이러한 법정 요건과 절차가 현실에서는 규제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일정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논의의 대상으로 되었던 쟁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동법 제11조의2의 개정을 제안한다. 이미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7.6%로 나왔다는 점은 현재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만으로는 벤처기업의 창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확고하고, 이를 통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이윤을 획득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굳이 그 업무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둘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실험실공장의 특례규정도 실험실공장의 설치요건을 현재 보다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교원이나 연구소의 연구원만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심지어 대학생의 경우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해소와 대학 등의 이윤확보 등에 보다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

한 특례)은 벤처기업이 창업보육센터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공장설립 등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공장이 설치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창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장설립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방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3. 창업지원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창업지원과 관련하여 각 제도의 상충이라든지 각 부처 지원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법률의 근거없는 제한과 체계상의 문제, 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 지원대상·조건·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창업지원 절차와 관련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장기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설립 승인제도와 일원화함으로써 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제반 토목·건축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토지매입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창업자는 준비에 소요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창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시간적·경제적 위험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와 공장설립 승인제도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승인기관, 절차, 구비서류 등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도 유사하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범위도 유사하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자로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부담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자 중 공장설립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모르고 공장설립 승인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부담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창업자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³⁾

사업계획승인제도와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모두 공장의 설립에 관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일원화하여 처리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인허가가 의제되는 범위도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이러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혜택의 부여없이 단순히 공장설립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방법이 다소 다르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혜택을 부여한다면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설립 승인제도로 일원화하게 되면 창업지원 혜택 부여의 기준을 찾을 수 없게 되므로 일원화에 난점이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계획된 입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에 더하여 국토의 난개발우려를 무릅쓰면서도 중소기업창업지원과 같은 정책목표를 위하여 부담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단 중소기업창업지원 목적상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현재의 정책을

3) 최성근, 『중소기업 관련법령의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23면.

유지한다면 과도기적으로는 양 제도의 병존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양 제도를 가능한 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바, 공장설립제도에 의제되고 있는 인허가 중 사업계획승인제도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각각 추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자가 몰라서 사업계획승인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비율 40%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둔 상태에서,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진출지원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자금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 제한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외화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 제한규정폐지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는 단기 금융상품이 아니라 실물기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위험이 적고, 국가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0.18%)이므로 해외투자 제한규정 폐지로 인해 외화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을 것으로 보인다.

4. 간접지원 관련 중소기업창업지원 법령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규제법규는 다양한 법률에 다양한 규제의 형태로 있다. 동 연구는 창업에 관련된 직접적 규제보다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규제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0조의 창업자본금 5000만원과 전문인력 2인 보유기준, 그리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관련 시행령 9조의 창업자본금 50억 전문인력 2인 보유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소기업에게 창업관련 인허가 절차 대행이나 컨설팅을 하여주는 회사인 중소기업상담회사나 중소기업의 창업에 있어 자금을 투자형식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자체로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규제는 중소기업 창업자체에 대한 규제로서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들 회사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인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여주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 회사를 손쉽게 창업하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각에서 중소기업상담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인 자본금과 전문인력 보유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 동 연구에서 시행한 수범자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점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논의의 대상이었던 쟁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 요건인 자본납입금 5000만원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제안한다.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중소기업자문회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 이 있으며 이들의 회사의 등록 요건 완화로 중소기업 컨설팅이 활성화되어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며 현

재 시행령 상의 자본납입금 5000만원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로 이러한 기준은 중소기업의 창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단지, 산술적인 규제완화로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에 주목하여 사전적인 제한보다는 사후적인 관리감독에 충실함으로써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인 자본납입금 50억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제안한다. 초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될 당시의 기준은 20억이었다는 점과 중간에 100억으로 상향조정되었던 것도 중소기업의 활성화의 목적과 동시에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다시 자본금 50억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제안한다.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중 50억원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로 이러한 기준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중소기업들의 존속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제도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기의 기준을 완화하여야 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색지삽입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7
제 1 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35
제 1 절 연구의 배경	35
제 2 절 연구의 목적	37
제 3 절 연구의 범위 : 대상법령	39
1. 중소기업 창업관련 법제	39
2. 입법평가의 대상분야 및 법령의 선정	41
3. 입법평가 대상법령 및 개별 규정	43
제 4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과 절차	44
1. 입법평가의 방법론 선택	44
2.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45
제 2 장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와 현황	49
제 1 절 현행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	49
1.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유형과 주요 내용	49
2. 중소기업 창업관련 법제의 유형과 주요 내용	67
3.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법제의 규제체계	82
제 2 절 중소기업 제도의 현황	92
1. 중소기업 현황	92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	94
제 3 절 중소기업 창업을 둘러싼 규제 및 규제완화의 경과과정	96
1. 규제현황	96
2. 규제유형	98
제 4 절 중소기업 창업 규제 완화의 현황	101
1. 1996년~1997년도 중소기업 규제완화 추진실적	101
2.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109
3.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111
4.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115
5.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116
제 3 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123
제 1 절 창업절차 규제법령에 대한 입법평가	123
1. 법인설립절차의 규제 현황	123
2. 법인설립절차 규제법령의 주요내용	129
3. 입법평가대상 법규정과 문제상황	142
4. 수범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의 결과	151
제 2 절 벤처기업 창업규제법령에 관한 입법평가	16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61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입법평가 대상 법규정과 문제상황	173
3. 수범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워크숍의 결과	181
제 3 절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관한 입법평가	191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주요 내용	191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주요 개정 내용	214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입법평가 대상 법규정과 문제상황	218
4. 수범자설문조사 및 전문가워크숍의 결과	233
제 4 절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간접지원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238
1. 중소기업창업의 지원제도의 주요내용	238
2. 간접적 지원제도의 주요내용	240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상의 간접적 지원제도의 법개정 내용	249
4. 중소기업창업 간접지원제도에 관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입법평가 대상 내용과 문제 상황	252
5. 수범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 결과	262
제 4 장 요약 및 정책권고	275
제 1 절 창업절차규제법령의 개선방안	275
제 2 절 벤처기업 창업규제법령의 개선방안	277
제 3 절 창업지원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279
제 4 절 간접지원 관련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의 규제완화	281
참 고 문 헌	285

【부 록】

부록 1. 창업규제 관련 법령	289
(1) 법인설립절차 규제법령	289
(2) 창업지원 관련 법령	302
부록 2. 수범자 실태조사 설문문항	327

제 1 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제 1 절 연구의 배경

성문법체계를 취하는 국가에서 규제는 대부분 법률이나 그 하위 법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법을 통한 규제는 전통적으로 보건복지나 환경 등 국가적 책임이 필요불가결한 분야에 대한 규제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적 역할의 증대로 인하여 심지어 급부법(Leistungsgesetze)에까지도 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시민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국가 행정 그 자체에도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제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점에서 오늘날 선진 외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사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 내지 철폐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규제’(Better Regulation) 내지 ‘선진입법’(Better Lawmaking)의 길을 걷고 있다.¹⁾

1) 규제완화에 관한 논의의 원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법학적인 것도 아니고 중부유럽의 법권역과 문화권역에서 연원하는 것도 아니다. 행정개혁의 접근방식으로서 규제완화는 오히려 영미권에서 태동된 것이다.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의 Carter 대통령 시절에 항공분야와 통신분야에서 지속적인 규제완화조치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일차적인 목표는 국가가 사기업 또는 일부만 민영화된 기업의 경제적인 결정에 개입하는 것을 철폐하는 것이었다. 북미에서의 이러한 규제완화의 접근방식은 1980년대에 영국으로 이전되었다. 그 이후 이러한 개혁의 접근방식은 서서히 중부 유럽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Winner, *Deregulierung im Anlagenrecht*, ZfV 1996, 801쪽 이하 참조. 또한 다음의 문헌들도 참조: Korinek, *Staatsrechtliche Ansätze für eine Deregulierung im Wirtschaftsrecht*, JBl 1991, 409쪽 이하; Oberndorfer, *Deregulierung - Einführung in das Thema*, in Oberndorfer (Hrsg.), *Deregulierung* (1992), 12쪽; Kaun/Mitterlehner, *Deregulierung und Entbürokratisierung - Die Position der Wirtschaft*, in Oberndorfer (Hrsg.), *Deregulierung* (1992), 70쪽 이하.

‘규제완화’(deregulation)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고 다의적²⁾인 개념으로서, 확고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용어가 흠결된 상태에서 각각의 관련자들의 목표설정을 통하여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란 한편으로는 규범총량의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완화의 목표로 종종 규범텍스트의 간이화, 규범텍스트의 이해가능성의 제고, 시장에 대한 국가적 영향의 감소 및 탈 관료주의화가 언급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규제완화를 자유화, 민영화, 보충성, 탈국가화, 비판적 과제수행, 분권화, 자기책임의 재편, 각종 보조의 철폐 및 법과 행정의 간이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규제완화가 의문의 여지없이 다학제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규제완화는 현대 법제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법적 차원에서의 규제완화’는 한편으로는 규범텍스트와 관련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규범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규범의 양과 질에도 관련되어있다.

기업에 대한 규제의 완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많은 적든 규제완화조치를 취하였고, 그에 상응하게 관련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철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가 완화되었다는 점이 실감되지 않을 정도로 규제의 양은 많고 질은 밀도가 높다. 우선 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현재 20개가 넘는 부처에서 1,5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 시책을 700개가 넘는 법령에 담아 추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법제상으로도 너무 복잡한 구조가 되었다.³⁾ 이는 수범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더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일

2) 예를 들어 Attlmayr, Verfassungsrechtliche Grenzen der Deregulierung, in Kleiser/Lengheimer(Hrsg.), Deregulierung (2002), 106쪽 이하 참조; Kleiser, Deregulierung und Gemeinschaftsrecht, in Kleiser/Lengheimer(Hrsg.), Deregulierung (2002), 10쪽 이하 참조.

3) 한상우, 중소기업 지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과 문제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제1주제 발표문, 2009. 6. 19, 9쪽.

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내부의 자체 조직을 활용하여 법령의 계폐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예가 드물고, 따라서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법 규정을 활용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한편 질적인 측면에서 보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심각한 실정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 법령집에서 “중소기업 분야”의 법률로 분류되고 있는 법률은 총 16건⁴⁾에 이른다. 이들 개별 법률은 각각의 정책유형을 토대로 제정된 것이지만, 각각의 법률이 - 비록 당해 법률이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 많은 적든 중소기업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선진적 규제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관련 법률의 수를 축소하여 양적인 규제완화를 달성하고⁵⁾, 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 법제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로부터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입법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직접적인 목표는 중소기업의 창업관련 법제상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다. 기업 관련 분야에 대한

4) 16개의 중소기업 관련법률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5)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6)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8)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9)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1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1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13)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14)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15)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16)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

5) 한상우, 중소기업 지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과 문제점, 20-21쪽.

법령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단순히 법령을 정비한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기업의 경쟁력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이른바 기업친화적인 최적의 법률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최적의 법률(optimale Gesetze)이란 ① 법규정의 효과와 장기적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상태 하에서 제·개정된 법률, ② 법규정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원래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발생하는 법률, ③ 정부와 시민간의 부담가중과 부담경감이 적절하게 분산되어 있는 법률, ④ 수범자가 이해할 수 있고 법규정이 의도한 바대로 준수될 수 있는 법률, ⑤ 장래의 발전을 미리 예측하는 법률 등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법 현실을 고려해보면 최적의 법률이라고 수궁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적 요소를 충족시킨 법률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최적의 법률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의 내용 그 자체가 의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관련 법제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필요한 규제라 하더라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 정부는 기업 친화적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점은 현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 중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제번호 25)”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다.⁶⁾ 물론 현 정부가 기업 친화적 정책수립과 그 집행에 우선성을 두는 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기업 친화적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과학적이고 분명한 기반에 터 잡지 않고 단순히 직관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흠결이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기업이 외형적으로는 성장할 수는 있어도 전체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의 완화정책이 납득

6)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08 참조.

할 수 있고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화된 평가기준에 더 잡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선진외국의 실무에서 그 효과가 검증된 바 있는 입법평가의 방법론(Gesetzesfolgenabschätzung)을 원용하여 현행 중소기업의 창업 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최적의 입법대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절 연구의 범위 : 대상법령

이 연구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규제법제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 창업관련 규정들이 산재해있으며, 따라서 이들 개별 법률상의 창업 관련 규정들을 개별적으로 입법평가를 해야 한다. 이 점에서 여기서는 일차적으로 중소기업 창업 관련 규제법제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규정을 선택할 것이다.

1. 중소기업 창업관련 법제

현행 법질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창업‘지원’법 내지 ‘진흥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상법이나, 기타 일반 법률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관한 법체계가 주로 지원법 내지 진흥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도 창업진입장벽을 설치해두는 등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 점에서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한 창업지원법제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지원법제는 넓은 의미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모든 법령과 규정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분야’의 법률로 분류하고 있는 법률은 총 16건에 이르는데, 그 중 14건은 중소기업청 소관의 법률로 되어 있고, 2건(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식경제부가 직접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16건 법률 중 제명만의 형식적 기준으로 보면, 기본법 1건 외에, 특별법 3건이고 특별조치법은 3건이다.⁷⁾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7) 한상우, 중소기업 지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과 문제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제1주제 발표문, 2009. 6. 19, 2-3쪽.

물론, 이 외에도 국토해양부 소관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금융위원회 소관의 중소기업은행법 및 신용보증기금법 등도 중소기업과 관련된 주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현재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해서는 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우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창업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창업 절차와 관련해서 창업 중소기업의 신속한 공장설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설립 승인 등 창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처리(신청 후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이 법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우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⁸⁾

그 밖에 중소기업기본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입법평가의 대상분야 및 법령의 선정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현행법만 해도 매우 많이 존재한다. 비록 중소기업 관련 법률들이 일반적으로 ‘지원법’, ‘진흥법’, ‘특별(조치)법’ 등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법률들도 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별 법률들에 명시되어 있는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법규정을 모두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시간적·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불

8) 한상우, 중소기업 지원법제의 체계적 정합성과 문제점,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제1주제 발표문, 2009. 6. 19, 10쪽.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다지 바람직스럽지도 못하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창업관련 법규정들이 적지 않게 개정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현 시점에서 정책의 핵심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제도들을 중심으로 그에 관한 법규정을 고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연구진은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규가 다양한 법률에 산재해 있다는 점, 다수의 법률들에 대하여 모두 한꺼번에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중첩을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는 점⁹⁾ 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점분야에 해당하는 법령을 중심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표 1> 입법평가의 대상법률과 대상분야

대상 법률	입법평가의 대상분야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중소기업 창업절차의 간소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창업 및 활동의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9) 공장설치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평가의 예로는 강현철·차현숙,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참조.

3. 입법평가 대상법령 및 개별 규정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하나의 법률 전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도 있고, 법률의 일부인 개별 조문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법률 전체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출발점은 그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개별 규정이라는 점이다. 입법평가에서는 어떠한 법령을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되는 법령에서 어떠한 조항에 대하여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이다. 따라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관련 조문이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평가가 아니라 단순한 정책평가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입법평가 대상 분야와 각각 그에 해당하는 대상 법률을 선정한 결과 현실적으로 입법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관련 조문을 열거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입법평가대상법령과 주요내용

법령명	구분	조문	내용
상법	법률	제22조	등기상호의 동일지역 내 사용규제
상법	법률	제23조	상호의 동일지역 내 사용규제
상법	법률	제292조	정관의 등기
상업등기법	법률	제80조	정관 및 창립총회의사록의 등기
공증인법	법률	제63조 제66조의2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인 인증규제
상법	법률	제382조 제383조	이사선임의무 및 이사의 수 규제
상법	법률	제409	감사 선임 규제

제 1 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법령명	구 분	조 문	내 용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법률	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영역에 대 한 규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법률	제17조의4	신기술창업집적시설 내 공장설립에 대 한 규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법률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의 제한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법률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 설치에 관한 규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20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규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5조 제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및 해외투자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21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규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9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요건

제 4 절 입법평가의 방법론과 절차

1. 입법평가의 방법론 선택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다루고 있는 이 연구에서는 입법평가의 세 가지 유형(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 중에서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에 따르고 있다.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을 취하는 이유는 우리의 법현실에서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의 완화 내지 철폐를 처음부터 예상하여 법안을 미리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법현실이 일반적으로 과

학적으로 입증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구진이 선정한 입법평가의 대상분야와 그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정들이 현재 발효되어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즉, 사후적 입법평가)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이미 제·개정되어 발효 중에 있는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을 대상으로 그 제정목적 또는 개정목적은 달성했는지,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는 사후검증(Evaluation)이라고도 한다. 사후적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론의 적용단계는 ①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실시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단계, ② 사후검증의 진행방식을 계획하는 구상 단계, ③ 구상단계에서 기획한 사후검증의 진행방식에 따라 자료를 조사하고 그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는 실행 단계, ④ 실행단계에서 이루어진 개별적인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거나 평가하고 기록하는 평가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①의 단계는 정책적 판단 내지는 정치적 판단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입법평가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2.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1) 사후적 평가

특정한 법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그 법령의 적용범위 내에서 실무에서 실제로 발생한 추이를 비교 자료와 비교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비교의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예상-실제 비교, 이전-이후 비교, 사후적 분석, 사례연구 등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사후적 평가의 비교방식 중에서 사후적(Ex-Post) 분석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사후적 분석이란 법령이 발효되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당해 법령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서는 시간이 경과되면서 당해 법령이 심사기준에 상응하게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켰는지를 심사할 수 있다. 변화된 것들은 법령의 효력발생 이후에 시간적 경과를 통하여 분석된다. 사후적 분석은 이전-이후-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령과 무관하게 전개된 효과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법령의 효력발생 이전에 관련 자료가 조사되지 않았고 자료조사의 방식이 변경되었으며 법령을 통하여 점점 변화가 발생하고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발전에 관한 설명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효력발생 이후의 시계열 비교(즉, 사후적 분석)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연구에서 비교유형으로 사후적 분석을 선택한 배경은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에 관한 실효성검토의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까지 확고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법규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거나 발전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관련 자료의 조사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자료의 조사는 크게 세 가지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1) 공식통계자료의 활용

우선,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관련한 공식통계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중소기업청 등에서 작성·공포한 중소기업 관련 통계를 입법평가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2) 전문가워크숍의 개최

연구내용의 질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전문가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선정되었다.

- 최소 5년 이상의 중소기업 창업에 관한 실무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 2인
- (중소) 기업 관련 입법평가를 실시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학자 또는 전문가 1인
- 중소기업 창업상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1인

워크숍의 내용적 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의 현황과악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연구진)
- 현황과악의 소개에 대하여 워크숍 참가자들의 경험에 기초한 보충평가
-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 적용시 그 장점과 단점을 고려하면서 개별적인 토의 진행
- 가능한 법개정 또는 실무상의 운용개선에 관한 결론도출
- 기타 가능한 사후적 입법평가에 대한 결론도출

3) 수범자 설문조사의 실시

수범자 설문조사는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게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설문조사지가 회송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조사 대상자가 자신에게 문의된 설문문항에 대하여 타인의 도움없이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문조사지에 기재된 설문문항을 분명하고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설문조사와 관련한 구체적 진행 및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의 개요

- 설문지역 : 경기도 수원시 및 안산시
- 설문대상 : 경기도내 중소기업 경영자 및 임원
- 설문조사형태 : 표본조사 및 방문조사
- 설문지 발송건수 : 600건
- 설문지 회수건수 : 572건
- 최종적인 통계분석에 사용된 건수 : 572건
- 설문일시 : 2009. 8. 10. - 2009. 8. 25.

<표 3> 설문내용

분 류	설 문 내 용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전반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시 가장 큰 어려움 - 중소기업창업시 가장 먼저 개선하여야 할 점 - 중소기업창업 지원 현 제도 평가
중소기업창업 규제 관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상 회사설립 자본금 액수 및 등기이사의 수 - 중소기업 창업 시 동일유사상호 제한 규제 - 중소기업 창업 시 감사 선임
벤처기업 창업관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 실험실공장의 설치자격 - 창업보육센터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 설립 승인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투사 창업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상담회사 및 창투사의 납입금 제한 - 중소기업 상담회사 및 창투사의 전문보유인력 수의 제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관련 규제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대상 사업 범위 제한 - 사업전환 지원 심의 기간 단축

제 2 장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와 현황

제 1 절 현행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

1.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유형과 주요 내용

(1)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

1) 개 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령으로는 상법 등 일반적인 기업 관련 법령이나 인허가 관련 법령과 같이 중소기업 관련 일반법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중소기업 관련 특별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을 별도의 객체로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이나 사업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법제로서의 특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혜택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거나 일반적인 법령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방식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기업 관련 일반법령 중 중소기업에 적용가능한 규정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관련 특별법에서 이에 관한 예외규정이나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규정이 중소기업에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령체계로는 우선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헌법규정¹⁰⁾을 정점으로 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있고, 실시법으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0) 헌법 제123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소관부처별로는 중소기업청이 13건, 지식경제부가 7건, 국토해양부가 1건이다.

<표 4> 중소기업 관련 법령

소관부처	법 른 명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09.11.2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식경제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09.11.2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국토해양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러한 중소기업 관련 법제는 그 체계가 복잡하고 법령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정 이래 중소기업정책의 변화를 법제도화 하기 위하여 다수의 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조성법규라는 점에서 수요자인 중소기업자가 관련 법령의 복잡·다기화로 인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이 저하된다면 지원법 자체로서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¹¹⁾ 따라서, 어떠한 분야를 복수의 법령이 규율하는 경우, 그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는 관련 법령을 가능한 한 수적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 법령이 간소하여야 이를 집행하는 측에서 행정의 서비스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수범자의 입장에서 법령에 대한 접근성과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그 체계의 복잡·다기함뿐만 아니라, 법률간에 포섭해야 할 내용에 대한 구분이 적절하지 않고, 법률의 명칭과 내용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히 수요자인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어떤 법이 적용될 것인지를 예견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그리고 분류가 명확하지 않는 데에는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개념이 모호한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복수의 법령이 운용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적으로 단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법령을 분류하는 기준이 합리적이고 법령별로 내용의 분할이 명확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 일반을 규율하는 법령 및 특별법으로 구분하고, 중소기업 일반을 규율하는 법령은 다시 사업단계별 흐름에 따라 구분하며 이를 다시 기능별로 분화하는 것이 효율성과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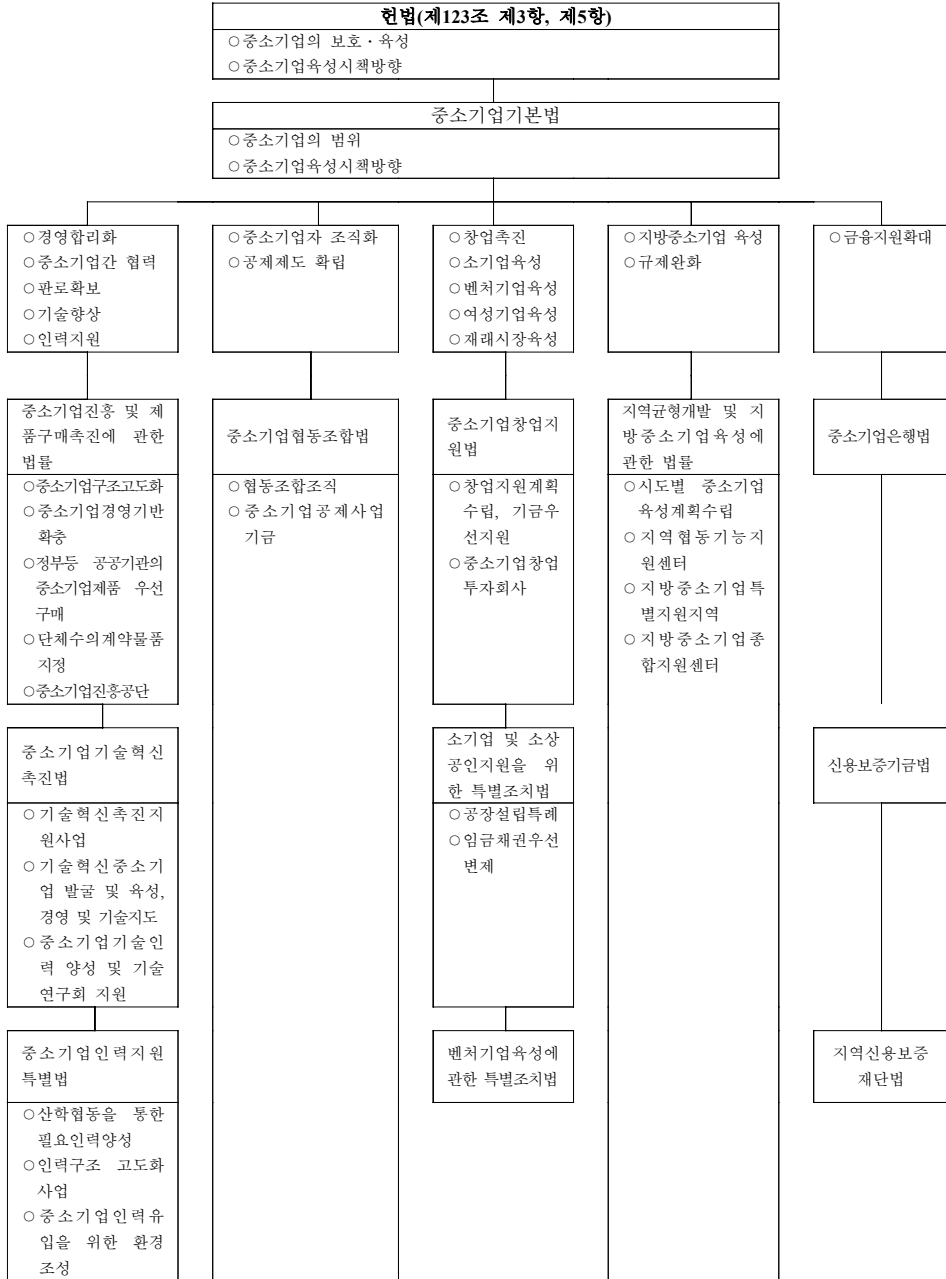
11) 최성근 외, 『중소기업 관련법령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13면.

2)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는 우선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책방향과 지원대상을 제시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조직화를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의 확보와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법률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있다. 기술개발촉진 및 구조고도화지원을 위한 법률로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어 왔던 계층의 지원을 위한 법률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동을 보장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은행법 등은 중소기업의 금융공급확대와 신용능력보완을 위해 특화된 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체계는 1995년 WTO체제의 출범을 계기로 단행된 일련의 제·개정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의 자유화와 개방화로 대변되는 WTO체제는 무한경쟁시대의 개막을 예고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경제 전반에 걸친 법제도의 정비가 불가피하였다. 중소기업 관련 법제도 제·개정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의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법령정비가 없었던 관계로 자유와 개방화 경제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전환하면서 관련 법령의 전폭적인 정비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표 5>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체계



3) 중소기업 관련 주요 법령의 내용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헌법 제123조 제3항 및 제5항을 정점으로 하여 중소기업기본법과 이에 관한 실시법으로 구분된다. 실시법으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은 중소기업일반에 적용되는 법률이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벤처기업, 여성기업, 재래시장, 지방중소기업 등 특별한 고려를 요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 창업촉진·경영합리화·기술향상·판로확보 등에 관한 지원정책 및 금융·세제지원의 기본방향, 중소기업자간의 협력, 조직화, 국제화 등에 관한 사항,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 명칭사용, 업무구역, 정치관여·겸직금지, 주무관청의 감독,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조합원의 자격·가입, 창립총회, 설립인가, 업무의 범위·기능활성화 체제 등), 협동조합의 기관(총회, 이사회)의 운영, 임원의 임기, 기관운영 등), 협동조합의 회계, 해산과 청산,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지원(이업종교류, 사업전환 등),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구매의 증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의 개선, 직접생산의 확인,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인증,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물류

현대화 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협동화사업,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절감지원사업, 지도 및 연수사업, 국제화지원사업, 경영안정지원 등),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기금설치 및 운영), 중소기업진흥공단(공단의 설립, 운영, 자금조달, 지원사업,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시장활성화에 대한 지원(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실태조사,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임차상인의 보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의 활성화, 경영교육 및 전문가양성,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 등),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시행구역의 선정,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용적율, 건폐율,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특례, 대규모 점포의 등록 등), 분쟁의 조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효력), 시장상인회·상인연합회 및 시장경영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의 정의와 요건, 벤처투자 자본공급의 원활화(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의 결정,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업무의 집행, 다산벤처주식회사의 설립, 외국인의 출자·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기업활동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창업시 공무원 등의 겸임·겸직에 관한 특례,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입지공급의 원활화(벤처기업전용단지·집적시설의 지정, 실험실 공장에 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벤처기업 확인, 주식발생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우선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록, 행위제한, 투자 의무, 자금의 차입, 결산보고 등),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조합의 결성, 업무의 진행, 결산보고, 수익처분 등),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용역비의 지원, 창업절차(사업계

획의 승인, 전매·임대의 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지원계획의 수립,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특례, 신용보증지원정책의 수립,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소상공인 육성, 지원센터 설치, 조세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 기본계획의 수립,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 특례, 경영능력향상, 디자인개발지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심의·조정·인력실태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필요인력의 양성, 공동훈련시설의 설치, 원격훈련 지원, 중소기업 체험사업, 외국전문인력의 활용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특례, 전역예정자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인력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지원, 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 기술인력의 국제교류지원, 중소기업의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공동복지시설의 지원, 직무기피요인 해소사업,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우수근로자의 연수지원, 주택의 우선분양, 소기업의 학자금 지원우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은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기술혁신촉진위원회의 설치,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 육성, 경영 및 기술지도,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지원,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설립 및 운영,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 시험분석 지원,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지방개발사업의 시행과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시도별 중소기업육성계획, 공장설립지원, 지역협동기술향상,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등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조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비교

1) 주요 법률의 구조 비교

중소기업에 관한 기본법인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실시법을 자금·기술·인력·정보부문, 구조의 고도화부문, 경영합리화부문, 행정지원·특례·규제부문 등의 측면에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주요 중소기업 관련법의 구조분석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자금·기술·인력·정보	-금융확보 -공제제도 -기술향상 -국제화	-창업 및 진흥기금 -채권발행 -연수사업 -국제화	-지원기금 -투자조합 -창업 정보 제공	-자금대부 -공제기금 -정부보조 -기술지도 -정보제공
구조의 고도화	-기업구조전환 -협동화, 계열화 -사업영역의 보호 -조직화, 판로확보	-자동화 -사업전환 -협동화	-창업범위 -투자회사	-공동사업 -침해제한 -사업조정 -조합종류 -공동시설
경영 합리화	-경영관리 -근로환경	-품질보장, 품질인증, 품질향상 -연계생산 -물류현대화	-상담회사	-경영지도 -품질관리 -제품규격 -수출대행 -원자재

제 2 장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와 현황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행정지원 · 특례	-중소기업자범위 -소기업 -지방중소기업 육성 -세제지원	-입지지원 -환경오염저감지원 -민속공예 -세제지원		

2) 자금·금융 관련 법률

중소기업의 자금·금융 관련 법제는 그 적용범위가 중복되고 법률 간의 특성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소관 부처를 달리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금융위원회가 관장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법률들은 외관상으로는 각각 창업 및 신기술사업을 주요 적용범위로 규정함으로써 차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표 7>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비교

구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적용범위 및 사업내용	1. 창업투자회사 -창업자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자금의 관리 -창업관련 상담, 정보제공, 사업알선 -해외기술알선, 보급 -창업자에 대한 보증 및 자금알선 -창업부수사업 2. 중소기업상담회사 -사업성평가 용역사업	신기술사업자 기술신용보증 일반신용보증 기금의 업무 경영지도 신용조사

구 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 -사업알선 -자금알선 -창업절차대행	
심의기구	창업지원심의회 창업지원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관리기관	창업투자회사 상담회사	기술신용보증기금
기 금	창업 및 진흥기금의 창업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3)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

1) 체계상 문제점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제의 문제점은 관련 법령의 체계가 복잡하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는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정 이래로 중소기업정책의 변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법령이 제·개정된 결과이다. 이러한 체계의 복잡다기화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뿐 아니라, 수범자의 입장에서조차 법적 안정성을 저하시켜 그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 관련법령이 지원법제라는 점에서 수요자 겸 수범자인 중소기업자의 접근가능성을 저하시킴으로써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중소기업정책의 제도화 이래 중소기업 관련 법령의 체계 및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수차례 시도되었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그간의 정비가 국부적이고 일회적인 정비에 그쳤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특히 수범자의 입장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다는 정책을 수렴하고 법제도를 운용하는 입장에서의 정

비였다는 점에 문제의 소재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 입법평가의 방법론을 통하여 중소기업법제의 입법론을 시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령은 그 체계의 복잡다기성 뿐만 아니라, 각 법률이 포섭하는 내용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관련 법령의 체계가 복잡, 다기하고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중소기업정책의 변화에 따라 개별법의 제·개정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개정 절차에서 특정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거나 수범자인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법률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데에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로 들 수 있다. 즉, 고도화·진흥·구조개선·구조조정·경영안정화·경영합리화·경영정상화·경영기반의 확충 등의 용어와 기술향상·기술개발·기술혁신 및 신기술, 집단화·협동화·조직화 및 기업간 협력, 현대화·자동화·정보화 등의 경우와 같이 명확하게 규범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2) 내용상 문제점

① 업종별 법령과 중소기업 법령의 연계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제는 전반적으로 산업 관련 법제와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한 편이다. 중소기업법제에 의하면 제조업·광업·건설업 이외에 운송업·상업 기타 서비스업을 사업으로 경영하는 중소기업도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산업관련 법령들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관련법제의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도 받는다. 동법은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에 의해 시범센터, 도매배송업, 공동집배송단지 등을 지정하고, 유통산업발전기반을 조성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유통산업발전계획을 시행·지원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와 관련된 법률이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별개로 운용되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개별입법방식을 통하여 중소기업시책을 구체화하거나 특별입법방식을 통하여 적용범위 및 방법에 대한 특례가 규정될 필요가 있다.¹²⁾

② 지방중소기업 활성화 시책미흡

종래 중소기업 관련 법제는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하여 선언적 내용만 규정하고 있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소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의 지방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 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금·기술·인력·정보 등의 지원을 확충하는 식의 문제해결보다는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방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자금·기술·인력·정보 등 일반적인 지원의 확충을 통한 국가 전체의 중소기업체 수의 증가라는 양적 팽창보다는 중소기업 구조의 개편을 통하여 달성될 필요가 있다.

12) 최재천, 『중소기업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 2000, 33면.

③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의 조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도급거래의 공정화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10조 제2항은 ‘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탁 및 위탁거래의 적정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의무, 선급금의 지급의무 등 원정화자의 의무사항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부당한 발주취소 및 수령거절거래금지, 부당반품거래금지, 하도급대금의 부당감액금지 등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규정,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들은 그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적용상 이원화 되어 있어 상호 충돌의 우려가 있다. 즉 각 법령이 규율하는 사업의 범위가 유사하고 원사업자나 수급기업에 대한 준수사항이나 금지사항이 유사할 뿐 아니라, 분쟁조정장치도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들은 통합·조정하여 분쟁조정 기관을 통일시킴으로써 중소기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절차의 개선을 통한 분쟁조정의 신속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야별 문제점

① 중소기업기본법

기본법은 어떠한 분야의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관계 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입법형식으로, 주로 해당 분야의 정책목표 또는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정책목표 또는 정책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항목을 열거하며, 정책의 수립 또는 조정을 위한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¹³⁾

13) 박영도,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법제연구』 제5호, 1993, 한국법제연구원, 274면 이하 참조.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기본시책으로 창업촉진, 경영합리화 및 기술촉진, 판로확보, 중소기업간 협력, 기업구조의 전환, 계열화의 촉진, 사업 영역의 보호, 공제제도의 확립, 중소기업자의 조직화, 국제화의 촉진, 근로환경의 개선 등, 소기업대책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육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기업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지식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기업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기업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져서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의 가속화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감소시킬 것이며, 국내외적으로 증대하는 경쟁, 급격한 기술의 변화 및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는 중소기업의 위기감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중소기업 자체의 자생력 및 경쟁력 제고 노력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전반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정보통신·컴퓨터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지식집약형 벤처기업의 집중 육성, 시장경제논리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정책적 수요를 반영한 지원시스템의 구축, 국제규범과의 조화 및 국제경쟁력의 제고 등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은 이러한 중소기업정책의 목표·이념 및 주요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항목이 포괄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기본시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시책과 개별 실시법 간 유기적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정보화촉진조항의 신설, 기술향상 및 기술개발촉진조항의 신설,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신설을 위한 국제화조항의 개정,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한 중소기업제품의 생산공정의 개선,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의 신설, 벤처기업육성 및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조항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

② 중소기업 사업활동 지원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지원제도는 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진흥법,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제정된 법률로, 동법은 중소기업일반에 관한 지원 중 창업과 협동조합 등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크게 지원시책과 지원기관, 지원기금에 관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지원시책부문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경영지원을 위한 협동화, 입지·환경오염저감지원, 지도·연수, 국제화촉진, 경영안정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기관·지원기금분야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진흥기금·산업기반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하고 있다. 동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중소기업의 인력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인력유입을 위한

환경조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을 각각의 기능별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시에도 기능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명확하였던 것은 아니며, 제정 이후 수차례의 개정과 통폐합과정을 거치면서 기능별 구분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 결과 법률의 명칭만으로 현재의 어느 법률에서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지원제도의 공급자인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 뿐 아니라 수범자인 중소기업자가 이러한 제도를 인지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대부분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강도 높은 지원이 필요한 특정부분에 대한 취급이 소홀히 되고 있거나 최근의 경제변화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경제여건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진출분야가 정보·문화·유통·지식기반산업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중소기업의 조직화 지원

중소기업의 조직화 지원과 관련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헌법 제 123조 제3항 및 제5항, 중소기업기본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조적인 조직으로서 경제적 요소를 결합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이룩하기 어려운 경영과제를 공동으로 달성하려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통하여 그 기능을 조직적인 노력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직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기회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고양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협동조합의 조합원, 설립, 사업, 기관, 회계 및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 협동조합 연합회에 관한 규정, 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활동의 변화로 시장경제시스템에 의한 자율과 경쟁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정책도 시장경제에 의한 공정한 경쟁시스템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 확정 등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본질적인 문제점은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혁신적 노력이 부족하고 조합원간의 경쟁원리가 부족하여 조합의 사업, 운영 및 조직구조가 시장친화적이지 못한 점과 자본조달확충기반이 조합운영의 내재적 한계로 인해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¹⁴⁾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친화적인 조합으로의 유도, 전통적인 조합운영원리의 현실적합성 강화, 하나의 사업체로서의 역할 강화, 중소기업정책 및 사회경제정책 파트너로서의 조합유도, 중소기업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의 조직화 지원을 위한 방향으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14) 김수환,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새로운 발전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5, 149면 이하 참조.

2. 중소기업 창업관련 법제의 유형과 주요 내용

(1) 일반적 회사설립절차 규제법제와 내용

1) 법인설립절차 개요

신규창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절차를 밟게 된다. ① 상법상 법인설립절차, ② 영업준비행위 과정에서의 행정적 절차인 담당 관청의 사업 인허가 절차 및 중소기업지원수혜절차, ③ 위의 법인설립절차 및 행정절차의 이행증명절차라고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및 설립등기과정이 그것이다.

창업의 신고절차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종료된다. 법인의 경우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절차가 종료된다.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창업의 개념이 매우 넓고 다의적이다. 즉 창업을 위한 준비행위로부터 모든 법인설립절차가 종료된 이후의 자금, 인력 및 시설의 조달 행위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은 의미로 쓰인다.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창업규제의 의미를 법인설립절차에 한정하는 개념으로 쓰고 또한 입법평가의 대상도 여기에 한정하고자 한다.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 한 후 해당 업종의 담당 관청의 사업 인허가를 받고 해당 관청에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 한 후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 받으므로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한 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상법 제288조 및 329조에 의거 하여 최소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납입조건이다. 그러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특별조치법’의 발효(2002.12.30)로 1인 이상 발기인뿐만 아니라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발기인 구성

회사설립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발기인은 1인도 무방하다. 자격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 하며,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발기인이 될 수 있다.

② 정관작성

주식회사설립을 크게 구분 하면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 첫째,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인 정관의 작성 단계,
- 둘째, 주주확정, 자본모집, 회사기구 등 회사의 실체를 형성하는 단계,
- 셋째, 회사가 법인격을 부여 받기 위한 설립등기 절차이다.

정관은 설립 시에 발기인이 작성하여 전원 기명.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 한다. 정관에 포함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목적
- 상호
-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의 총수
- 1주의 금액
- 회사가 설립 시 발행 하는 주식의 총수
- 본점소재지
- 회사의 공고방법

-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③ 주식발행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액면 이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와 금액을 정한다.

④ 발기인의 주식인수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최소1주 이상의 주식을 서면으로 인수해야 한다.

⑤ 주주모집, 청약, 배정

발기인이 인수 하고 남은 주식은 주주를 모집한다. 주식청약은 1주 이상이면 되고 인수 하는 주식도 1주이상이면 된다.

⑥ 주식 청약금은 은행에 납입하고 은행에서는 설립등기가 완료 될 때 까지 주금을 보관하게 되고 [주금납입보관증서]를 발기인에게 교부한다.

주식납입금이 완료되면 회사는 주주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인수주식 수, 취득 년 월 일 등이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해 놓아야 한다.

⑦ 창립총회 개최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상법상 창립총회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창립총회를 통지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사항보고 정관승인, 이사와 감사 선임을 하고, 창립총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이사전원이 서명 날인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⑧ 이사회개최

이어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⑨ 등록세, 지방교육세납부 및 채권매입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면 본점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등록세(자본금의0.4% 단, 수도권 지역의 경우 3배중과) 및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를 납부 하고,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지하철 공채(또는 국민주택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⑩ 설립등기

주식회사는 최종적으로 설립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고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상업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이사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설립절차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정관
- 주식인수증
- 주식청약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소기업확인서(자본금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창립사항 보고서
- 기간단축동의서
- 창립총회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
- 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서

- 주민등록 등본
- 인감증명서
- 인감신고서
- 위임장(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신청 하는 경우)
- 등록세.지방교육세.영수증.채권매입증명서

2) 상법상 법인설립규제절차의 주요내용

상법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설립절차를 규제하는 법이므로 각종 회사형태의 설립에 따라 그 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어느 회사형태를 취해 설립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따를 것이긴 하지만, 중소기업도 법인의 형태로 설립하고자 할 때 주식회사로써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서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제에 있어서도 최근 대중소 구분입법론의 영향으로 특히 중소기업 설립시 요구되는 절차적 요구를 경감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를 실제 입법에서도 반영시켜 왔다.

<표 8> 창업관련 법령의 규제영역과 주요내용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상 법	소상인에 대한 규제완화	◆ 상호 등 규정의 소상인 적용면제(상법 제9조)
	상호관련 규제	◆ 상호선정의 자유 ◆ 회사상호의 규제(제19조) ◆ 비회사상호의 회사표시문제 규제(제20조) ◆ 단일상호의 원칙(제21조) ◆ 타인 등기상호의 등기규제(제22조) ◆ 상호 또는 목적 변경, 본점이전시 상호의 가등기제도(제 22조의2)

제 2 장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와 현황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목적의 오인상호사용금지 및 사용배척권, 동일 시군구 지역내 부정목적 추정제도(제23조) ◆ 상호불사용의 경우 폐지의제, 상호의 변경·폐지 등기 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등기말소청구,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제26-28조)
	상업등기 관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상호등기부 등기(제34조) ◆ 등기사항의 지점 소재지 등기(제35조) ◆ 등기의 효력, 부실의 등기의 효력, 변경, 소멸의 등기(제37-40조) ◆ 회사 본점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제172조)
	주식회사 설립절차 관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의 정관기재,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제289~291조) ◆ 정관의 공증인 인증의무 및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시 인증의무 대체(제292-292의2조) ◆ 발기인의 주식인수(제 293조) ◆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발기설립의 경우의 이사 및 감사등 임원 선임(제296조) ◆ 감사인의 변태설립사항과 그 이행의 조사 및 보고(제299) ◆ 현물출자 등의 증명 및 예외(제299조의2) ◆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인수인의 의무(제301-304조) ◆ 창립총회의 개최의무, 결의사항,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제308-310조)
	설립등기 관련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회사설립의 등기(제317조) ◆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및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시 예외(제318조)
	이사선임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제382조) ◆ 이사의 원수(3명 이상)에 대한 원칙과 자본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에 대한 예외(제383조)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감사선임 관련 규제	◆ 감사의 선임과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경우 감사선임의무 면제(제409조)

(2) 중소기업 창업지원 규제법제와 내용

중소기업 창업에 관해서는 기본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에서 창업촉진이라는 제명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한 실시법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 창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들을 두고 있고, 그 외에도 개별법령에서 창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한 주요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창업촉진에 관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영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제10조 제1항).

- ▶ 창업자에 대한 투자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위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또한, 동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요건으로,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 선고로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투자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아.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또는 임직원

자. 제12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 ▶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동법에서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사업영역으로는,

- ▶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 ▶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 ▶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알선
- ▶ 창업 절차의 대행
- ▶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 ▶ 위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제1항).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요건으로는,

- ▶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 ▶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31조 제2항).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창업지원에 관하여 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및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1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창업 등의 활성화에 관하여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기능장려법에서는 창업자금대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은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다만, 허위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영업을 폐지한 경우, 대부받은 자금을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등에는 자금의 상환기일 전에 그 대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제10조).

기상산업진흥법에서는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에 관하여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건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6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창업관련 각종 인·허가등의 통합고시에 관하여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및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할 것을 규정한다(제4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관하여 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9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는 창업의 지원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중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보고(제8조),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해서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의2 제1항).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의2 제2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5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의 창업지원특례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서는 창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사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제4조).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에서는 창업의 활성화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는 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현대화를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6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함에 있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음 및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장소 등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창업지원에 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제17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동일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동일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동일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28조) 및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제32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에 관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제63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에 관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제6조).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본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을 정하고 있다(제10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해서는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할 것, 전문회사의 요건으로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임원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일 것,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을 정하고 있다. 전문회사의 업무영역으로는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이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제11조의2).

3.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법제의 규제체계

(1) 규제체계의 개관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법제는 개별 단일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법 등의 일반법과 함께 중소기업 관련 특별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각종 업역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다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다.

1) 중소기업 창업 관련 일반법

중소기업창업과 관련된 일반법으로는 민법, 상법, 상업등기법 등이 있다. 민법에서는 법인설립에 관한 일반규정¹⁵⁾들을 두고 있으며, 상법에서는 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 각종 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¹⁶⁾ 또한, 상업등기법에서는 상호 및 각종 회사의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¹⁷⁾

15) 민법 제31조~제56조 참조.

16) 상법 제178~제194조, 제288조~제328조, 제543조~제552조 참조.

17) 상업등기법 제30조~제46조, 제57조, 제80조, 제104조 참조.

2) 중소기업 창업 관련 특별법

중소기업창업 관련 특별법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제5조)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5조), 이를 근거로 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총칙,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절차 등, 보칙, 벌칙 등 총 7장 48조로 구성되어 있다.

3) 창업 관련 개별법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련된 개별법은 특정한 산업의 지원 또는 진흥에 관한 조성법제 중 창업지원 또는 창업활성화, 규제완화, 장애인 등 특정계층에 대한 창업지원, 세제지원 등에 관한 법령들이 있다.

조성법제 중 창업에 관한 규정으로는 근로자의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8조,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7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8조,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제12조,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6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등이 있다.

창업관련 규제완화에 관한 법제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를 들 수 있다. 동조는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업의 인허가·등록·신고 및 승인에 관한 처리기준 및 절차를 통합하여 고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정계층의 창업지원에 관한 법제로는 여성의 창업지원특례를 규정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8조, 제대군인의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있다.

창업에 관한 세제지원에 관해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있다.

(2) 창업 관련 규제법제의 평가

신규창업자는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스스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부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도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창업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 지원은 정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경기침체 지속과 창업관련 규제강화 등의 요인으로 중소기업 창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공장설립에 있어 입지·환경 등의 규제 증가와 복잡한 인·허가절차의 상존은 창업자 또는 창업중소기업에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조업의 창업 저해요인으로는 고비용 요소투입구조 및 창업관련 절차와 규제가 과다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비용 요소투입 구조의 원인으로는 첫째 공장용지의 지가가 높으며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평당 385만원인데 비하여 암스테르담은 평당 121만원, 파리 평당 44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공장용지의 지가 상승률도 2003년 2.25%에서 2004년 2.8%,

2005년 3.94%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둘째 제조업 인건비가 인근 경쟁국에 비해 높다. 주요국별 시간당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간당 \$9.16인 반면, 홍콩은 \$5.83, 싱가포르 \$4.27, 대만 \$5.41, 미국 \$21.33, 일본 \$18.33으로 주요 경쟁대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부족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 부족율은 3.79%로, 87,000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창업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과다하다는 점도 중소기업창업을 방해하고 경쟁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규제 건수도 규제 총량이 2000년 7,133개에서 2006년 8,083개로 약 13.3%가 증가하는 등 점진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World Bank의 중소기업 창업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6년 175개국 중 16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표 9> 주요국의 중소기업창업절차와 비용

구 분	절차(단계)	기간(일)	비용*(%)	최저 자본금*(%) (1인당 GNI 대비 비중)
한 국	12.0	22.0	15.2	299.7
OECD평균	6.2	16.6	5.3	36.1
미 국	5.0	5.0	0.7	0.0
영 국	6.0	18.0	0.7	0.0
일 본	8.0	23.0	7.5	0.0

(World Bank 06)

우리나라 창업절차 및 소요비용으로 법인 설립에는 총 12단계에 22일이 소요되며 소요비용은 254만원(\$2,403)으로 1인당 GNI(\$15,830)의 15.2%에 해당된다.

<표 10> 창업절차 및 소요비용

절 차	비 용(1\$=1056.3원)		소요기간
1. 상호검색	-		1
2. 인감제작(발기인, 회사)	₩20,000	\$19.0	1
3. 공증(정관,회의록, 인감)	₩314,400 ¹⁾	\$297.6	1
4. 통장개설	-		1
5. 법인등기 신청 및 등록세 납부서 취득	₩15,000	\$14.2	1
6. 법인 등록세 납부	₩2,189,000 ²⁾	\$2,072.1	1
7. 상업등기	- (6번에 포함)		4
8. 사업자등록	-		8
9. 건강보험 가입	-		1
10. 국민연금 가입	-		1
11. 고용·산재보험 가입	-		1
12. 노동사무소 신고	-		1
12단계	₩2,538,400	\$2,403	22일

1) (설립자본금-50,000천원)×0.2%(정관) + 20,000원(회의록) + 60,000원

2) 설립자본금 × 0.4% × 3 × (1 + 0.2(교육세)) + 설립자본금 × 0.1%(국공채)+인지세(₩15,000원) = ₩2,189,000

<표 11> 주요국의 창업비용 비교

지 역	절 차(개)	기 간(일)	비 용(%)	최저 자본금(%)	순 위
한 국	12	22	15.2	299.7	116위
캐나다	2	3	0.9	0.0	1위
미 국	5	5	0.7	0.0	3위
OECD평균	6.2	16.6	5.3	36.1	-

한편,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가 부족하여 민간 벤처투자자금의 시장형성이 애로를 겪고 있으며, 창업투자회사

의 운영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창업사업계획의 승인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일괄의제 처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업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공시제도 도입, 재무상태가 악화된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요구 및 등록취소 근거 신설, 법령 위반 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운영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벤처캐피탈 산업의 선진화와 투자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창업시의 애로점은 판로 및 자금분야가 가장 높으며, 인력 및 기술분야, 인프라 등의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¹⁸⁾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시에는 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경우에는 창업자의 담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편이며, 대출시기에 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자에게 담보대신 기술평가를 통한 보증을 확대하고 대출신청 및 심사절차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 직접 대출을 하는 것의 곤란한 경우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를 통하여 자금대출에 대한 보증방안을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정부 등 대규모 소비자의 문호개방이 필요하며 해외 바이어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판로개척의 경우 정부가 직접 판로에 대한 지원보다는 기술인증, 제품인증, 기업인증 등을 통한 간접지원과 바이어와 기업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창업자가 보육센터 입주 후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것 및 보육기간이 단기간이라는 점이 문제로 제기

18) 김주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6, 102면.

된다. 따라서 국내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보육센터가 단순히 기업의 창업공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판로, 인력 등의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보육센터의 합리적인 졸업요건을 제시하고 졸업 후에도 일정기간 경영지도를 실시하는 제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12> 중소기업 창업시 애로점과 원인

애로사항	원 인
판 로	-판로 정보 부족 -회사 및 제품의 홍보 부족 -회사의 인지도 부족 -타 회사간의 과다경쟁 -대기업 문호개방의 어려움
자 금	-투자처에 대한 정보부족 -담보부족 및 보증인 요구 -사업타당성 분석의 어려움 -인허가 시간의 장기화 -창업 초기자금 이용의 곤란, 금융권의 장벽
인 력	-전문인력의 부족 -인력비용의 부족 -회사 인지도의 부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구인난

<표 13> 창업시 정부지원 정책의 방향

지원항목	개 선 방 향
인 력	-고급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인력확보의 용이성 증대 · 우수인력 DB화 · 자격증 인력 정보제공 -인건비 보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지원항목	개 선 방 향
자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방법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기술평가결과로 신용대출 -보증, 담보제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인 요구에 대한 개선 · 담보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 · 매출실적이 없어도 보증서 발급 가능 -제도의 효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 및 수수료 인하 · 기간단축 · 서류 간소화
관 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인증의 공신력 제고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확대 · 제품에 대한 정부의 인증제도 마련 -해외진출의 용이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바이어 대항 홍보성 박람회 개최 · 해외 바이어 알선 -판매의 용이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판매망의 구축지원 · 구매자 정보제공
기술/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의 용이성 및 제품화 -창업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 제공 -법무 및 세무 관련 교육기회 확대

(3) 중소기업 창업관련 법제의 규제요소와 입법평가대상 법령의 추출

중소기업창업에 관한 법제도는 그 규범적 체계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을 필요로 한다. 중소기업의 창업시 가해지는 각종의 규제는 대기업의 그것과 비교할 때 당연히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즉 중

소기업의 창업시 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법인을 설립할 때의 부과되는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이 전혀 현실성을 갖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과도한 혹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들도 매우 작은 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커다란 규제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떠한 창업관련 규정 또는 규제가 일반적으로는 ‘합리적 규율’인 것이더라도 중소기업의 창업시 규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 관련 법령이외에도 각종 업역별 법령에서도 다양한 등록 및 신고요건을 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중소기업의 창업과 일반적 법인설립의 차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러한 규제요소가 될 것인지 여부는 오로지 일반적 창업절차에의 참여자와 중소기업 창업자간의 비교결과로부터 추출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비교형량은 통계적 혹은 계량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과거의 다양한 검증데이터를 기초로 규제요소를 가정하고 이를 설문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규제요소가 됨을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 규제요소로써 추출하기 위한 입법평가를 위한 기준은 첫째, 중소기업의 기업의 창업시 어떠한 규제가 일반적 법인설립의 경우와 비교할 때 반드시 필요한가 또는 과도한 것인가, 둘째, 이러한 규제가 그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에 달성하는데 있어 어떠한 장요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가 이다. 셋째는 그러한 규제를 받는 수범자가 동 규제를 합리적으로 준수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거나 실제로 준수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별된 대상법령의 창업관련 규정이 중소기업의 창업시 규제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표 14> 중소기업창업절차 관련 법령의 규제요소

규제체계 및 규제법령		규제요소	비고(개선목표)
법인설립 절차의 규제	상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절차의 복잡성 ○ 자본금의 과부담 ○ 상호선정의 불편성 및 과다규제 ○ 이사 및 감사선임의무화의 과다요구성 	일반적 창업 및 회사설립에 있어 과도한 요건·절차 및 중복절차의 철폐를 통한 중소기업 신규 진입자에 대한 장벽철폐
	상업등기법 및 공증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및 의사록 등에 대한 공증요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시 대중소 기업에 대한 구분적 규제 및 배려의 미흡 	
창업지원 체계상 규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에 의한 기능미약 ○ 실험실공장의 설립주체를 규제함으로써 인한 1인기업 창업 활성화 ○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시설내 제조 및 공장시설 규제에 의한 창업활성화 장애 	중소기업의 지원관련 법률상 창업지원을 위한 제도중 규제적 요소를 철폐하여 창업지원기능의 정상화 및 활성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엄격한 등록요건으로 인한 기능 및 역할의 미약 ○ 창업투자회사의 과도한 등록요건요구로 인한 역할 및 기능의 미약 	
	사업전환촉진법 사업전환촉진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시 지원대상 업종의 규제에 의한 창업활성화 장애 ○ 사업전환에 대한 심의 등 불필요한 규제 	

제 2 절 중소기업 제도의 현황

1. 중소기업 현황

2006년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사업체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점유율은 10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표 15> 연도별 중소기업 현황

(단위: 개, 명,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체수	전체	2,838,945	2,871,946	2,953,224	3,004,105	3,003,180	3,022,053
	중소기업	2,816,343	2,862,433	2,948,271	2,999,297	2,998,223	3,017,787
	비중	(99.2)	(99.7)	(99.8)	(99.8)	(99.8)	(99.9)
종업원수	전체	11,064,821	11,460,654	11,975,247	12,041,387	12,036,330	12,445,088
	중소기업	8,953,356	9,733,703	10,384,595	10,474,630	10,415,383	10,884,650
	비중	(80.9)	(84.9)	(86.7)	(87.0)	(86.5)	(88.1)

* 자료 : '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가공 및 재편

또한 업종별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99.9% 등 대부분 업종에서 99% 가까이 집계되었으며, 종사자 수에서는 87.5%를 차지하였다.

<표 16> 주요업종의 기업규모별 현황

(단위: 개, 명, %)

구 분	전 체	중 소 기 업			대기업	
		소기업	중기업	소계		
		소상공인				
사업체수	3,022,053 (100.0)	2,671,928 (88.4)	2,923,649 (96.7)	94,138 (3.1)	3,017,787 (99.9)	4,266 (0.1)
제조업 (11.2)	339,149 (100.0)	277,239 (81.7)	330,031 (97.3)	8,465 (2.5)	338,496 (99.8)	653 (0.2)
서비스업 (85.7)	2,590,238 (100.0)	2,322,002 (89.6)	2,503,591 (96.7)	83,212 (3.2)	2,586,803 (99.9)	3,435 (0.1)
농·임·어업 및 광업 (0.1)	2,454 (100.0)	1,600 (65.2)	2,158 (87.9)	282 (11.5)	2,440 (99.4)	14 (0.6)
건설및설비업 (3.0)	90,212 (100.0)	71,087 (78.8)	87,869 (97.4)	2,179 (2.4)	90,048 (99.8)	164 (0.2)
종사자수	12,445,088 (100.0)	5,159,639 (41.5)	7,737,904 (62.2)	3,146,746 (25.3)	10,884,650 (87.5)	1,560,438 (12.5)
제조업 (27.4)	3,408,997 (100.0)	834,573 (24.5)	1,876,701 (55.1)	848,090 (24.9)	2,724,791 (79.9)	684,206 (20.1)
서비스업 (65.6)	8,163,798 (100.0)	4,083,341 (50.0)	5,300,097 (64.9)	2,091,782 (25.6)	7,391,879 (90.5)	771,919 (9.5)
농·임·어업 및 광업 (0.2)	24,962 (100.0)	4,954 (19.8)	13,809 (55.3)	8,894 (35.6)	22,703 (91.0)	2,259 (9.0)
건설 및 설비업 (6.8)	847,331 (100.0)	236,771 (27.9)	547,297 (64.6)	197,980 (23.4)	745,277 (88.0)	102,054 (12.0)

* 자료 : '06년 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가공 및 재편

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업체는 99.4%로 본 업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75.9%이지만, 전체 생산액은 49.4%, 부가가치 발생 비중은 51.1%에 불과하여 양적인 숫자보다 경제적 생산가치는 대기업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고가 요망된다고 판단된다.

<표 17> 중소기업 현황

구 분		연 도						연평균 증감률(%)		
		1990	2000	2003	2004	2005	2006	'90~'00	'00~'06	'05~'06
사업체수 (개,%)	전체	68,872	98,110	111,363	112,454	116,303	118,240	3.60	3.16	1.67
	중소 기업	67,679 (98.3)	97,379 (99.3)	110,691 (99.4)	111,759 (99.4)	115,650 (99.4)	117,569 (99.4)	3.71	3.19	1.66
종사자수 (명,%)	전체	3,019,816	2,652,590	2,716,752	2,779,978	2,845,792	2,890,204	-1.29	1.44	1.56
	중소 기업	1,864,189 (61.7)	1,962,908 (74.0)	2,090,216 (76.9)	2,104,820 (75.7)	2,169,072 (76.2)	2,192,395 (75.9)	0.52	1.86	1.08
생산액 (억원, %)	전체	1,773,088	5,648,341	6,720,605	7,890,109	8,456,858	9,063,813	12.28	8.20	7.18
	중소 기업	757,130 (42.7)	2,675,619 (47.4)	3,402,313 (50.6)	3,834,964 (48.6)	4,187,524 (49.5)	4,474,499 (49.4)	13.46	8.95	6.85
출하액 (억원, %)	전체	1,752,343	5,594,081	6,672,993	7,491,763	8,080,862	8,677,933	12.31	7.59	7.39
	중소 기업	746,341 (42.6)	2,648,706 (47.3)	3,380,091 (50.7)	3,539,383 (47.2)	3,865,518 (47.8)	4,151,357 (47.8)	13.50	7.78	7.39
부가가치 (억원, %)	전체	709,245	2,194,246	2,544,090	3,000,732	3,109,571	3,249,104	11.96	6.76	4.49
	중소 기업	314,318 (44.3)	1,101,508 (50.2)	1,342,563 (52.8)	1,482,899 (49.4)	1,599,924 (51.5)	1,659,417 (51.1)	13.36	7.07	3.72

* 주 중소기업은 5~299인 기준임. ()는 비중

*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현황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시중 유동성 확대에 따라 매년 감소 추세이며, 창업·기술개발사업화 자금은 확대하고, 경영혁신·소상공인 등은 축

소되고 있다. 연도별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8> 정책자금 지원규모

(단위: 억원)

사 업 명	'04년	'05년	'06년	'07년	'08(계획)
중소벤처창업자금	3,600	3,900	5,610	6,000	6,400
개발기술사업화자금	750	1,000	850	1,000	1,200
경영혁신자금	16,700	18,405	13,448	12,510	11,431
긴급경영안정자금	2,650	3,035	3,660	3,348	2,913
구조조정자금	-	160	27	1,400	1,600
소상공인지원자금	3,500	5,100	4,300	3,300	2,400
자산유동화지원사업	500	500	620	750	400
계	30,500	31,600	28,515	28,308	26,344

2008년 지원계획을 보면, 2007년 263조에 비해 1,964억원이 증가한 283조이며, 이는 6.9% 증가한 수치이다. 구체적으로 증가한 부분은 벤처창업 400억원, 기술사업화 200억원, 사업전환 100억원이다.

<표 19> 2008년 중소기업 지원계획

자 금 명	08년도 예산 (억원)	지 원 대 상	지원한도 (시설/운전)	대출기간(거치) (시설/운전)	금리* (3/4분기)
중소벤처창업	6,400	5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중인 자	연간 20억 연간 5억	8년 이내(3) 5년 이내(2)	4.79% (기준금리)
개발기술사업화	1,200	기술개발 성공기업, 특허기술 보유기업 등	연간 10억 연간 3억	8년 이내(3) 5년 이내(2)	"
경영혁신 자금	7,904	시설투자 제조업 (5년 이상 중소기업)	연간 30억 연간 5억	8년 이내(3) 3년 이내(1)	"

제 2 장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와 현황

자 금 명		08년도 예산 (억원)	지 원 대 상	지원한도 (시설/운전)	대출기간(거치) (시설/운전)	금리* (3/4분기)
	지식기반 서비스육성	1,000	지식서비스업 영위기업	연간 10억 연간 5억	8년 이내(3) 3년 이내(1)	"
	기업간협력	2,527	3개 이상 중소기업이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연간 40억 연간 5억	10년이내(5) 5년 이내(2)	"
긴급경영 안정자금	원부자재	1,750	원부자재조달 애로기업	연간 5억	3년 이내(1)	"
	재해복구	500	재해기업	연간 10억	3년 이내(1)	4.09%
	수출금융	663	수출중소기업	10억	180일 이내	4.79%
구조조정 자금	희생특례	200	구조조정 등 경영애로 발생기업	연간 10억	3년 이내(1)	7.49%
	사업전환	1,100	업종추가 또는 업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연간 30억 연간 5억	8년 이내(3) 5년 이내(2)	4.79%
	무역조정	300	FTA이행으로 피해입은 기업	연간 30억 연간 5억	8년 이내(3) 5년 이내(2)	"
소상공인지원		2,400	5인미만 각종 서비스업 10인미만 제조,건설,운송	50백만원	5년 이내(1)	5.44%
자산유동화지원		400	직접금융 조달이 필요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70억	5년 이내	채권금리
합 계		26,344				

*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

제 3 절 중소기업 장업을 둘러싼 규제 및 규제완화의 경과과정

1. 규제현황

2008. 10월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총 규제 건수는 5,212건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분류에 따르면 부처별 규제와 사무유형별 규제로 분류하고 있다. 부처별 분류는 관할권이 있는 부처

를 파악할 수 있어 규제완화에 있어 집행부처와 소관부처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규제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표 20> 부처별 규제현황

No.	부처명	규제 수	No.	부처명	규제수
1	경찰청	97	18	방송통신위원회	138
2	공정거래위원회	125	19	법무부	70
3	관세청	37	20	병무청	6
4	교육과학기술부	247	21	보건복지가족부	616
5	국가보훈처	16	22	산림청	69
6	국민권익위원회	2	23	소방방재청	108
7	국방부	9	24	식품의약품안전청	87
8	국세청	9	25	여성부	14
9	국토해양부	932	26	외교통상부	20
10	금융위원회	759	27	중소기업청	34
11	기상청	8	28	지식경제부	294
12	기획재정부	113	29	통계청	3
13	노동부	220	30	통일부	20
14	농림수산식품부	416	31	특허청	16
15	농촌진흥청	5	32	해양경찰청	37
16	문화재청	33	33	행정안전부	146
17	문화체육관광부	160	34	환경부	346
				총합계	5,212

사무유형별 규제분류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¹⁹⁾

19) 유형1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 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시험, 검사 등), 유형2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부처가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면제, 시정,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 등), 유형3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등)

<표 21> 사무유형별 규제현황

유형	No.	사무유형명	규제수	유형	No.	사무유형명	규제수
1	1	검사	118	1	16	승인	212
2	2	결정	15	1	17	시험	28
3	3	고용의무	36	3	18	신고의무	320
3	4	금지	509	1	19	인가	124
3	5	기준설정	1085	1	20	인정	29
1	6	기타1	266	3	21	제출의무	123
1	7	기타2	39	1	22	증명	16
2	8	기타3	104	2	23	지도	115
3	9	기타4	641	1	24	지정	160
2	10	단속	46	1	25	추천	10
1	11	동의	18	3	26	통지의무	49
3	12	등록의무	191	1	27	특허	2
1	13	면허	43	2	28	행정질서벌	136
2	14	명령	224	1	29	허가	365
3	15	보고의무	147	1	30	확인	41
							5,212

2. 규제유형

(1) 경제적 규제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는 시장경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진입, 가격, 생산량, 품질, 공급대상 및 조건 등)에 대한 규제로서 크게 (1) 진입규제, (2) 가격(및 이윤)에 대한 규제, (3) 기타 품질, 생산량, 공급대상·조건·방법 등에 대한 규제

구분된다. 경제적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 보호(consumer protection)와 산업 또는 생산자 보호(industry or producer protection)로 구분된다.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는 독과점적 횡포의 방지, 부당이득의 방지, 부당한 가격차별의 방지, 및 교차보조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 등이 있으며 생산자 보호 목적으로는 과당경쟁의 방지, 산업 육성, 및 불공정한 기업간 경쟁의 방지 등이 있다.

경제적 규제의 유형은 크게 진입규제²⁰⁾·가격규제²¹⁾·독과점 및 불공정에 대한 규제²²⁾로 구분할 수 있다.

(2) 사회적 규제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로서 크게 환경규제,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 소비자 안전 및 보호 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로 구분된다. 사회적 규제의 목적으로는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의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평의 확보를 들 수 있으며 유형으로는 명령 지시적 규제수단(regulation by directives)과 시장 유인적 규제수단(regulation by market incentives)으로 구분되며 환경규제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20) 진입규제(entry regulation)란 어떤 산업 또는 직종에 참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의미하며 이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들 수 있다.

21) 가격규제(price regulation)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전기·전화·상수도·교통요금 등 각종 공익서비스 산업의 요금에 대한 규제인 공공요금규제가 있다.

22)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라 학자에 따라서는 경제적 규제와 다른 별도의 규제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며 독과점 규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격카르텔, 수량카르텔, 거래지역 및 상대방 제한 카르텔, 가격제한 카르텔 등을 들 수 있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로서는 거래거절·거래차별·거래강제·조건부거래·허위과장광고 등이 있다.

명령 지시적 규제수단의 세부적인 정책수단으로 기술기준과 성과기준이 있다. 기술기준은 공해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또는 처리시설,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엔진규격 또는 부착장치, 공해를 발생시키는 물품의 생산과정에 들어가는 원료나 중간재의 성질·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성과기준은 피규제자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환경기준만을 설정하고 이것의 달성방법은 기업이나 개인에게 일임하는 방법이다.

시장 유인적 규제수단은 일정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공해 배출량(잔류량)에 대하여 일정한 단위당 부과금을 곱하여 산정되는 부과금을 공해배출업체에 부과하는 공해배출 부과금(emission charges or effluent charges), 공해배출 부과금제도의 장점을 대부분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 제도의 결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된 공해배출권의 경매(market permits)·공해개업에 공해방지 시설비용·처리시설비용·공해처리비용 등을 지급하는 보조금 등이 있다.

산업안전 및 보건 규제는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생각보다는 감정이 지배하기 쉬운 정책이슈이며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는 식품안전 및 위생 규제, 의약품 안전규제, 자동차 등 각종 공산품의 안전 규제, 허위 또는 과장광고 및 기만적인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의미한다.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현대 민주복지사회에서 사회적 차별의 불식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회적 차별은 각 나라마다의 특수한 역사적 전통과 사회 문화적 관습 속에서 사회구성원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별은 주로 고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밖에도 교육·보험·주거의 선택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 4 절 중소기업 창업 규제 완화의 현황

1. 1996년~1997년도 중소기업 규제완화 추진실적

1998년 중소기업청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규제완화 추진실적’에 따르면 '96~'97년도 과제 발굴 및 개선 총 건수는 106건(100%)이며, 이 중 해결된 사안은 57건(53.8%), 미해결된 사안은 49건(46.2%)으로 조사되었다.²³⁾ 입지·창업분야의 창업관련 규제완화 실적은 통상산업부 10건, 건설교통부 8건, 농림부 4건, 중소기업청 4건, 지자체 1건으로 총 27건의 과제 현황 중 총 14건이 개선 완료되었다.²⁴⁾

(1) 건축자재 업종에 대한 시·도지사 추천 폐지

1) 건축자재 업종의 경우 모든 건축 관련 인·허가와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별도로 건축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추

23) <표 22> 분야별·소관부처별 과제현황.

(단위 : 건)

분야	부처	합계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소상공인부	중소기업청	농림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국립중앙도서관	세무부	교육부	행정부	지자체
합계		106	27	14	14	14	10	7	2	9	2	1	1	5	2
자급·양육		7	2	5			1								1
인력·노동		50	4	1	2		3		1	2	2	1	1	5	
입지·창업		27	10		5			4		4					1
관료·경영		5	1	2					1	1					
세계		10	2	5											
환경		12				11	1								
안전·질사		11	3		1	2	1	2		2					
부담		14	5		3	1	4	1							

24) <표 23> 분야별 개선현황

(단위 : 건)

구분	해결			미해결			합계		문제율(%)
	개선완료	개선예정	소계	유보	일정유지	소계	합계		
자급·양육	4	1	5	71.4	1	1	2	7	6.6
인력·노동	8	4	12	60.0	-	8	8	20	18.9
입지·창업	14	-	14	51.9	3	10	13	27	25.5
관료·경영	1	3	4	80.0	-	1	1	5	4.7
세계	5	-	5	50.0	-	5	5	10	9.4
환경	3	-	3	25.0	2	7	9	12	11.3
안전·질사	5	-	5	45.5	1	5	6	11	10.4
부담	9	-	9	64.3	-	5	5	14	13.2
계	49	8	57	53.8	7	42	49	106	100

전이 있어야만 1,000㎡미만의 공장증설이 가능함.

2) 그러나 건축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 간 문서로서 허가의 타당성 검토가 가능함에도 별도로 추천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초래하였음.

3) 따라서 과밀 억제지역에 신·증설되는 건축자재 업종의 공장에 대하여는 시·군·구 등 건축허가 관청에서 허가권에 해당 시·도지사에게 의견 소회 후 건축을 허가하게끔 개선이 요망됨.

4) 그 결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를 개정하여 시·도지사 추천 규정을 삭제함.

(2) 폐기물 재생처리업체 농공단지 입주허가

1) 현재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22조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을 농공단지 입주금지 업종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업 중 재생 처리업은 폐기물의 유출가능성이 없음.

2) 그러나 동 규정은 포괄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을 입주금지업종으로 정하고 있어 재생 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는 농공단지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임.

3)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중 재생 처리업을 농공단지 입주금지업종에서 제외시켜 농공단지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요망됨.

4)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22조 제2항에 재생처리업체는 입주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음.

(3) 인쇄업의 경우 건축법 적용완화

1) 건축법시행령상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7)에서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인 제조업·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

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인쇄업은 대도시를 벗어나서는 영업이 불가능한 특수 업종으로서 도심에서 집단화함으로써 상호 보완된 발달이 가능함. 그러나 '97년 읍셋인쇄업의 시장개방으로 국내 인쇄업은 수요와 공급이 원활한 도심에서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음.

3) 이에 인쇄업의 경우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의 바닥면적 합계를 500m²로 확대요망.

4)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3호를 개정하여 500m²로 확대하였음.

(4) 건축규제 완화

1) 제품보관 창고의 부족으로 인하여 공장용지 내 임시가건물을 지어 사용할 때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공장건물증축 신고사항이 연면적이 200m²미만인 창고로 규정되어 있어 제품보관 창고 부족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이 큼.

2) 공장용지내의 임시창고는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사전신고 등의 약식절차로 가능하게 하여 정식절차를 거침으로 드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으로 기업부담을 완화해주고, 공장건물건축 신고사항을 연면적 합계가 500m²로 확대할 것이 요구됨.

3)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호를 개정하여 500m²로 확대하였음.

(5) 기준공장 면적을 인하

1) 과도한 공장용지 보유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공장용지의 이용을 위하여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특히, 섬유·제지·플라스틱·건축용 자재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는 제품의 야적장 등 여유부지가 필요하나 여유부지 확보시 기준초과 용지에 따른 세금이 부과됨. 또한 기준공장 면적율의

적용으로 산출되는 공장입지 기준 면적 및 예비면적이 너무 적게 산출됨에 따라 여유부지 확보가 어려워 공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3,000㎡이상인 중소기업의 공장보지에 대하여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이 40%이상인 업종에 대하여 30~40%미만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하고, 예비면적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20%로 상향조정되도록 개선이 요망됨.

3) 중소기업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업종 특원을 고려하여 기준공장 면적율을 충족하지 못한 부지에 대하여 업무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공장입지 기준고시를 개정하여 기준공장 면적율을 인하하였음.

(6) 건축규제의 합리적 조정

1)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소재의 공장으로서 현재 공장용지이며, 공장내 모든 용지가 콘크리트화 된 상태에서 이미 15년 이상 가동 중에 있으나 '94년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장건축 등의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어도 농산물 생산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이며, 같은 경기도내 쌀집산지인 김포군의 경우 논들을 매립하여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임.

2) 또한 중소기업의 공장부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는 경우, 공장증축이 불허되어 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3) 농업진흥구역 내의 기존 공장으로서 농어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부분적인 증축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요망됨.

4)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초지법 제16조를 개정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기존 공장에 대하여 자동화설비나 공정개선 등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000㎡이내 범위에서 공장증축을 허용하였음.

(7) 도시형 업종의 주거지역 내 공장양성화

- 1) 도시형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기업의 경우, 주거지역에서 주부 등 유흥인력을 활용하여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공장등록이 되지 않아 구조개선 자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 자금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없으며, 각종 규제가 심하여 공장의 지속적 영위가 어려움.
- 2) 무공해 도시형 업종의 주거지역 내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망됨.
- 3)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개정하여 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같음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지역내 소규모 공장을 양성화하였음.

(8) 방화벽 시설규제 완화

- 1)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고, 각 구획의 바닥 면적 합계를 1,000㎡미만으로 하여야 함.
- 2)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 주요구조부의 내화구조 외부조항이 공장 건축에도 적용된 결과 건축기술상의 문제와 공장건축비 상승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임대공장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없으면 실제로 시설이 불가능하고 불연제품 생산업체도 방화비 설치의무부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3) 방화벽시설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조정이 필요하므로, 신발·섬유·의복등 line 생산공정업체의 경우 방화벽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해야 함.
- 4) '97년 5월 제2차 기업 활성화 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논의한 후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4호에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되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음.

(9) 공장설립 완료보고 규제완화

- 1)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자는 공장설립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공장의 설립완료 보고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시장·군수는 공장설립 완료보고 접수 후 이를 검토하여 공장등록증을 교부해야 함.
- 2) 현실적으로 공장건축물을 준공한 후 기계장치 등 설비에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많아 보고의무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로 5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어려움이 있음.
- 3) 공장건축물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의 설치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보고토록 개선 요망.
- 4)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개정하여 공장건축물을 준공하고 기계장치 등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고토록 하였음.

(10)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에 한시적 사업허가

- 1) 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영의 취지는 입주업체가 시제품 개발 후 양산단계에서 졸업시켜 창업 실패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나 동센터 입주업체에게 등록 및 영업허가 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음.
- 2) 센터에 입주하여 연구개발·시제품개발·기술개발 신제품에 대하여 판로를 개척하여 시장성 등을 사전 확보한 후 졸업시켜야만 성공적인 창업을 보장할 수 있는바,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경우 사전시장개척, 판로확보 등이 지극히 어려움.
- 3)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입주기간 동안 한시적 사업허가 및 공장등록 등이 가능하도록 개성이 요망됨. 그리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규정과 연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제정하여 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같음하도록 함으로써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11)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증 교부조건 완화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 의하면 “공장부분 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최종 건축물의 준공예정일 후 7월까지를 한도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최종 건축물의 준공을 기준으로 한 공장등록증의 발급이 아니라 년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기계장치 등을 확인하고 공장부분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부분가동공장등록증의 유효기간이 최종건축물의 준공예정일 후 7월에서 공장설립 승인 후 4년으로 연장하였음.

(12) 농공단지 입주시 사업성 검토기간 단축

1) 농공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사업성을 검토받아야 하나 검토기간이 20일 이내이나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30일이 소요되고 있어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에 애로가 있음.

2)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빨리 끝나면 즉시 처리해주고 검토기간이 15일 이내에서 5일간 연장가능토록 하는 등 검토기간의 단축이 요구됨.

3)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 제24조 제7항을 개정하여 사업성 검토기간을 15일 이내로 하고 연장기간도 7일로 단축하였음.

(13)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처리기간 단축

1) 현재 신속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사업 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 지침상 시·군에서는 일괄처리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지개량 시설의 사용 승인시 시·군에서는 농지개량조합에 별도로 창업자에게 사용승인서를 받아오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농지개량 조합에서 이사회 의견을 거쳐 도지사에게 사용승인을 요청하고 도지사 승인 후 다시 농지조합→창업자→시·군 담당자까지 걸리는 행정소요시간이 3~4개월 소요됨. 따라서 시·군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고도 농지개량시설의 사용승인이 늦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공사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3) 농지개량 시설 목적의 사용승인은 통상 진입로 개설시 받게 되는데, 사실상 목적의 사용승인보다 농지개량 시설내 공작물 설치허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시·군에서 직접 농지개량 조합과 도지사에게 협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창업승인기간(40일)내 농지개량 조합의견을 들어 승인 후 재통보하여 실질적으로 빠른 일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시·군 승인시 곧바로 공사착공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요구됨.

4) 시·군 창업민원담당자와 관련 중간관리자에 대한 교육시 농지개량시설 사용승인서와 같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서류를 예비창업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였음.

(14) 도시계획 정비 및 건축규제의 합리적 조정

1) 용인시의 기흥국토이용계획변경(안)에 의거 공장소재지가 “준농림지역”에서 “자연녹색지역”으로 변경 예정임.

2)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사태 발생으로 자금난을 겪게 되고, 업무확장에 따른 공장증설이 불가능하게 되

어 어려움이 있음.

3) 기존의 공장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국토이용 계획이 요망됨.

4)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경기도에 협조 요청하여 자연녹지지역 지정을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하였음.

2. 2003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1) 소기업 등 창업활성화

1)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창업 확대

① 신규창업자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통한 창업활성화

가. 신규 및 예비창업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창업 강좌 교육

나. 여성 창업 강좌(44회 1,596명), 2030(청년) 창업 강좌(19회 2,397명), 노인창업강좌(10회 928명)

② 사회 취약 계층의 창업활성화 지원

가. 장애인, 탈북자, 재소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교육

나. 장애인(7회 418명), 탈북자(2회 100명), 재소자(49회 3,294명),소년원(5회 342명)

(2) 여성창업 활성화

1)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14개소)

① 서울(2),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수원,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

가. 입주현황 : 171업체중 165업체 입주(졸업 96업체)

나. 전문가 상담 실시 : 9회(중앙 1, 지회 8)

2) 전문 여성인력의 창업 촉진

① 여성창업강좌 개설 : 총 61회 2,203명 실시

가. 세미나 2회, 일반강좌 11회, 전문강좌 29회, 정보화강좌 19회

나. e-lancer 양성교육 : 3회 191명(매월 세미나 개최 병행)

다. 콘텐츠매니지먼트, CS강사, 마케팅홍보, 쇼핑몰운영자, 창업설계, 웹PD 과정

(3) 벤처창업 활성화 촉진

1)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핵심과제로서 금년도에 “창업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창업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됨.

2) 보육센터의 기능을 생산형으로 전환

보육센터의 기능을 생산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규지정은 지양하되, 기존센터의 기능을 확장, 보육역량을 강화하여 운영의 자립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창업보육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

3) 창업자금의 추가확보

매년도의 창업자금의 조기 소진에 따른 예산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창업자금을 추가확보(500억원)하고, 자금대출기간 단축 및 신용대출 확대 등을 통해 창업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도모

4) 청년창업 활성화

최근 청년실업의 증가로 젊은 층의 실업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어, 창업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하여 청년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창업분위기조성에 크게 기여

3. 2004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1) 2004년 상반기 추진실적

1)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활성화

① 창업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 간소화

가. 실태조사결과 발굴된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관련 부처와 협의

나.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한 창업컨설팅 지원대상 확대 및 창업절차대행 관련 지원금액 상향조정(04. 4월)

* 지원대상 : (현행) 절차대행, 타당성검토 → (변경) 사전환경성 검토 추가

* 지원한도 증액 : (현행) 450만원 → (변경) 850만원

②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가. 중소·벤처창업자금 금리인하(04. 5월, 5.9 → 5.5%)

* 중소·벤처창업자금 신청현황(04. 5월말) : 3,647억원

③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효율화

가. 291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

* 우수센터는 운영비·확장설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부실센터는 지정취소 등 제재 조치

나. 창업보육센터를 연구개발 위주에서 생산형으로 전환하고, 졸업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Post-BI²⁵⁾ 시범사업 추진

* 입주기업의 고유브랜드 개발, 공동판매장 설치, CEO 교육 등
마케팅 지원도 확대

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모델 경연대회, 입주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굴,
제안제도 등을 통해 보육센터 매니저의 전문성 강화(교육2회)

④ 예비창업자 양성 및 청년창업 저변 확충

가. 창업동아리를 청년창업의 산실로 육성(150개 동아리 지원)

* 신규동아리 33개 및 선도동아리 100개를 선정하여 아이템개발
비 등 5백만원 지원

나. 세제, 회계 및 업종별 전문교육 등 전문강좌(03년 21개 → 04년
80개) 위주의 창업교육과정 운영 중

다. 『창업대학원』 설치(20억원) 운영을 통해, 창업전문가 양성

* 호서대, 진주산업대 등 5개 창업대학원 지정(04. 4월)

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보증 확대

가. 소상공인자금 1,000억원 추가조성 : 2,500억원 → 3,500억원

*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2,800억원)을 활용한 지원방안 강구

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강화

* 지역신보를 통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1조 7,000억원)

* 제조업 영위 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시행(3,600억원)

⑥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 기능 강화

가. 소상공인지원센터(60개) 상담사의 전문성 제고

*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적성검사 등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25) Post-BI(Post Business Incubator) :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들의 생산,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입주공간.

- * 업종별 창업가이드(20종) 및 경영 매뉴얼(5종)을 개발·보급
- * 창업가이드 254종, 경영매뉴얼 64종 기 개발

나. 업종전환, 휴폐업 등의 재활(Re-Start)지원 프로그램 도입 검토

⑦ 여성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가. 여성 전용 창업보육센터(14개) 및 창업 강좌(80회) 등 운영

나. 여성 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03년 1.5조원 → 04년 1.8조원), 해외유명 전시회 참가(15회) 등 판로확대 지원

(2) 2004년 하반기 추진실적²⁶⁾

1) 정책목표

① 창업관련 제도개선과 창업기업 지원체제 강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가. 창업지원체제 개편, 예비창업자 양성, 여성 및 소상공인 창업서변 확충 등 창업관련 제도개선으로 신규 고용기회 창출

나. 창업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입지, 마케팅 지원체제 강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배가

2) 정책내용

① 창업활성화 여건 조성

가. 창업지원체제 개편

- *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 마련, 창업절차 개선을 위한 창업지원법 개정

나.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의 효과성 향상

- * 자금규모 확대, 지원금리 인하, 신용대출 규모 확대

26) <표 24> 추진계획 및 실적 비교

제 2 장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와 현황

당초계획	추진실적
<p>1. 창업활성화 여건 조성</p> <p>① 창업지원체계 개편</p> <p><input type="checkbox"/> 창업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실태조사 ○ 일괄의제처리 대상 확대 ○ 창업승인제도 개선 ○ 창업민원애로해소센터 설치 ○ 중소기업상담회사 기능을 창업대행 위주로 개선 <p>②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의 효과성 향상</p> <p><input type="checkbox"/> 창업지원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금규모 확대 ○ 창업자금 금리인하 <p>③ 창업보육사업의 효율성 제고</p> <p><input type="checkbox"/> 창업보육센터의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센터 확장지원 (30개) ○ 운영비 지원(210개) ○ 보육매니저 양성교육 (3회) <p>○ 매니저 해외연수 실시(1회)</p> <p>○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실태조사('04.5) ○ 의제항목 48개 → 65개로 확대 ○ 창업처리기간 30일 → 20일로 단축 ○ 12개지방청(사무소)에 설치('04.10) ○ 사전환경성 검토작성 대행 지원자금 신설(350만원)('04.4) ○ 3,000억원 → 3,600억원('04.7) ○ 5.9% → 4.9%('04.5, '04.10) ○ 원주연세대 등 31개 기관 지원 ○ 227개 센터 지원(8.27) ○ 양성 교육 3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산벤처, 45명, 4.26~6.25 - 창업보육협회, 110명, 9.20~22 - 경영기술건설턴트협회, 26명, 10월 ○ 독일, 프랑스, 스위스 창업보육 기관 방문(7.18~7.29) ○ 한국창업보육협회(사)에 마케팅 인프라 구축 보조금 15억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전시 행사 참석 지원 -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운영 - BI 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지원 등 실시
<p>2. 예비창업자 양성체계 내실화</p> <p>④ 교육체계와 연계한 창업교육 기반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강좌 확대 및 전문화 (일반 30회, 전문 80회) ○ 창업대학원 개설·운영(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 및 개설준비 - 교육생 모집 및 운영 <p>⑤ 창업동아리를 청년창업의 산실로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동아리 지원(130개) ○ 청년 해외창업연수(20개팀) ○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개최(1회) <p>⑥ 여성기업, 소상공인 창업촉진 및 경쟁력 강화</p> <p><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지원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 여성기업전용펀드 결성 추진 <p><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강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강좌(43회 2,344명) - 전문강좌(60회 2,751명) ○ 창업대학원 개설·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로 5개대학 선정(4월) - 교육생 모집(9월, 11월) ○ 136개 창업동아리지원 ○ 21개팀 학생해외창업연수 ○ 서울무역전시장, 12월 개최확정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14개) ○ 여성기업전용펀드 결성(250억원) ○ 소상공인자금(3,500억원)외 타 정책자금 1,428억원 추가 지원

다. 창업보육사업의 효율성 제고

* 매니저 역량제고, 운영비 차등지원, 입주기업 마케팅 지원

② 예비창업자 양성체계 내실화

가. 예비창업자 양성체계 구축

* 권역별 창업전문 대학원 설립, 산업분야별 전문강좌 확대

나. 여성기업·소상공인 창업 저변 확충

*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소상공인창업자금 규모 확대

4.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1) 규제개혁 추진실적

1) '04. 4월 공장설립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추진

①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총 40건의 개선과제 중 33건 개선완료('05. 8월말 현재) 7건 개선 추진 중

② 주요 개선완료 과제

<표 25>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연도	규제개선 내용(근거규정)	소관부처
2004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전용시 농지 조성비 면제 (농지법시행령 제57조 관련 별표2 제8호의3 신설)	농림부
2004	사업계획승인기간 단축, 30일⇒20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1조)	중기청
2005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공장용지의 전매임대허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3조)	중기청

제 2 장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와 현황

연도	규제개선 내용(근거규정)	소관부처
2005	1만㎡이하 공장 설립 허용 (국토계획법시행령 71조별표20개정)	건교부
2005	인근도로와 폭4m이상의 도로확보의무폐지 (국토계획법시행령제56조별표)	건교부
2005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을 부지조성공사비의 100%⇒20%수준 으로축소(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건교부
2005	공장설립승인기간 단축, 30일⇒20일 (산집법시행규칙제6조2항, 제10조1항)	산자부
2005	기초단체장 농지전용허가권 범위확대, 1만㎡⇒3만㎡ (농지법시행령 제72조 및 농지법 시행규칙 제25조별지 1 6호)	산자부
2005	중소기업창업을 위한 전용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조림비, 10년간 육림비 및 가산금) 면제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관련 별표5 제2호 신설)	산림청

5.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표 26> 2008년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완료일자)	주요 성과
1	창업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법시행령개정,(08.7.24) ○ 주택채권 구입 면제를 위한 주택법시행령 개정(08.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설립 제출서류 표준화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한단축(5일→3일)(재정부) ○ 주택 채권 매입의무 폐지(국토부)

제 4 절 중소기업 창업 규제 완화의 현황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완료일자)	주요 성과
2	창투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의무제도 개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국회제출 ('08.10.1)	○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 완화(50→40%) 및 상장주식 투자한도 완화 ○ 자유로운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코스닥 시장 등 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
3	창투사의 행위제한 일부 완화(창업투자대상업종 완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국회제출 ('08.10.1)	○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허용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활성화 및 고용창출 유도
4	정책금융 지급시 소요기간 단축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융자사업 추진지침 개정 ('08.4.25)	○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애로 발생시 신속한 대처 가능 ○ 수출금융 및 원부자재구입자금 지원결정기한 단축(30일→20일)으로 원부자재 810건, 2,155억원, 수출금융 220건, 874억원을 지원 ○ 수출기업에 보다 빠른 자금지원으로 수출계약 위반 방지 등에 기여
5	연대보증인 입보기준 완화	○ 신보·기보 내규 개정 시행 ('08.5.1)	○ 연간 5,000여명 정도의 소액주주가 혜택
6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 등록규제 소관부처 국토해양부로 변경 ('08.4.30)	○ 국무총리실 등록규제 폐지
7	연수업체의 선정	○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제28조, 제30조) 개정	○ 국무총리실 등록규제 폐지

제 2 장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와 현황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완료일자)	주요 성과
		(‘08.5.16)	
8	연수업체 교육 및 건강검진	○ 외국인산업연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제22조) 개정 (‘08.5.16)	○ 국무총리실 등록규제 폐지
9	정책자금 지원체계 단순화	○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 국회제출 (‘08.10.31)	○ 집행창구를 증진공으로 일원화(집행창구 11개 → 1개)하여 수요자 편의성 제고 ○ 인력(△40명), 사업경비(△38억원) 등 행정비용 절감 및 중복지원 해소 ○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간 칸막이 및 부처별 소관 구분을 없애 정책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
10	중소기업정책 온라인 처리시스템 도입	○ 시스템구축 완료 (‘08.11.28)	○ 온라인사업신청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방문접수에 따른 불편 해소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 기관에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온라인 사업신청, 사업관리, 결과 통보 등 편의 제공
11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조사 개선	○ 중소기업기본법 국회제출 (‘08.10.31)	○ 중소기업의 경영외적 행정부담 감소
12	사업전환지원대상 업종제한 폐지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국회제출 (‘08.10.16)	○ 사업전환 신청 기업에 대한 제한업종 폐지(광업·건설업 등 업종 신청 가능)로 모든 업종에 문호개방을 통해 기업편의와 형평성 제고 ○ 사업전환시의위원회 폐지를 통한 심사기간 단축(30일→25일 이하)
13	공영주차장 사업요금 감면범위 확대	○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 국회제출 (‘08.12.1)	○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감면범위 확대로 인해 시장상인 및 고객의 재래시장 접근 편의성 증진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완료일자)	주요 성과
14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허용업종 확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 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100호 '08.11.4)	○ 입주 허용 업종 확대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입지난 해소에 기여
15	공장등록시 구조안 전진단 의무 완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 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2100호 '08.11.4)	○ 경공업, IT 관련 제조업 등이 입 주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자의 부 담 완화
16	중소기업 R&D사업 의 온라인화로 기업 편의 제고	○ R&D사업 온라인 시스템 구축완료 (‘08.12.30)	○ 온라인 전자문서(EDMS) 및 전자 협약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요자 편 의(신청절차 간소화 : 11단계65개항 목 → 4단계20개항목) 중심의 사업 참여 방법 간소화 *기존 평균 협약일 대비 사업비지 급일 30일→10일 이내로 단축 *업무비용 절감 : 약 940백만원
17	창업투자회사 및 조 합의 해외투자요건 폐지	○ 중소기업창업지 원법 국회제출 (‘08.10.1)	○ 해외투자 요건 폐지로 창업·벤 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펀드의 해외자본 유치를 촉진
18	대덕특구 연구기관 의 신기술창업전문 회사 설립 허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국 회제출 (‘08.11.3)	○ 대덕 특구내 27개 연구기관이 지 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기술사업 화 촉진이 기대(전자통신연구원 등 에서 전문회사 설립 예정)
19	대학·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 사 발행주식 보유 비율 완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국 회제출 (‘08.11.3)	○ 창업전문회사 설립 및 유상증자 시 대학·연구기관의 부담 완화가 기대(전문회사 설립 촉진기대 - 5개 기업 설립 중)
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요건완화	○ 수출유망 중소기 업 요령 개정 (‘08.10.7)	○ 수출실적 산정기간 선택적 유연 성 부여 ○ 신청대상 범위 확대(교육서비스

제 2 장 중소기업 창업규제 법제와 현황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완료일자)	주요 성과
			업 추가)
21	벤처기업 주식교환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기간 연장	○ 벤처기업주식교환확인요령 개정 ('08.8.25)	○ 신청서류 보완기간을 실질적 필요기간 만큼 연장함으로써 민원인 편의 확대
22	싱글PPM 품질혁신 사업 추진계획 제출 기한 조정	○ 싱글PPM 품질인 중요령 개정 ('08.8.25)	○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의 내실있는 검토 및 차년도 사업의 조기 시행
23	우수 체인사업자 지정 및 재개 신청서류 간소화	○ 우수체인사업자에 관한 운용요령 개정 ('08.8.25)	○ 우수체인사업자 지정신청 구비서류(8종→6종) 및 재개신청 구비서류(4종→3종) 등을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 증대
2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방법 개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 ('08.9.5)	○ 민간자부담이 있는 경우 상인회에 위탁집행 가능금액 조정(사업비 전체→5억원미만) ○ 시설현대화사업의 특혜발생 및 부당사례 가능성 방지, 신속한 사업 추진
25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평가기관 제한 개선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개정 ('08.9.30)	○ 입주가능한 기술평가기관의 종류를 제한한 것을 없앴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
26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범위 확대	○ 창업보육센터운영요령 개정 ('08.8.25)	○ 건립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완화를 통해 BT 등 신규 특화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육 인프라 확충 및 보육성과 제고
27	영문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허용	○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08.11.27)	○ 해외진출·국제협력 및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벤처기업에서 홍보 수단으로 활용
28	벤처기업 확인신청 관련 이의제기기간 연장	○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 ('08.11.27)	○ 유사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7일로 연장함으로써 현실적인 재평가 기회를 제공
29	싱글PPM 품질인증 보완 신청기간 연장	○ 싱글PPM 품질인 중요령 개정 ('08.12.18)	○ 충분한 보완기간 부여(7일→14일)로 신청서 2차보완 비율 감소전망 *2차보완 비율(연기준) : (종전)20%

제 4 절 중소기업 창업 규제 완화의 현황

번호	과제명	조치사항(완료일자)	주요 성과
			→(개정)10%
30	수·위탁우수기업 지정 확인서류 제출 간소화	○ 수·위탁거래의 공정화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 개정 ('08.12.19)	○ 신청서류 간소화로 인한 신청기업 부담완화 - 기존 신청서류 3개 ⇒ 2개로 축소 - '08년 납품대금지급내역서 작성시 500건에 달하였으나 고시개정 후 내역서 미제출 가능
31	창업투자보조금 신청서류 간소화	○ 중소기업창업투자보조금사업 운영요령 개정 (08.12.30)	○ '창업여부 자가확약서'를구비서류에서 제외하여 사업자 편의 증대 - '09년 약 300개 신청업체 혜택 예상
32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참여기준 완화	○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공고 ('08.12.29)	○ 수혜자의 수 확대 및 수요자 선택 가능성 확대
33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준 완화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08.12.29)	○ 수혜자의 수 확대 및 수요자 선택 가능성 확대
34	공동상표지원신청시 불필요한 서류제출 폐지	○ 공동상표지원요령개정 ('08.12.23)	○ 제출서류 간소화로 공동상표 추진체당 약 30매 이상 감소 * '08년 16개 추진체가 사업 참여, 1개의 추진체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

제 3 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제 1 절 창업절차 규제법령에 대한 입법평가

1. 법인설립절차의 규제 현황

(1) 수범자의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인식

창업은 일반적으로 사전준비→법인설립→공장설립의 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사전준비에서는 주로 투자수익모델의 수립, 자금,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설비의 마련과 함께 개업 준비행위가 이루어진다. 한편 공장설립절차는 제조업 등 필요한 경우에 수반되는 절차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논의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기로 한다.

여기서의 논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법인설립절차이다. 법인설립절차에 있어 본질적인 규제는 복잡한 법인설립절차로 인하여 겪는 불편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창업 규제의 핵심적인 규제사항으로 조사된 바 있다. 중소기업의 창업경험을 가진 경영자 혹은 임직원에게 대한 설문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하거나 준비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복수응답가능) 자금의 준비 및 조달의 문제(34%)와 함께 창업관련 규제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라고 답한 응답이 3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표 27> 법인설립절차

구 분	법정 절차진행순서	비 고					
법인설립 준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① 발기인구성</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② 상호검색 및 정관작성</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③주식사항 결정</td> <td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④청약 및 인수</td> <td style="width: 33%;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⑤주금 납입</td> </tr> </table>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⑥ 상호검색 및 정관작성</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5px;"> <tr> <td style="width: 50%;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⑦ 이사회개최</td> <td style="width: 50%;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⑧ 창립총회개최</td> </tr> </table>	③주식사항 결정	④청약 및 인수	⑤주금 납입	⑦ 이사회개최	⑧ 창립총회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금규모 결정 ○ 유사상호 여부 확인 ○ 주당금액, 발행주식 수결정, 주금납입은 행결정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 이사회 및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③주식사항 결정	④청약 및 인수	⑤주금 납입					
⑦ 이사회개최	⑧ 창립총회개최						
공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① 정관 및 의사록 공증</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8만원, 창립총회/이사회 의사록 각 3만원 					
설립등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①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② 인감제작 및 인감신고서 작성</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③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④ 채권매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⑤ 대법원 증지 구입</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⑥ 설립등기 및 인감카드발급신청서 접수</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⑦ 법인등기서 수령</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세: 자본금의 0.4% 교육세: 등록세액의 20% ○ 채권매입: 자본금의 0.1% ○ 대법원증지료: 2만원 					
사업자 등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5px;">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② 사업자등록증 수령</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등록, 신고업종 검토 					
4대보험 가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① 4대보험가입신청</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신청 					
취업규칙 신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① 취업규칙신고</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사무소 신고 					

(2) 법인설립절차의 규제 현황

창업절차로서의 법인설립과정에서 수범자들이 인식하는 규제의 본질은 복잡한 절차와 서류의 제출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물적 비용 부담이다. 우선 법인설립시 시군구는 물론, 세무서 및 등기소 등 행정규제기관에 방문하여야 하는 기관수가 7개 기관을 방문하여 각종의 행정적인 절차와 요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는 先등기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규제사항이기도 하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설립시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자본금제도, 공증, 설립등기 등 법인설립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영미법계에 속하는 캐나다의 경우 先설립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우선 법인설립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①회사의 등록과 ② 사업자등록 등 2단계로써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이 완료된다는 점과 대비된다.

법인설립시 위의 7개 이상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매우 복잡하고 중복적이다. 우선 정관 등 32개 서류를 세무서 등에 7개 행정기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중 17개 서류는 5개 행정기관에 중복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물론 이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그 견본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작성방법이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범자가 이해하고 작성하거나 제출하는데 있어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창업자의 97%는 이를 법무사 등에게 절차를 대행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절차대행에 따른 수수료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중복제출을 포함하는 복잡한 서류는 행정기관의 전산망을 통한 처리절차가 완비되지 않아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와 같이 지리적으로 분산된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이행을 위한 창업자의 수고는 배가된다. 예컨대 화성시 소재 A회사가 법인설

립을 위해 방문해야 하는 루트를 추적한 결과를 예로 들어 본다. 우선 회사설립절차에 따라 상호검색 및 설립등기준비를 위해 등기소가 소재하는 오산을 방문하여 해당 절차를 이행한다. 그 후 다시 화성시청을 방문하여 법인등록세를 납부한 후, 수원시에 소재하는 공증인사무소에서 공증과 은행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법인설립에 최소한 17일이 소요되나 캐나다의 경우에는 7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써 3일 이내 처리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세계은행, 2008).

<표 28> 법인설립 단계별 제출서류의 비교

절 차	한 국			캐나다
	중복제출	개별제출	합계	
상호검색 (상업등기소)				
공증 (공증사무소)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주주·임원 인감증명서, 진술서, 창립사항보고서	8	
주금납입 (은행)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주명부	주금납입의뢰서	4	
등록세납부서 (시군구청)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신고서	2	
상업등기 (상업등기소)	신청서,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발행사행동의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등록세영수필증, 채권매입필증	13	정관, 등록수수료 확인서, 인증받은 정관 겹표지, 상호검색확인서

절 차	한 국			캐나다
	중복제출	개별제출	합계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세무서)	정관, 주주 또는 출 자자명세서	신청서, 법인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시 상가 건물 일부 임차시 도면, 사업허가·등 록필증사본, 현물출 자명세서	5	신청서, 법인설 립증서 사본, 정관
노동사무소 신고 (지방노동청)				
합 계	17개	15개	32	7개

(3) 법인설립절차의 규제요소 현황

우리의 상법 등에서 법인설립절차를 규제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적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규제성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첫째로는 법인설립의 규제법령을 입법할 당시 즉 과거의 법현실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로는 특히 현재의 규제법령이 입법할 당시에는 대·중·소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규율하고 있었던 것인데 오늘날 중기업 혹은 소규모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까지 동일한 기준과 규제를 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부터 판단하여 보건대 기존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반영되고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요소들이 있다. 이는 이미 많은 문헌에서의 논의,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경험적 인식, 또한 정책기관에서 개선요구를 받아온 사항들이기도 하다.

상법 및 상업등기법은 등기신청시 특별시, 광역시, 시·군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상호의 판별을 위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창업자의 32%가 상호선정의 문제를 창업시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특히 이번 입법평가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는 상법의 입법당시 합리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던 상호사용금지의 지역적 범위가 오늘날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광범한 지역에 까지 그대로 이어져 적용되게 되는데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을 창업함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상법 및 공증인법은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하여 정관과 의사록의 공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법인설립절차의 복잡성을 이유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소규모회사의 창업의 경우 창업자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잦은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불하는 공증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법인설립의 실무계에서 지적하는 바이다. 소자본창업자는 이러한 공증비용(약 14만원)의 부담을 불필요한 것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규제절차로 인하여 발생하여 설립관계자가 부담하게 될 법인설립비용은 직간접비용을 종합하여 대략 1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는 비교대상이 되는 캐나다에 비해 4배의 수준이다. 특히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공증, 인감비, 채권매입비 등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표 29> 주식회사 설립시 소요비용 현황(자본금 5천만원 기준)

(단위: 만원)

절 차	한 국	캐나다
① 직접비용	50	35
- 공증, 인감, 채권매입비등	26	-
- 법인등록세(등록비)	24	35

절 차	한 국	캐나다
② 간접비용	80	30
- 자본금 마련 금융비용	30	-
- 법인설립 대행 수수료*	50	(30)
합 계	130	35(65)

* 우리나라의 법인설립은 약 97%가 법무사에게 대행하고 있음

2. 법인설립절차 규제법령의 주요내용

(1) 소상인에 대한 규제

상법상으로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자본규모(1천만원) 미만의 상인을 소상인으로 규정하고 이 소상인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규제를 면제해 주고 있다. 다만 이 소상인에게 면제되는 상법상의 규제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 면제되는 사항은 자연인 상인으로서의 소상인에 대해서만 적용을 면제하는 것일 뿐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회사인 경우에는 그것이 주식회사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들 사항은 상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 제 9 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편 창업의 준비단계에서는 이미 상호선정을 하고 그 상호의 사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시작하게 된다. 상법은 제18조에서 상호선정에 대한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다만 회사의 상호에 관하여는 회사의 형태별로 상호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비상인의 상호에는 ‘회사’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제20조). 특히 상호선정을 제한하는 가장 강력하고 일반적인 제한사유는 소위 기업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제23조 제1항). 여기서는 부정확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사한 규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존재한다. 즉 동법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標識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법은 상호 단일주의원칙을 취하면서(제21조 제1항)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개의 영업에는 수개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율하고 있다. 다만 단 회사는 수개의 영업을 하더라도 1개의 상호 사용가능하다. 회사지점의 상호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법은 상인이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상호권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상호사용권은 상인이 자유로이 상호를 선정하고,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18조). 비록 타인이 상호를 이미 사용하거나 등기하고 있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선정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23조 제2항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를 등기한 자는 타인의 부정목적 상호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군구 지역 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제22조: 유사·동일상호의 등기배제청구권).

또한 동일 시군구 지역 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함으로써 동일 시군구지역내에서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지된다.

한편 상호의 가등기제도에 관하여는 상법 제22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창업절차시 상호사용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

상법상 중소기업 법인설립에 있어 규제로써 작용할 소지가 있는 상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 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 제21조 (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상호동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 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다음으로 법인설립절차에 있어 많은 행정적 규제절차를 수반하는 상업등기 관련 규제법령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법의 규율사항이지만 그 구체적인 절차는 상업등기법과 공증인법에서 규율한다.

우선 상법에서 규율하는 상업등기에 관한 기본적 규율은 우선 제34조에서 등기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소재지의 법원 상업등기부에 하도록 규정한다. 법원의 각 등기소가 비치하여야 할 등기부는 상호등기부, 무능력자등기부, 법정대리인등기부, 지배인등기부, 각종 회사형태에 따른 합명회사등기부, 합자회사등기부, 주식회사등기부, 유한회사등기부, 외국회사등기부가 있다(상업등기법 제5조 제1항).

한편 회사설립시에는 각 회사형태별로 등기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80조의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제317조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그리고 등기사항의 변동 또는 소멸이 있는 때에는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제40조). 또한 본점에 등기할 사항은 지점에도 등기하여야 한다(제35조).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법인설립시의 등기에 있어 상업등기법 제 80조는 정관과 창립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도록 하고, 공증인법 제63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에서는 작성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은 각각 공증인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본금의 총

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공증인은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해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하의 규정은 법인설립시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각 법령의 내용이다:

[상 법]

- 제34조 (통칙) 본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 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 제36조 삭제 <1995.12.29>
- 제37조 (등기의 효력) ①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 제39조 (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

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09.5.28]

- 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감사인의 선임청구)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 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 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95.12.29]
- 제308조 (창립총회) 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

[상업등기법]

- 제79조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①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80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공증인법]

-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①「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③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④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4조 (부속 서류의 연철) ①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1. 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2.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제3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4. 그 밖의 부속 서류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66조 (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개정 2009.2.6>)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④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한편 법인설립절차의 규제내용중 기관의 선임에 관한 규제법령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상법은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자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의 구성원으로써 이사의 선임의무를 규정한다. 이사

는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을 권한으로 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이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종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감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상법상 이사는 현실에서 지칭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상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등기된 이사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이사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어야 하고(상법 제382조), 또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이다(제368조). 이때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출석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서 선임한다. 1995년 개정 전 상법에서는 이사선임을 위한 특별결의요건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출석과 그 출석수의 과반수이상을 요구하고 정관의 다른 정함으로도 이를 완화하거나 가중할 수 없었으나(개정 전 상법 제384조), 개정상법에서는 제384의 특별요건규정이 삭제되어 이제는 개정된 제368조 제1항의 보통결의만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성립이후 요구하는 이사의 수에 관한 것이다. 상법은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383 제1항), 1998년 개정상법에서는 소규모중소회사에게 까지 3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3인 이상으로 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자본금 5억 미만의 회사는 2인 이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의 수는 개정상법을 통해 중소기업에 있어 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상법의 요건에 의한다면 회사설립시 자본금 5억 이상이면 그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규모 회사에 해당하더라도 여전히 등기이사를 3명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이사의 수의 문제는 특히 우리 상법이 이사의 임기를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동법 제383조). 상법이 이와 같이 이사의 임기를 제한하는 이유는 이사권한이 광범위하고 또한 임기 중의 해임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사가 선임된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및 제3항). 또한 등기를 마친 때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액의 결정을 이어나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경우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주주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이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388조).

이하의 상법상 이사의 선임에 관한 규정이다:

-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1.30]

- 제383조 (원수, 임기) ①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 제5호의2,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 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⑤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 제2항,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1항 및

제527조의5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⑥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 제3항, 제366조 제1항, 제368조의4 제1항, 제393조 제1항 및 제412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사회 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다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임의기관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상법 제409조 제1항). 선임된 감사는 등기하여야 한다(제317조 제2항).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동법 제410조).

감사의 상근 여부와 관련하여 상법상으로 감사가 상근일 필요는 없으나 상장회사 중 자산총액 1000억 이상인 회사는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2009년 개정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하의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선임의무를 경감시켜주고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 제409조 (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84.4.10>

④제1항, 제296조 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⑤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4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3. 입법평가대상 법규정과 문제상황

(1) 중소기업 상호 선정의 규제

-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

상법은 상인이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상호권을 규정하고 있다. 상인은 원칙적으로 상호를 자유롭게 선정하고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즉 타인이 상호를 이미 사용하거나 등기하고 있더라도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선정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이 상호의 선정은 제한된다. 즉 ①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상호를 등기한 자는 타인의 부정목적 상호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시군구 지역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③ 동일 시군구 지역 내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동일 시군구지역내에서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지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창업시에 상호선정에 대한 규제가 규제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상업등기소의 담당 등기관에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이 거부될 때에 대비하여 추가로 변경 상호를 준비해야 하는 등 상호의 선택과 사용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다. 또한 유사상호도 일정한 경우 금지됨에 따라 상호검색과 그 결정에 따른 부담에 관하여도 논란이 제기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결과에 관하여는 후술하겠지만 법인설립 등기에 따른 유사 상호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상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시 상호를 변경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상당한 정도로 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²⁷⁾

27) 양현봉·이상신, 법인설립제도개선방안 - 한국·일본·미국·캐나다제도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2007.9., 55면.

특히 상호규제의 지역적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상법은 동일한 시군구 지역 내에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사업자에 비하여 새로이 진입하는 중소기업의 창업자에게는 진입규제로 인식될 만큼 지역적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이다. 즉 종전 직할시 또는 시지역으로부터 특별시, 광역시 등 공간적 범위가 확대된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2) 상업등기 관련 규제

[상 법]

- 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 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 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09.5.28]

[상업등기법]

- 제80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 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공증인법]

- 제63조 (정관인증의 절차) ①「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정관의 인 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③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④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6조의2 (법인의사록의 인증 <개정 2009.2.6>)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③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2.6>

④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우선 상업등기절차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상법에서 규정한 후 그 구체적인 절차는 상업등기법과 공증인법에서 규율한다. 그 핵심은 설립등기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이사록 모두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하다. 즉 모집설립의 경우 새롭게 주식인수에 응한 주식인수와 발기인 등으로 구성되는 창립총회의 개최가 특징이고 이에 따라 설립등기시에는 정관, 창립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이사록의 인증이 필요하다. 발기설립시에는 창립총회 대신 발기인들만의 발기인총회가 필요하므로 설립등기시에는 정관과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의 인증이 필요하게 된다.

문제는 설립등기의 신청서류에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공증인에 의하여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은 각각 공증인의 인증을 얻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완화규정은 2009년 개정법에서 기존의 논의를 반영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절차상의 규제를 제대로 철폐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금 규모의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제대로 반영해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3) 이사선임의무의 규제

[상 법]

- 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전문개정 2009.1.30]

- 제383조 (원수, 임기) ①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

⑤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

⑥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및

제41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 5.28>

상법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이사의 선임의무를 규정하면서 현실에서 호칭되는 바와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상법’상의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금 5억 미만의 회사는 2인 이하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상법상 요구되는 이사의 수는 중소기업의 주식회사의 사정을 반영하여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완화된 설립자본금 규모기준이 5억 이상이면 그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여전히 등기이사를 3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사의 원수를 경감시키는 회사의 규모기준이 자본금 5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원래의 중소기업회사를 배려하기 위한 규모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이다. 또한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여전히 남는 문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자본금규모가 5억 이상인 회사이면 여전히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표 30> 종사자 규모별 중소기업의 평균자본금

종사자수 (인)	5~9	10~19	20~49	50~99	100~199	200~299
자본금 (백만원)	210	375	601	1,322	2,956	6,626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05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4) 감사선임관련 규제

[상 법]

- 제409조 (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84.4.10>

④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

⑤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

⑥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4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주된 임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임의기관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회사형태로써 설립하는 경우 90%이상이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주식회사형태인 한 감사선임은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상근 여부와 관

련하여 상법상으로 대규모의 상장회사가 아닌 한 감사가 상근일 필요는 없다.

물론 최근 2009년 개정상법에서 이사선임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선임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감사선임의무를 면제하는 회사규모기준을 자본금 1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더라도 자본금규모가 10억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 여기서도 중소기업의 부담경감을 보다 명확하고 통일적으로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면제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말하자면 중기업과 함께 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명확하게 제시될 것이 요청된다.²⁸⁾

<표 31> 자본금규모별 중소기업체(5~299인)현황

자본금 (백만원)	500미만	500~1000미만	1000~2000미만	2000이상	합계
업체수(개)	80,572	16,597	6,494	4,039	107,702
비중(%)	(74.8)	(15.4)	(6.0)	(3.8)	(100.0)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2005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4. 수범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의 결과

(1) 중소기업창업 관련 규제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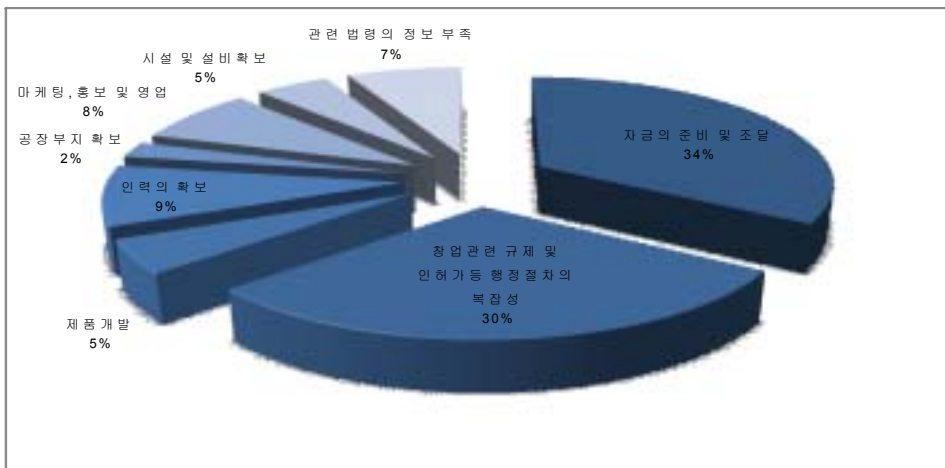
법인설립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창업을 함에 있어 혹은 그 준비과정에서 수범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했던 애로요인에 관하여 설문을 하였다. 이는 창업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

28) 박정구, 글로벌경쟁시대의 중소기업관련 법제 개선방향, 중소기업연구원 2005.7, 84면.

악하여 관련되는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위 설문문의 결과 중소기업의 창업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는 가장 많은 34%의 응답자(1,228명: 복수응답)가 자금의 준비 및 조달의 문제를 꼽았다. 그 다음은 근소한 차로 30%(392명)의 응답자가 ‘창업관련 규제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도 인력의 확보의 어려움 9%(108명), 마케팅·홍보 및 영업의 문제 8%(92명), 관련 법령의 정보부족 7%(88명), 제품개발의 어려움 6%(60명), 시설 및 설비확보의 문제 5%(56명), 공장부지 확보의 문제 2%(28명)의 순이었다.

창업과정 혹은 창업준비과정에서 자금의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제도외적 현실적인 어려움을 표현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비중으로 애로사항으로 답한 제도적인 창업관련 규제 및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남겨둔 과제이다. 이러한 규제절차는 본 입법평가의 대상인 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를 포함한 창업지원제도상의 규제절차가 앞으로 중소기업창업의 활성화와 용이화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중소기업 창업 관련 규제에 대한 일반적 인식



(2) 중소기업 상호 선정의 규제

상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써 동일 시군 구지역내에서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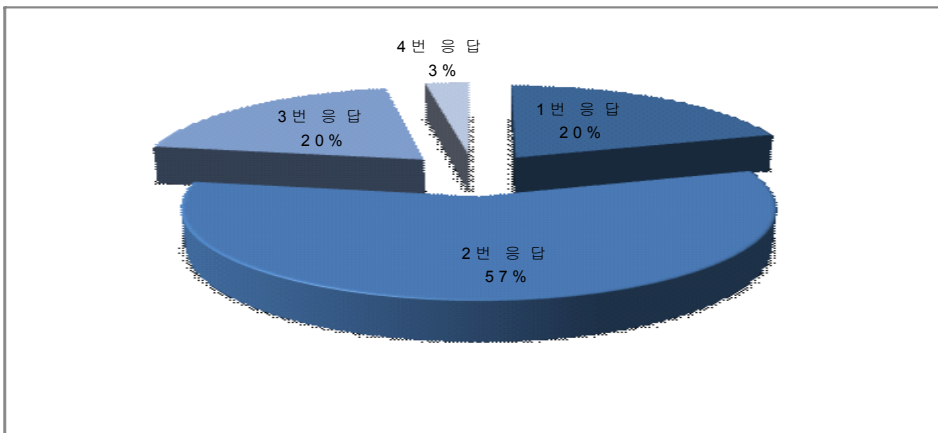
이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자가 상호를 선택하기 위한 부담에 관하여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었고 실제의 실태조사에서도 상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창업에 제약을 받은 경험을 지적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관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중소기업의 창업시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나 등기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에 관하여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응답자의 57%가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중복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응답하여 현행상법상의 비현실적 상호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이미 등기된 상호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응답과 함께 상법상의 규제가 ‘불필요한 규제도 아니며 개선할 필요도 없다.’고 한 응답이 각각 동일하게 20%를 차지하였다. 그밖에 중소기업지원 관련법상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호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3%로써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응답결과 현행 상법에서 규제하는 상호사용금지의 지역적 범위가 현실을 반영하기에는 너무 넓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창업자에게는 창업시 상호선정의 자유를 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관한 유사한 선행연구에서 전문가의 견해도 현행 상법상의 유사상호 규제는 기업 활동의 광역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과 상호심사기간의 장기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에서의 개선논의를 참조하고자 제언한다. 즉 일본 신회사법은 신규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동일 주소지에서의 동일상호의 등기는 금지한 대신, 유사상호 규제를 폐지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이 설문조사의 응답결과 유사상호의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게 나온 점을 본다면 시장에서의 동등한 경쟁수단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호규제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 상호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동일 지역 내 유사상호사용규제에 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572명)

한편 이러한 설문조사결과에 대하여 전문가의견을 대비시켜 보았다. 유사상호규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은 설문조사결과와 일치된 의견을 보였는데 결국 유사상호규제의 지역적 범위가 너무 좁다는 의견으로 요약된다.

[유사상호규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

현행 상법상의 유사상호 규제는 기업 활동의 광역화 추세에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사상호의 심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향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신회사법 제정과 함께 신규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동일 주소지에서의 동일상호의 등기는 금지한 대신, 유사상호 규제를 폐지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는 현행 유사상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창업 촉진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경제계의 요청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일본의 입법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회사설립에 따른 유사상호 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동일 상호는 금지하는 대신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창업 초기단계 기업들이 상호 선정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상업등기의 규제

법인설립절차에 있어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상법, 상업등기법 및 공증인법에서는 다양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설립등기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이사록 모두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증을 면제해주는 대신 확인과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소기업창업을 배려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따라서 설문은 현행법에 의하면 회사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작성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은 각각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 소규모회사 창업시에도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총 572명의 응답자중 소규모회사 창업시에는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이 필요하지만 공증인의 인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공증인의 인증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답한 응답자가 46%인 264명에 달했다. 그 다음 소규모회사 창업시에도 그러한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응답도 42%(240명)에 달했다. 소규모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조차도 불필요한 것으로 써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전체응답자중 12%(68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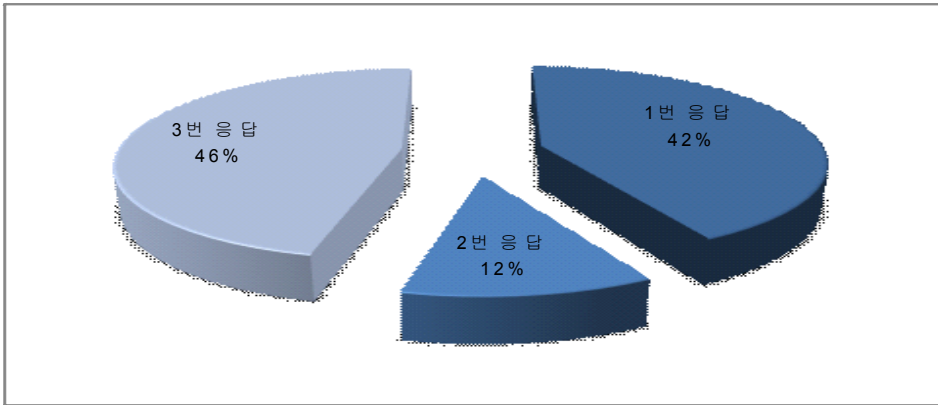
설문조사결과는 현행법이 중소기업창업자를 위하여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도한 규제에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규제법인 공증인법이 공증인의 인증을 면제하는 회사규모기준을 자본금 10억으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체계적 정합성의 측면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획정기준과 통일시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할 것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한 공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다른 연구의 실태를 위한 설문조사에서는 ‘공증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증의 실효성도 없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법인설립 등기제도 유지 차원에서 정관 공증만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20.5%로 나타난 바 있다.²⁹⁾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의사록에 대한 공증은 폐지하고 정관만 공증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법 제292조(정관의 인증) 및 공증인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의 삭제를 통해 정관 공증도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신회사법 제정시 공증의 실효성이 별

29) 양현봉·이상신, 전계서, 171면 이하.

로 없다는 이유로 공증제도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공증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때문에 공증제도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상업등기규제 중 공증인 인증을 요구하는 규제에 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572명)

(4) 이사선임의무와 이사의 수에 대한 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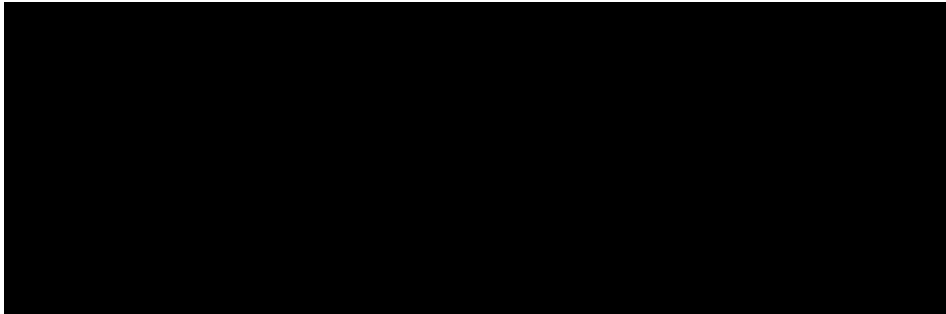
상법상 주식회사에 있어 선임하여야 하는 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이나, 자본금 규모기준 5억 미만인 회사는 1~2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시행한 바 있다. 중소기업의 주식회사에 있어 등기되는 이사의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사정을 배려하여 이사 수의 선임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는 규모기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상법상 회사 설립시 자본금 5억 이상이면 그 기업이 소규모회사에 해당하더라도 등기이사를 3인 이상 두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규제가 실제의 기업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572명중 338명으로 68%에 달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180명으로 31%를 차지하였다.

[그림 4] 중소기업회사의 이사 3인 이상

선임의무에 대한 개선필요성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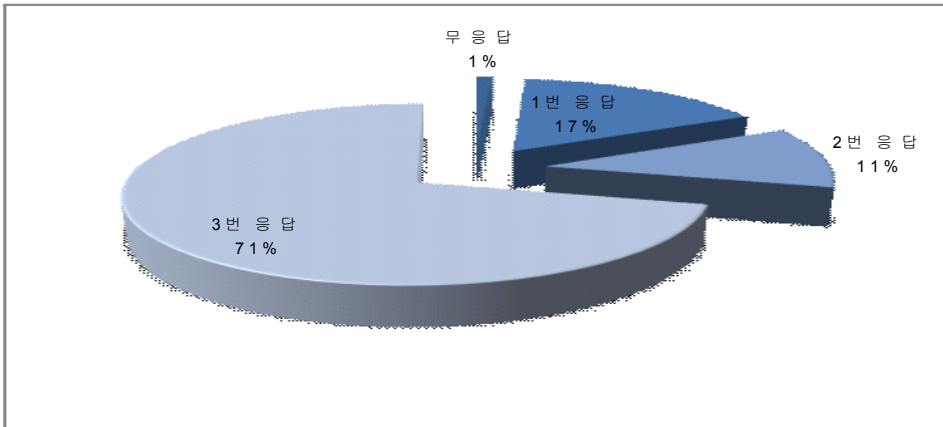
(총 응답인원 : 572명)

다음으로 만일 소규모회사 설립시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개선하여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하여 앞의 응답자 388명중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할 회사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규모회사 기준에 따라 종사자수를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고 답한 의견이 276명으로 71%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이사를 1인 이상만 선임하도록 규정하자’는 의견이 17%인 64명이었고,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할 회사의 자본금 규모기준을 높여 규제를 완화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인 44명이 대답하였다.

따라서 이 설문조사의 결과 상법상 주식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소규모회사에 해당하더라도 자본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여전히 등기이사를 3명이상 선임하여야 한다는 점에 수범자들이 수긍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이다. 또한 소기업

은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신회사법에서 주식양도제한회사라는 규정을 정관에 두게 되면 이사 1인만을 두거나, 이사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참조할 만하다.

[그림 5] 소규모회사 이사선임의무에 대한 개선의견



(총 응답인원: 388명)

(5) 중소기업의 감사 선임에 대한 규제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상법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감사선임면제규정은 중소기업 창업시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근의 법 개정에서 이루어진 개선조치이다. 그러나 감사선임의무를 면제하는 회사규모기준을 자본금 1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실제의 중소기업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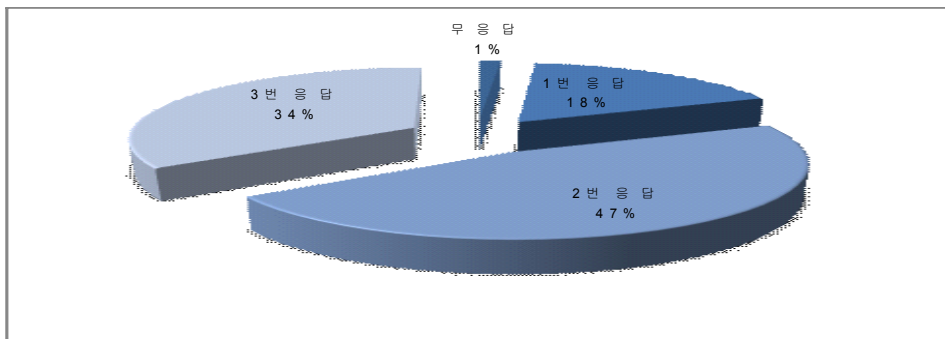
따라서 본 설문조사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하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면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제도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세 가지의 답문

을 제시하였다: ① 현행 제도는 적절하다. ② 회사가 정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 ③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규모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아예 감사의 선임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이 설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572명 중 ② 답문인 ‘회사가 정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47%, ③ 답문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규모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아예 감사의 선임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34%에 달하였다. 현행제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18%를 차지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새롭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법상의 감사선임의무 완화규정이 실제의 중소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체적으로 이미 상법 제 329조에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 마당에 자본금 10억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을 정하고 그 미만의 규모회사에 대하여 감사선임의무를 면제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선임의무 완화의 취지가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와 부담경감이라고 한다면 앞서의 이사선임규제 논의에서와 같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기준으로서 감사선임의무의 면제대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6] 소규모 회사창업시 감사선임의무 규제에 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572명)

제 2 절 벤처기업 창업규제법령에 관한 입법 평가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1) 벤처기업의 정의와 현황

1) 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위험성은 높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미국의 “중소기업투자법”에 의하면, “벤처기업이란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적인 기반으로 하여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과거 벤처기업의 개념을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체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에서 크게 활약하는 초기 중소기업을 “연구개발기업”이라 지칭하면서 이를 “벤처비즈니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7년 8월에 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벤처기업을 ① 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해당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벤처투자기업), ②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중이 5% 이상인 기업(연구개발기업), ③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하여 기술성과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기업(신기술평가기업)의 3가지 유형으로 정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후 2006년 4월 “신기술평가기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기술평가를 거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용자를 받은 “기술 우수기업”을 새롭게 벤처기업에 포함시켰으며,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비 요건 외에 별도의 사업성 평가를 받도록 하는 등 세부요건을 정비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수행하던 벤처확인업무도 민간으로 이관시켜 벤처기업에 투자·용자·보증하는 벤처금융기관이 직접 벤처기업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표 32> 벤처기업의 유형별 요건

유 형	요 건
벤처투자기업	○벤처투자기관(창투자·신기술금융회사·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이 기업의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할 것 ○투자유지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최소 5천만원 이상 투자할 것
연구개발기업	○연간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5-10% 이상일 것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사업성 평가결과가 우수할 것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중진공·기술신보 등이 기술평가 후 보증 및 대출한 기업 ○보증 및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기술성평가가 우수할 것
예비벤처기업	○창업전이거나 창업한 지 6개월 미만의 기업 ○사업성·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중진공에 의해 ‘확인’된 기업

2) 벤처기업의 창업절차

벤처기업에는 개인회사와 법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일반적 형태인 법인의 경우를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하며, 법인 중에서도 주식회사의 형태를 전제한다면 기본적인 창업절차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다르지 않다.

주식회사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자본구성에 있어서 상법상의 최소자본금은 5천만원이나 벤처기업의 경우는 그 최소자본금을 5백만원으로 하향하여 설립을 용이하게 하도록 지원하며(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2), 주주들의 출자에 있어서 현물출자의 대상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동법 제6조).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일반적으로 ① 발기인의 구성, ② 유사상호 검토 및 회사인감의 작성, ③ 정관작성 및 공증, ④ 주식인수 및 지분을 결정, ⑤ 창립총회의 개최, ⑥ 이사회 개최, ⑦ 회사설립등기, ⑧ 사업자등록 신청 및 법인설립신고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에서 ④의 주식인수의 방법과 관련하여 발기인 이외의 자도 주식을 인수하는가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진다.

발기설립은 주식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며 법인의 설립경과 조사보고에 있어 이사, 감사가 취임 후 지체없이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모집설립은 설립시 발기인이 주식총수의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 주식은 발기인 이외에 모집된 다른 주주가 인수하며 설립경과 조사 보고를 창립총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3) 벤처기업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1980년대 초였으나, 이 기업들이 벤처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의 집단을 형성한 시기는 1995년 무렵부터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벤처는 2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벤처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기간은 최근 10여년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1997년 8월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당시 2,024개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5,401개로 지난

10년 동안 약 7.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물론 1998년 이후로 급속도로 증가하던 벤처기업의 수가 2001년을 정점으로 2005년까지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벤처기업의 수가 줄어든 배경은 코스닥의 폭락과 함께 벤처자금시장의 침체현상이 나타나면서 벤처창업이 둔화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벤처창업의 둔화는 벤처 그 자체에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제전반적인 불안이 벤처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벤처창업의 둔화는 외견상으로는 위기현상이지만 벤처생태계의 발전과정에 보면 ‘조정기’라고 볼 수 있다.³⁰⁾ 다만 2003년부터 벤처생태계의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 기업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벤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내놓자 벤처창업은 다시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33> 연도별 벤처기업 수의 추이

연 도	벤처기업의 수
1998	2,042
1999	4,934
2000	8,798
2001	11,392
2002	8,778
2003	7,702
2004	7,967
2005	9,732
2006	12,218
2007	14,015
2008	15,401

* 출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조사 통계자료 및 벤처인 홈페이지 참조
(<http://www.venturein.or.kr>)

30)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의 변천과 혁신, 2006. 8, 121-122쪽.

또한 이들 벤처기업을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기술평가보증기업이 14,970개(92.28%)로 가장 많고, 연구개발기업이 2,079개(11.43%), 벤처투자기업이 561개(3.08%), 기술평가대출기업이 558개(3.07%) 순으로 나타나며, 예비벤처기업은 27개(0.15%)로 가장 적다.

<표 34> 2009.8. 현재 벤처기업의 유형별 현황

	업체수	비율(%)
기술평가보증기업	14,970	82.28
연구개발기업	2,079	11.43
벤처투자기업	561	3.08
기술평가대출기업	558	3.07
예비벤처기업	27	0.15
신기술기업	0	0
총 계	18,195	100

* 출처: 벤처인 홈페이지(<http://www.venturein.or.kr>)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개정 내용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7년 8월 28일 법률 제5381호로 제정된 이후 2009년 8월 현재 총 41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대부분의 개정은 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 부수조치로서의 개정이었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은 총 10차례에 걸친 개정이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자	주요 내용
1998. 12.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근거 마련(법 제4조의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하여 도시형공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 마련(법 제2조제5항 및 제18조의2)

제 3 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개정일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의 최저자본금을 상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고,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상장기업과 동일하게 자기주식의 취득 및 일반공모에 의한 증자를 허용함(법 제10조의2 및 제11조) ◆교수 및 연구원 등의 벤처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 허용(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설립·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용도제한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의3)
2000. 1.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산벤처(주) 설립근거 마련(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육성제도 도입(법 제2조 제6항)
2001.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제도 도입(법 제13조 신설) ◆스톡옵션부여 절차를 종래의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로 간소화(법 제16조의3 제4항 신설)
2002. 8.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실 벤처기업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벤처비리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요건을 강화(법 제2조 제1항 및 제2조의2 신설) ◆벤처기업간 주식교환제도의 도입(법 제15조 신설)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 간소화(법 제15조의3 신설) ◆벤처기업의 유한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특례 규정 신설(법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18조 제2항, 제4항 및 제26조 제4항 신설)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명확화(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벤처기업의 건전성 제고와 부실 벤처기업의 퇴출 등을 위한 제재조치의 명시(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제5항 신설)

개정일자	주요 내용
2004. 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 주식교환 대상의 확대(법 제15조 및 제15조의4 신설) ◆벤처기업 합병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 청구절차 간소화(법 제15조의3 제4항 신설) ◆벤처기업의 소규모 주식교환절차의 간소화(법 제15조의8 신설)
2005. 7.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회사의 최소자본금을 2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조정(법 제10조의2 제1항)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 설립 근거 명시(법 제4조의7 개정, 제4조의8 제5항 신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등록 허용(법 제13조 제1항)
2006. 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주체를 중소기업청장에서 민간기관으로 변경(법 제25조) ◆민간 금융기관의 보증 또는 대출 여부 등을 벤처기업의 판정기준에 포함시키도록 함
2007. 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근거 마련(법 제2조 제8항)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설치근거 마련(법 제2조 제9항) ◆산업재산권 사용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법 제16조의7)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근거, 지정요건,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법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
2007. 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10년간(2017년까지) 연장(법 부칙 제2조)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하여 상법상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의 특례를 인정(법 제15조의9, 제15조의10 및 제15조의11) ◆법령용어의 순화 및 조문체계의 정비
2009. 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 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허용(현행 제1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삭제)

개정일자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발행주식 보유 비율의 완화(법 제11조의3 제1항) ◆대학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현금출자 허용(법 제11조의3 제2항) ◆간이영업양도 제도의 도입(법 제15조의11 신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법 제15조의13 신설) ◆교육공무원 등의 창업준비기간 휴직 허용(법 제16조 제2항)

(3) 벤처기업의 창업 및 입지와 관련한 지원제도

벤처기업의 창업에 관해서는 다양한 법령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협의의 창업과 창업에 필요한 입지 및 집적시설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제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1) 벤처기업 창업관련 지원제도

벤처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다수의 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동법 제6조는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동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³¹⁾이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1. 제4조 (기술평가기관) ①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기술신용보증기금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 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동법 제10조의2는 벤처기업의 창업에 관한 자본금 규모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 32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동법 제11조의2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기타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특구지역의 국립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② 임원이 무능력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일 것, ③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등이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대학·연구기관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기타 이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동법 제16조 및 제16조의2는 교수·연구원의 창업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
3. 한국기술거래소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에 한한다)
 5. 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②삭제 <2000.6.19>

연구원은 교육공무원이나 연구원은 벤처기업을 창업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지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6조). 또한 교육공무원 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방 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동법 제16조의2).

<표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창업 관련 규정

	근거규정	주요 지원 내용
산업 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6조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 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 포함
법인설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0 조의2	◆벤처기업 설립자본금 500만원 이상
신기술 창업전문 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1 조의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 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 하기 위하여 보유기술의 사업화 지원
교수· 연구원 창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6조, 제16조의2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3년간 휴직 가능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 원을 겸임 또는 겸직 가능

2)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입지관련 지원제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벤처기업의 창업입지와 관련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

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도 벤처기업의 창업입지에 관한 특별규정³²⁾을 두고 있다.

동법 제17조의2에 의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실험

32)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 2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산학협력단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의 인원수와 산학협력단 사무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2. 산학협력사업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당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4. 당해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연구소간의 상호협력활동에 대한 지원
5. 당해 대학 안에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6. 당해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7.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 안에 당해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 안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당해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의2).

나아가 동법 제18조의3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표 37> 벤처기업 창업입지 지원 관련 규정

근거규정	주요 지원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대학 또는 연구기관 부지내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공간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설치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험실공장 설치가능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대학 안에 설치된 실험실공장에 대한 지원

3) 벤처기업 집적시설 관련 지원제도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관련한 지원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내지 제22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제3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에서 벤처직접시설에 관한 특례 내지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38> 벤처직접시설 지원 관련 규정

근거규정	주요 지원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내지 제22조	◆벤처직접시설의 특례 규정 (국공유재산 매각 및 비용지원·건축금지 배제·개발부담금 등 8개 부담금 면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2	◆벤처전용단지 또는 벤처직접시설의 개발·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개발사업시행자·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산업기술단지 내 입지시설을 제한하고 있으나, 벤처 직접시설에 대한 설치제한은 완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 및 제32조	◆벤처기업에 대해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5년이었던 것을 20년으로 연장 및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인구집적유발 시설대상에 벤처직접 시설을 제외하여 설립을 용이하게 함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3	◆벤처직접시설의 대체초지조성비 전액감면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입법평가 대상 법규정과 문제상황

현행법상 벤처기업은 그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례를 인정받고 있다. 그 중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광범위한 특례를 규정하여 벤처기업의 생존기반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창업과 관련하여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는 조문으로는 제11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의2, 제18조의3 이 있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를 각 주제별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식회사로써 2007년 1월 26일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법 제11조의2의 규정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 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9>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형태	상법상 주식회사(대학·연구소가 30% 이상 주식소유)
설립 주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과학·산업 분야)
행위 제한	유사수신행위 금지 자회사와의 내부거래 금지
주요 사업	자회사 운영, 기술이전 출자 및 사업화, 창업자·벤처기업·창업조합에 대한 투자·출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설치·관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수익의 활용	대학·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기 타	산업재산권의 현물출자 및 평가특례 교수·연구원 등의 전문회사 임직원 휴겸직허용 연구소에 대한 주무관청의 수익사업 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 제4항에 명시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는 ① 대학·연구기관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②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③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가 이와 같이 한정되어 있어 활발한 회사운영과 이로 인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의 확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는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³³⁾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일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교수나 연구원의 실험실 창업이 가능하도록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에 설치한 공장을 말한다. 현행법상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은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실험실공장 설치자는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시설이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만약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의 규정내용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

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 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 ②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교원이나 연구원이 퇴직하더라도 퇴직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⑥ 실험실공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규정이 교수나 연구원의 실험실공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험실공장의 설립주체를 교수와 연구원에 국한시키는 것은 실험실공장 창립의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실험실공장의 설립 주체를 이공계 석·박사 대학원생에까지 확대하여 실험실공장의 설립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특례를, 제18조의3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 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인 지역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절차를 따른다.

③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가 된다.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

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나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집적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 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창업보육센터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에 관한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즉 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7조의4).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가 도시형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18조의3).

그러나 창업보육센터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주로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설립되는 공장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적 관점에서 공장설립의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3. 수범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워크숍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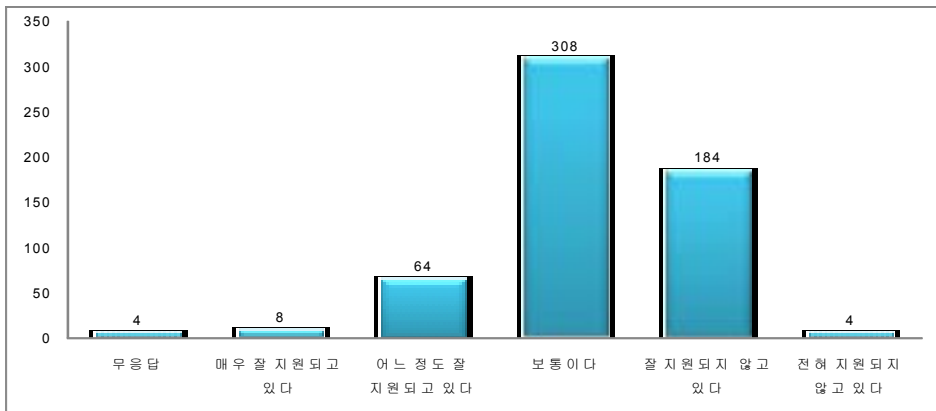
(1) 벤처기업 창업지원 법제에 관한 일반적 문의

벤처기업의 창업과 관련 구체적인 쟁점(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의 확대,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수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법제도적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수범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견을 문의한 배경은 벤처기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수범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체계를 바라보는 일반적 관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관한 수범자들의 의견을 보면, 총 응답인원 572명 중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08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잘 지원되지 않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84명(32.2%), “어느 정도 잘 지원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4명(11.2%), “매우 잘 지원되고 있다”가 8명(1.4%),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다”가 4명(0.7%), 무응답 4명(0.7%)이었다.

[그림 7] 벤처기업 창업지원 법제에 대한 일반적 의견



이러한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설문조사의 대상자 절반 이상이 현행 벤처기업 창업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창업과 관련한 법제도적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전체적으로 32.9%를 차지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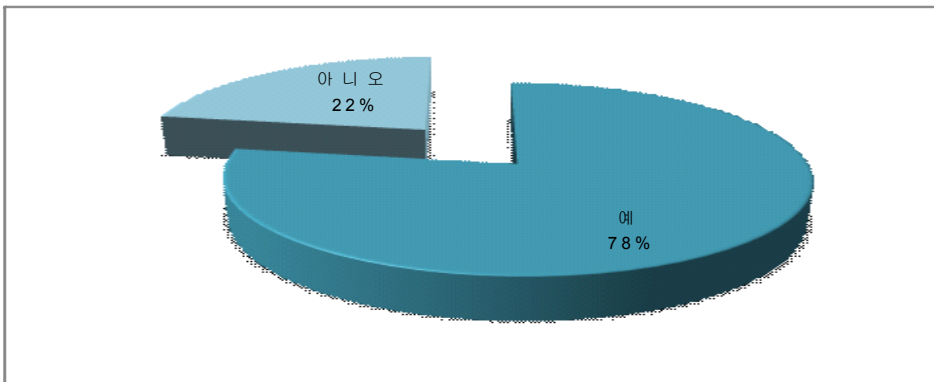
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체계에 대한 홍보의 미비 등이 존재한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식회사를 말한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는 대학·연구기관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국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수범자 설문조사는 현행법상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완화의 타당성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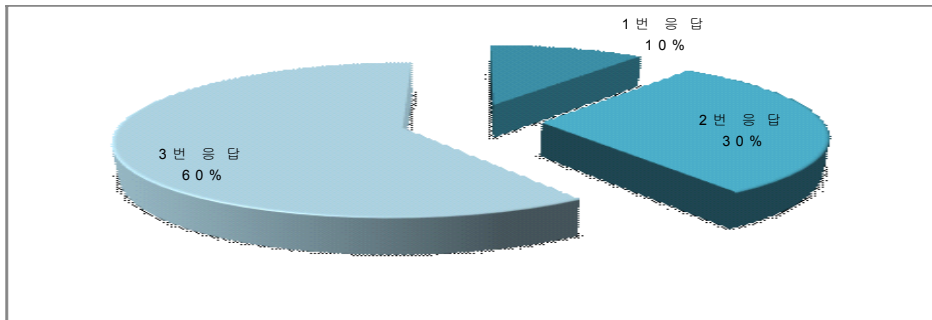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 총 572명의 응답자 중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444명(77.6%)로 많이 나타났으며,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128명(22.4%)이었다.

[그림 8]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의 확대에 관한 의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의 확대가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의(복수응답 가능)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총 496명의 응답자중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에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96명(6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184명(3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52명(10%)로 나타났다.

[그림 9]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관한 의견



(총 응답수 : 496명, 복수응답 문항)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현재 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7.6%를 차지하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의 확대방안에 관하여 복수응답자 중 60%가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에 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보면, 현재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활발한 회사운영이 곤란하다는 실무의 지적이 타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에 까지 확대한다는 것

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제를 현재와는 달리 대폭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점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지원이나 기술지원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의 한계가 없어지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의 확대와 그 구체적 업무범위에 관하여 전문가들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1)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의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 등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법인(과학 또는 산업분야)이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경우 대학의 교원이나 연구원이 전문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평가의 특례가 있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창업의 원천인 박사연구원 중 82.3%(47,681명)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442,000건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술 이전율은 24.2% 수준으로 미국(35.9%), 유럽(46.8%)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매, 라이선스 등 기술이전과 함께 노하우까지 이전 가능한 직접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벤처붐이 붕괴된 이후 교수나 연구원의 창업이 지속 감소해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07년 4월에 벤처특별법을 개정하여 교수·연구원의 창업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기술을 출자하여 직접 영리활동이 가능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막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하고 보니 이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원

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흠이 있다. 따라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현재 보다 대폭 확대하는 규제완화조치를 취함으로써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수입선을 다양화하고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의 확대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주)리스텍비즈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 등록을 신청한 것이 제1호라 할 수 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개별회사의 측면에서는 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산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하여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출자기술 평가비와 기술개발비를 대폭 지원해야 하며, 조세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영역을 현재와 같이 기술의 직접사업화, 자회사운영 및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그 업무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만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확대시킬 것인가가 문제로 될 수 있지만 규제완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수범자 설문조사에 서술된 설문항목을 모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확고하고, 이를 통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이윤을 획득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굳이 그 업무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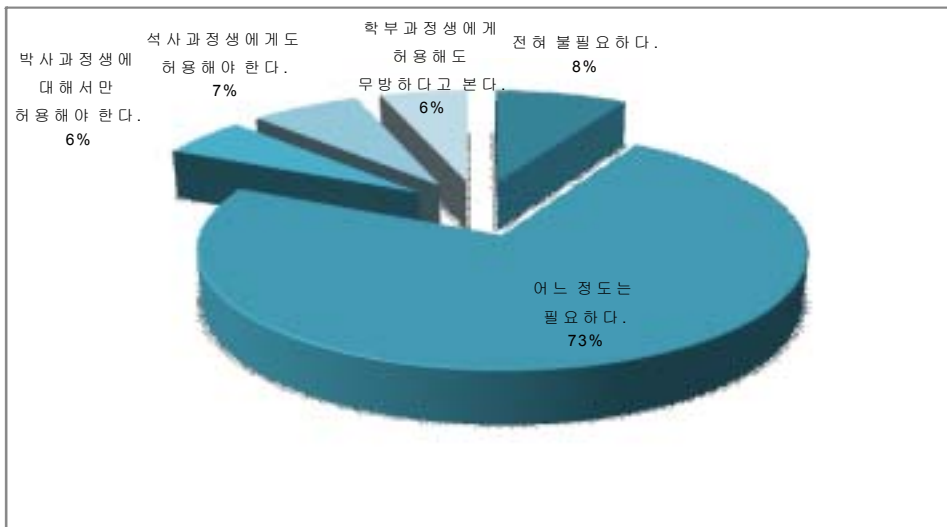
(3)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의 확대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교수나 연구원이 대학이나 연구소의 실험

실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는 실험실공장의 설치주체를 교수나 연구원으로 국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규제완화의 관점에서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를 대학원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교수나 연구원 이외의 석사과정생이나 박사과정생에게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설문문항에 대하여 총 572명의 응답자 중 420명(73%)이 “석사과정생이든 박사과정생이든 어느 정도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혀 불필요하다”가 48명(8%), “석사과정생에게도 허용해야 한다.”가 40명(7%), “박사과정생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가 48명(6%), “학부과정생에게 허용해도 무방하다.”가 32명(6%)에 달했다. 이러한 설문조사결과를 평가해보면, 대체로 대학이나 연구소의 경우 일반 대학원생에게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그림 10] 실험실공장의 설치주체의 범위에 대한 의견



이러한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협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교원이나 연구원 이외에 학생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였다.

[실험실공장 설치주체의 확대에 관한 전문가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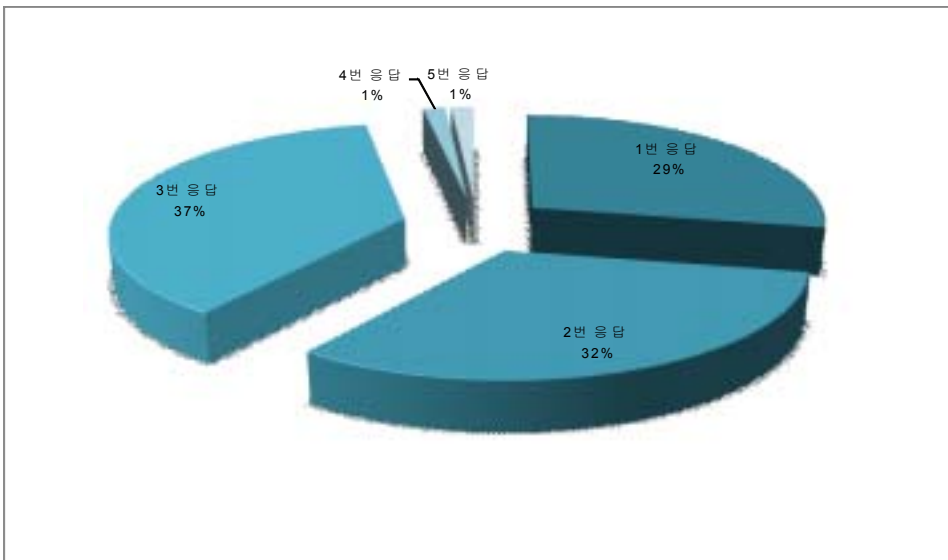
원래 실험실공장제도를 벤처특별법에 명시한 배경은 교수 또는 연구원이 당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당해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가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도록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기술력을 보유한 교수나 연구원이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보면 대학 등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기술화 내지 상업화시킬 수 있는 주체라면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그러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상품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행 법률과 같이 교원과 연구원에 대해서만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통상적으로 우수한 인재라는 통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심지어 대학생의 경우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해소와 대학 등의 이윤확보 등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실험실공장의 주체를 박사과정생이나 석사과정생에게 국한시킬 필요도 없이 일반 대학생에게 개방하여 대학이나 연구원의 시설 및 물자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 제18조의3에 의하면, 벤처기업이 창업보육센터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에 공장을 설

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공장이 설립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창업을 활성화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법상의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관하여 수범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기보다는 대학의 장이나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총 572명 중 212명(3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184명(32%), “공장설립은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보다 더 엄격하게 승인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160명(29%),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뿐만 아니라 대학의 장이나 연구기관장의 승인도 없애야 한다.”는 견해가 8명(1%), “사전 승인보다는 사후 통보가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8명(1%)이었다.

[그림 11]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의견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평가해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나온 의견(즉 212명, 37%)은 아마도 창업보육센터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그 설립 장소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뿐만 아니라 심지어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설립을 더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점을 고려해보면,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설립절차에 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게 분설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전문가 의견]

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현행 벤처특별법은 그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규제완화의 관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에는 현재보다 공장설립의 절차를 완화하는 것도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무방하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창업기업 내지 벤처기업이 창업보육센터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내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굳이 이와 같이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창업보육센터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이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와 같이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행법과 같이 지자체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제조시

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관한 입법평가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주요 내용

(1) 개 관

우리 법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해 1986년 제정되었다. 동법에서는 창업지원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등 창업과 관련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제조업, 광업, 건축엔지니어링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용 관련업, 기계 및 장비임대업, 기타 중기청장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7조에 의한 창업지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을 새로 개시하는 업종으로 정하고, 숙박업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업종 등 사치향락을 조장하거나 비생산적인 업종은 제외하고 있다. 즉 창업지원 대상 업종을 종전에는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도소매업, 건설, 건축업 등은 물론 생명과학, 영화제작, 관광, 디자인, 환경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 업종이 634개 업종에서 1,152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창업지원수단으로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관리 등을 수행하는 창업투자회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대상도 과거에는 창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현재에는 벤처기업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조합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는 유한책임조합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 경영 및 기술향상을 위한 용역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제도를 두고 있다.

동법에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보완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신고 등 5개 법률에 의한 7개 인허가를 의제처리 대상에 추가하였고,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자동승인으로 간주하는 민원자동승인제도 도입되었다. 그리고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었고, 창업사업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사항을 64개에서 74개로 확대되었다.

1995년에는 개정을 통하여 창업조성지원계획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창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창업보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사업공간 및 시험설비, 경영지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창업보육센터는 이러한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있다.

(2) 창업의 의의

1) 창업의 개념

일반적으로 창업은 개인이나 회사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새로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 즉 기업의 형태, 위치, 규모 및 사업방법 등에 관계없이 기존의 사업을 상속, 증여,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³⁴⁾

34) 강경모 외, 『중소기업창업론』, 신광문화사, 2006, 11면.

한편, 창업의 법적 의미에 관해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활동, 즉 새로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를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관련 없이 원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즉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기존의 사업을 승계, 양수, 임차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예로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하거나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임차 전의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분사의 형태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한다.

둘째,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즉 기업이 단순한 조직의 변경으로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고 실질적인 창설효과는 없는 경우도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예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와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조직변경 전후의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 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 후의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즉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된 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동종 사업을 해지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그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³⁵⁾

35) 김성진, 『한국의 중소기업』, 매일경제신문사, 2006, 225면.

그러나 폐업을 한 후 사업을 재개할 때 폐업 전의 사업과 상이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창업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적용을 위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창업에 해당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³⁶⁾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숙박 및 음식점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갠블링 및 베틀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산업용 세탁업은 제외)과 같이 중소기업의 범주에서 영위하기 어려운 업종 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 2000년 1월 이전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지원업종 대상범위를 제조업 등으로 한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유흥업, 사치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실험실창업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실험실창업은 대학의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그 소속 기관의 실험실 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소속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그 자신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제도이다. 실험실창업의 주요 내용은 교수와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수와 연구원의 기술력으로 직접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실 안에 실험실 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별도의 개별공장을 가져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사업화를 위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정한 최소자본금 규모를 더욱 축소하여 설립자본금 2천만원으로 창업기업을 성립할 수

3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동시행령 제4조 참조.

있도록 하고 있다.

2) 창업의 유형과 창업환경

창업의 유형은 기술창업과 일반창업으로 구분된다. 기술창업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창업인 반면, 일반창업은 산업구조 재조정 과정에서 창출되는 창업기회를 활용하여 기업이 설립되는 경우이다.

또한 기회추구형과 같이 적극적인 창업이 있는 반면에 생계유지형 창업도 있다. 신기술에 입각한 벤처창업은 사업기회를 포착하여 능동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반하여 기존 직장에서의 퇴직 이후 자영업을 창업하는 경우가 생계유지형 창업에 해당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Doing Business in 2005』에서 창업자가 겪는 어려움의 정도를 창업절차, 소요기간, 창업절차 중 공식 소요비용, 창업기업이 등록을 위해 예치해야 하는 최소자본금액 등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에 의하면, OECD국가들은 평균적으로 6단계의 절차, 소요기간 27일, 창업소요비용은 1인당 국민소득의 8%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2개 절차, 소유기간 22일, 소요비용 287만원으로 우리나라 GNI(\$13,980)의 15.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대상 155개국 중 97위를 차지하였다.

<표 40> 우리나라의 창업절차 및 소요비용

절 차	비 용	소요기간(일)
1. 상호검색	-	1
2. 인감제작(발기인, 회사)	40,000(각2만원)	1
3. 공증(정관, 회의록, 인감)	304,000	1
4. 통장개설	-	1

제 3 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절 차	비 용	소요기간(일)
5. 법인등기 신청 및 등록세 납부서 취득	15,000	1
6. 법인등록세 납부	2,509,800	1
7. 상업등기	-(6번 포함)	4
8. 사업자등록	-	8
9. 건강보험 가입	-	1
10. 국민연금 가입	-	1
11. 고용·산재보험 가입	-	1
12. 노동사무소 신고	-	1
	2,868,800원	22일

(3) 창업절차

1) 개 관

창업을 위해서는 우선 개인기업 또는 법인 중 조직의 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인기업은 조직설립이 간편한 반면, 무한책임으로 인한 위험도가 크고 자본조달이 용이하지 않아 소규모 기업에 적합하다.

법인은 상법상의 설립절차에 따라서 설립하고 법인격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회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주의 유한책임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자본조달이 쉬워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형태이다.

<표 4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	-개인의 의사결정으로 설립	-법인설립절차와 등기 -공동의 의사결정에 의해 설립
경영	-경영에 대한 단독 무한책임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능력의 한계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짐 -의사결정의 지연 -소유와 경영의 분리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기업 활동	-기업주의 자유	-기업주 활동의 제약
자본 조달	-개인의 전액출자 -자본조달 한계	-다수의 출자자 -거액의 자본조달 용이
이윤 분배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 분배
지속성	-기업의 영속성 결여	-출자금의 유가증권권화 가능 -대외적인 신용확보 -경영관리의 효율성
세계	-소득세 과세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세금부담 유리 -대표자본인의 급여 불인정 -장부기장 등 상대적 용이	-법인세 과세 -일정규모 이상 세금부담 유리 -대표자의 급여 인정 -장부기장 등 엄격한 증빙요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 자의 계산
기타	-소자본 창업 가능 -외부감사 적용 제외	-자산총액 70억 이상 외부감사 -경영공시 의무

2) 회사설립절차

개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인·허가증 사본(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대상 업종의 경우) 등이 필요하다.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법원장 또는 등기소장에게 법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 설립을 신고하면 된다. 법인등기시에는 정관작성(상호, 자본금 5천만원 이상³⁷⁾ 1주당 주식 가격 등), 주주명부(이사 3인 이상, 감사 1인 이상), 주주의 인감증명

37) 다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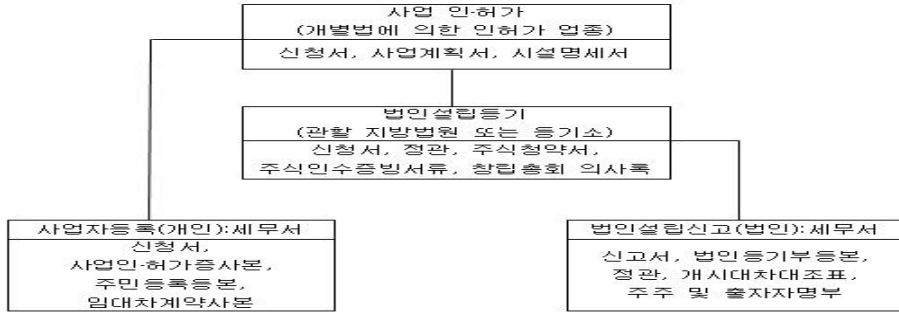
서, 주민등록등본, 자산명세서, 주주출자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설립 신고시에는 법인설립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개시대차대조표, 주주 및 출자자 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으로서 회사의 모든 규정 중 최상위의 기본규칙이다. 따라서 정관은 그 내용을 분명히 하여 후일 주주 상호간 또는 회사내부 관계자 상호간의 분쟁과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법상 공증인의 공증을 받지 않은 정관은 효력이 없다.

주주확정 및 출자이행의 단계에서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 이외에 출자자가 따로 없으므로 발행하는 주식을 서면에 의해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고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할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현금출자와 마찬가지로 납입기일 내에 출자의 목적물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및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류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출자자로서 발기인 이외에 모집인이 따로 있으므로 회사설립시 발행할 총 주식 중 발기인이 일부를 인수하고 별도의 주주를 모집하여 나머지를 인수한다.

설립등기는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및 법원의 변경처분에 따른 절차완료일로부터 2주일 내에 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주식청약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의 공동신청에 의해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설립등기사항으로는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생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자본의 총액, 발행주식의 총수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지점소재지,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및 사유, 이사와 감사의 성명·주소, 대표이사 성명, 명의개서 대리인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표 42> 법인설립절차



<표 43> 법인형태별 비교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영농조합법인
법적 근거	상법	상법	상법	상법	특별법, 민법
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무한책임
발기인수 또는 사원수	제한없음	2인 이상 50인 이하 (벤처기업은 300인이하)	2인 이상	2인 이상	5인 이상
출자의 종류	금전, 현물(주식)	금전, 현물(지분)	금전, 현물, 노무, 신용 (지분)	금전, 현물, 노무, 신용 (지분)	금전, 현물농지 (지분)
정관 인증	필요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출자 단위	1주에 100원 이상	1좌에 5천원 이상	출자한도 없음	출자한도 없음	출자한도 없음
	자본금 5천만원 이상(벤처 기업은 2천만원 이상)	자본금 1천만원 이상	등기시 명시	등기시 명시	등기시명시

구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영농조합법인
관선 검사인 선임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시 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의결 기관	주주총회 (1주의결권)	사원총회	무한책임사 원의 동의	무한책임사 원의 동의	조합원 총회
주주와 사원의 이동	원칙상 정관에 양도제한 가능	사원의 양도시 사원총회 특별결의 필요	무한책임사 원 동의필요	무한책임사 원 동의필요	조합원 총회
조직 변경	유한회사로 변경가능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가능 (법원인가)	합명회사로 변경가능 (사원 동의)	합자회사로 변경가능 (전사원의 동의)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변경가능
합병	자유	유한, 주식회사와 합병가능	전사원의 동의	전사원의 동의	전조합원 동의

3) 공장설립절차

공장설립은 부지매입절차부터 공장설립과 관련된 토지이용허가 및 건축 관련허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정부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장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79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된 36개 법률에 의한 74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처리하였고, 창업민원인이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단축할 수 있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신청대상은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

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이다.

신청은 창업자의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담당한다. 시군구청장은 신청 이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통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승인으로 의제된다.

4) 업종별 창업절차

① 업종의 의의

업종은 업태와 종목을 말하는 것으로, 업태는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을 의미하고 종목은 취급품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종이 소매업, 종목은 컴퓨터가 되며 컴퓨터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컴퓨터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종이 서비스업, 종목이 컴퓨터 수리가 된다.

창업절차는 이러한 업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기타 업종에 비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과 기계설비, 기술 등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므로 창업절차가 복잡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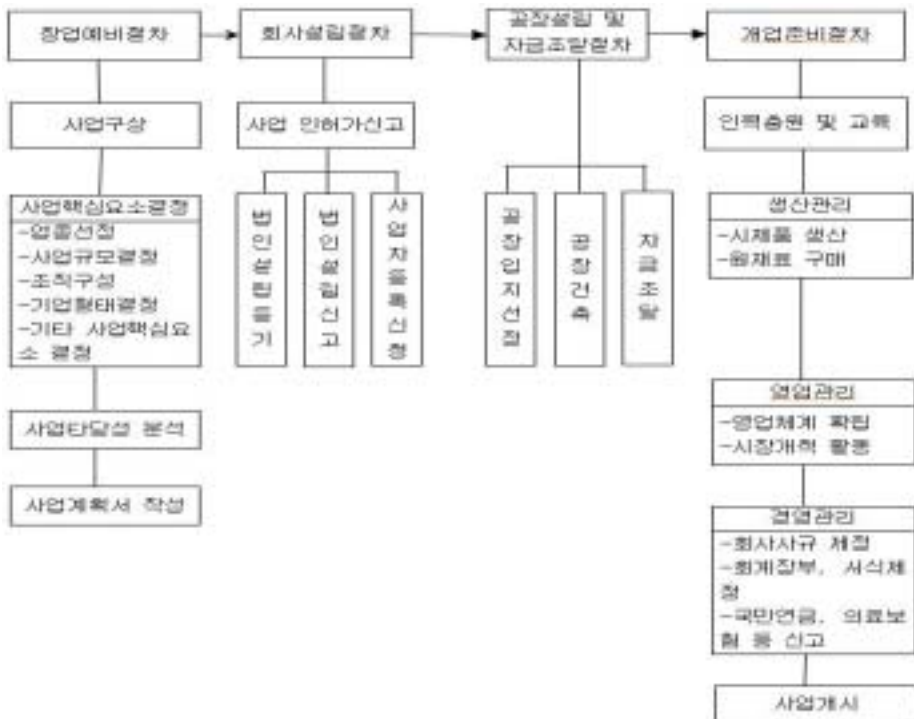
② 제조업 창업절차

제조업이란 유기물 또는 무기물 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주어서 새로운 형태의 물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으로, 넓은 의미의 공업이란 생산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의 통합이다. 즉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에서 제공되는 원료를 가공하여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나 성질의 재화를 만들어 사용가치를 창조, 증대하는 것으로 2차 산업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제조업의 종목을 음식료품, 담배제조업, 섬유·의복·가죽산업 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종이·종이제품 제조업, 화합물·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제조업,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 제조업, 기타 제조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창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절차는 업종과 기업형태, 공장설치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이 더 복잡하고 제조업 중에서도 공장을 임차하여 제조활동을 하는 것보다 자기 공장을 마련하여 생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더욱 복잡하다. 이러한 제조업의 창업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44> 제조업창업절차



③ 도소매업 창업절차

도매업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매업자 등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데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업종이다. 도매업은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과 다르므로 소매업과 같이 입지, 판촉, 점포분위기 등과 관련된 마케팅 보다 오히려 넓은 상권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매업은 여러 가지 역할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크게 생산자, 즉 제조업자를 위한 역할과 소매업자를 위한 역할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유통기능은 여러 제조업자들의 제품을 구매하여 적정이윤을 붙여 소매상에게 판매하게 되며, 소매상은 다시 이 상품에 이윤을 남겨 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된다.

소매업은 유통경로 중 마지막 단계로서 상품과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소매업은 소수의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제조업, 대량으로 판매하는 도매업과 달리 소량의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촉활동을 하므로 제조업이나 도매업자가 직접 할 수 없는 기능을 담당한다.

도소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창업절차가 매우 간단하다. 우선 공장 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으며,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법인설립절차가 필요 없는 간단한 개인기업의 창업이 다수이다. 그러나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점포입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표 45> 도소매업 창업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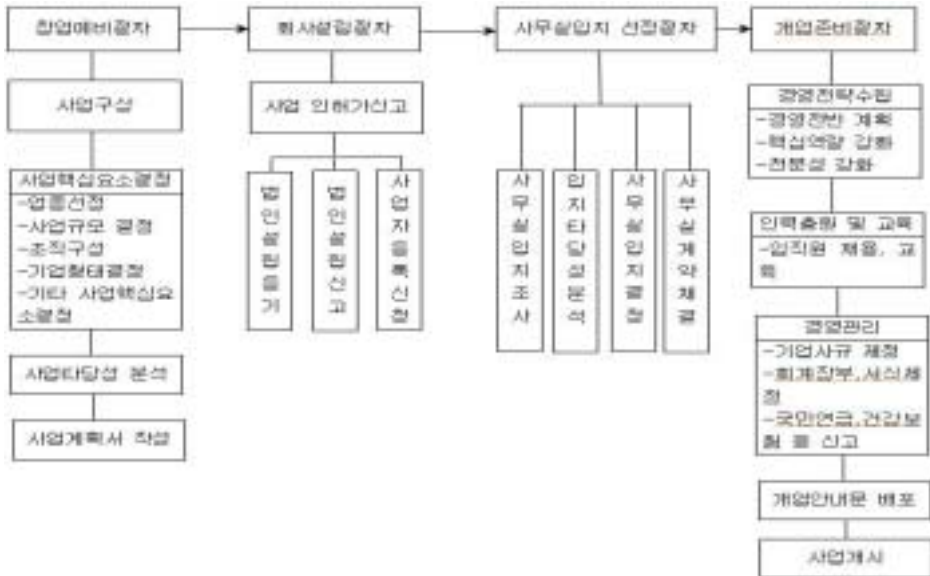


④ 서비스업 창업절차

서비스업은 개인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개인서비스업은 일반 개인을 고객으로 하여 각종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여행알선업, 수리업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주로 사업체를 주고객으로 하여 각종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사업서비스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있다.

사업서비스업은 개인서비스업보다 규모면에서 크며 업무도 전문적이고 복잡하다. 따라서 사업서비스업은 법인형태로 설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조업과 같이 법인설립절차가 필요하다.

<표 46> 서비스업 창업절차



(4) 창업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주로 종업원의 수, 자산 총액,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단순히 양적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종업원 수로 구분하는 기준은 개별법에서 통일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개별법의 특성에 맞게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표 47> 개별법상 중소기업의 기준

구 분	기 준	근거법령
상시 종업원수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전년도에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12월로 나눈 인원을 기준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 3 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구 분	기 준	근거법령
자산총액	사업연도 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기업이 소유하는 자산의 장부가액의 합계액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주된 사업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사업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일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 적용시점	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자본금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매출액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는 중소기업을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도 상시종업원 수로 구분하여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48> 중기업과 소기업의 구분

업 종	소기업	중기업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51인 이상 300인 이하인 경우
건설업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0인 이하인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31인 이상 200인 이하인 경우
기타 서비스업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1인 이상 20인 이하인 경우

(5) 민원 사전협의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4조는 사전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공장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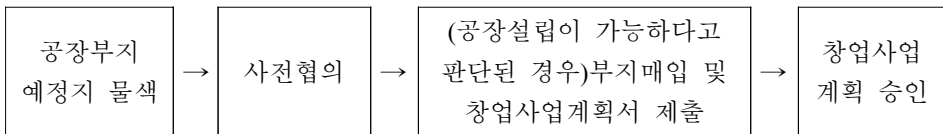
승인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협의제도를 규정하고, 그 협의절차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현행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제반 토목·건축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토지매입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창업자는 준비에 소요된 약 2~3개월의 기간과 6천만원 정도(토목·건축설계 및 환경성 검토 약 3~4천만원, 부지매입계약금 약 3천만원 등)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창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시간적·경제적 위험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창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면서, 그 승인신청 전에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할 경우 그 협의기간이 적어도 일주일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창업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처리기간 단축취지를 반감시키지 않으면서 창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전협의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전협의기간을 최소화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실제 운영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표 49> 사전협의를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



<표 50> 사업계획승인과 사전협의제

구분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전협의
선택	의무적	공장설립자의 선택
신청 시기	부지매입(또는, 토지사용승낙) 후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 후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토지이용승락서 인·허가사항별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검토 내용	사전협의시 승인사항을 제외한 모 든 인·허가 사항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환경관련, 도로점용 등 필수 인허가 사항
회신 내용	사업계획 승인여부	사업계획승인 가능성, 승인가능한 인·허가사항, 절차 및 요건안내 등
기간, 비용	약 3-4개월, 6천만원	1주일이내, 별도 소요비용 없음

(6)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중소·벤처기업의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가 도입된 바 있다. 이에 의하면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관련 인허가를 일괄하여 의제처리하고 있다.

<표 51> 창업사업계획승인 현황

구분	1986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업체수	7,298	1,530	1,500	978	1,692	1,869	1,560	1,715	991	597	319	597	20,646
증가율 (%)	-	↑145	20	↑348	73.0	10.5	↑165	99	↑422	↑398	-	↑398	

일반적으로 공장설립은 환경문제 등 다른 요인에 의해 규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이전에는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중소기업의 창업을 허용했다. 이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시·군·구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내 산업촉진지구로의 용도지역변경은 공장부지 면적이 30,000㎡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지전용에 의한 창업이 불가능해졌다.

2003년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0,000㎡미만의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10,000㎡ 이상의 모든 공장은 대기·수질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개발행위에 대해 엄격한 기준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함과 동시에 이행보증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창업자들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입지가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규제들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이었으나, 공장설립에는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3~4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장설립 면적제한, 농지전용제한, 개발행위 허가 등 입지·환경분야 규제사례 및 민원처리절차상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였다.

그러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와 공장설립 승인제도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승인기관, 절차, 구비서류 등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도 유사하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범위도 유사하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자로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부담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자 중 공장설립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모르고 공장설립 승인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부담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창업자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제

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³⁸⁾

사업계획승인제도와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모두 공장의 설립에 관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일원화하여 처리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인허가가 의제되는 범위도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구도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이러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혜택의 부여없이 단순히 공장설립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방법이 다소 다르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혜택을 부여한다면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설립 승인제도로 일원화하게 되면 창업지원 혜택 부여의 기준을 찾을 수 없게 되므로 일원화에 난점이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계획된 입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에 더하여 국토의 난개발우려를 무릅쓰면서도 중소기업창업지원과 같은 정책목표를 위하여 부담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단 중소기업창업지원 목적상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과도기적으로는 양 제도의 병존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양 제도를 가능한 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바, 공장설립제도에서 의제되고 있는 인허가 중 사업계획승인제도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각각 추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자가 몰라서 사업계획승인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38) 최성근, 『중소기업 관련법령의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23면.

(7)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한 창업 인프라 구축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업화능력이 취약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보육사업은 이들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시켜 2~3년 동안 사업공간제공, 경영·마케팅 지도, 자금알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국에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가 1959년에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 촉진을 위해 개소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 세계 각국은 신기술 등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3월 국내 최초로 (주)중부산업건설팅의 영동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된 것이 시초이고, 199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산창업보육센터와 1994년 한국과학기술원의 기술창업보육센터가 운영을 개시하였다.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의 특징은 대학,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연구소에 고급인력이 집중되어 있고, 고가의 실험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지역재개발 또는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 카운티 차원에서 창업보유가업을 수행하고 있어 대학에 소재하는 경우는 약 13% 정도에 불과하다.³⁹⁾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센터 지정시 지역균형발전이 주요한 기준으로 되고 있다. 수도권외의 경우 보육센터 입주시 유망기업 선정이 타지역에 비해 유리하고 졸업기업의 창업성공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전북·충북·강원 등의 창업보육센터는 매출액, 고용인원, 벤처기업 수 등에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낮다.

39) 김성진, 『한국의 중소기업』, 245면.

향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한 보육센터 역량강화, 제정자립도 달성, 졸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산학협력사업의 지원 및 입주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각 부처에 산재한 중복적인 창업보육산업(정보통신창업BI, 신기술창업BI 등)을 중소기업청 지정BI를 활용하여 특화BI(환경, 정보통신, 농생명 등)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BI의 경쟁 및 퇴출시스템을 상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보육능력이 우수한 BI는 생산형 보육공간 확충을 지원하여 자립화를 유도하고, 부실운영BI는 통폐합 등 단계별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BI운영체제 개편 및 BI 자립화와 보육의지 제고를 위해 창업·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BI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창업기업 우대와 BI사업자의 자립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표 52> 외국의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구분		미국(1998)	영국(1998)	독일(2000)	이스라엘(2000)	중국(2000)
창업 보육 센터	최초설립	1959년	1980년대	1983년	1991년	1988년
	보육센터수	1,400여개	131개	375개	23개	289개
	입주기업수	평균 20개	평균18.8개 (전체2,470개)	평균18.6개 (전체7,000개)	평균11.1개 (전체256개)	평균90개 (전체26,261개)
	고용창출	-	평균302명 (전체39,549명)	평균226명 (전체85,000명)	전체550명	전체2,391,225명
	연간운영비	평균\$256,713	-	-	최대\$170,000	-
	평균운영인력	2.8명	-	-	-	-
	평균규모	59,180sq.q	36,364sq.a	5,400sq.mt	-	72,350sq.a
	졸업기업수	평균19개	전체2,322개	전체2,000개	전체280개	전체160개
	생존율	73%	80%	95%	58%	-
	입주가능기간	-	-	3~7년	2년	-

제 3 절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관한 입법평가

구분		미국(1998)	영국(1998)	독일(2000)	이스라엘(2000)	중국(2000)
	주요서비스	-경영 및 행정 지원서비스 -물리적 공간제공 -투자유치	-입주기업을 위한 지식 및 물리적 공간제공 -지역 대학/연구기관/투자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교육,훈련	-창업기, 초기성장기에 대한 지원 -최신연구결과 제품/사업화지원 -연구개발결과의 기술이전 지원, 기술/사업 타당성조사	-R & D 인력 채용,조직화 -물리적 시설제공 -전문적 관리,조언 -행정/회계/법적 서비스 -투자유치/사업화지원	-local loan/투자 자금관리 -loan guantee -지분투자
기업	평균 종업원수	10명	16명	12명	2명	91명
	특징	-운영 중인 BI와 경험이 많음	-BI 40%가 입주기업지분보유 -과 학 단 지 에 모태 -유럽 타국가와 교류강화	-대학/기업/연구소간 기술네트워킹을 창업보육센터개념으로 정립 -첨단기술분야의 발전 및 응용	-연구개발 초기단계에서 BI에 입주시켜 R & D 비용의 85%지원 -신규이민자의 고용창출에 효과	-중앙정부와 BI의 역할분담 -국제 BI의 설립과 운영 준비 중

* 출처 : Science Park and Innovation Center Association, Directory 2000.

(8) 교수·연구원의 창업촉진

1999년부터 도입된 교수·연구원 창업지원제도는 대학·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사업화로 연결시켜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산·학연계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도입되어 전국의 대학 및 연구소의 1실험실 1창업이 가능하여 교수나 연구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실험실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험실 공장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500만원으로 인하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대해 공장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수·연구원 벤처창업지원제도는 대학이나 연구소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교수나 연구원의 경영마인드 부족이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문경영인의 영입, 창업전문가와 기술개발자의 연계 등을 통하여 사업적인 측면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주요 개정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31호로 제정된 이후 2009년 9월 현재 총 52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대부분의 개정은 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 부수조치로서의 개정이었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은 총 10차례에 걸친 개정이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자	주요 내용
2009.1.30	○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코스닥 시장 등 벤처투자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상장주식 투자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완화함(제22조 제3항)
2007. 8. 3	○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 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 등 11개의 부담금을 면제(제39조의 2 신설)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제43조 제1항 제11호)

개정일자	주요 내용
2006.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 추가(제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목적에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추가함 ○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2조 및 제5조의2 제2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센터가 창업자에게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창업교육 등 지원시책(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장은 청소년, 대학생 및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 창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창업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창업대학원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제7조제7호 및 제8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개선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를 도모함 ○ 창업투자조합재산의 관리 등(제12조의2 및 제27조 제2항 제2호의4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사원은 조합재산의 보관을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중소기업청장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관계법령 제·개정시 사전협의를 관한 규정(제22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창업자의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개정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함
2005.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및 검사(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기 위한 요건을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유지여부 확인 -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검사 7일 전에 검사일시, 검사목적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제 3 장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개정일자	주요 내용
2005. 7.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 처분(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창업자의 공장설립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이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항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검사 등이 의제되는 사항을 확대 -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00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회사의 공시규정 신설(제7조의5 및 제32조제1항 제2호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투자회사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및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함 ○ 창업계획 승인 처리기간 단축 및 사전협의제 신설(제21조 제3항, 제21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승인 처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 -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창업보육센터 지정취소 규정 보완(제27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청장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창업보육센터 시설 및 장소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 및 장소의 임대실적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때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2002. 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추가함(제7조 제2항 제2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

제 3 절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에 관한 입법평가

개정일자	주요 내용
	<p>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함(제8조의2 및 제12조 제3항 신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3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새로이 가입시킨 때에는 동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제2항 신설)
2000.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나 조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제8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업무집행조합원과 일반출자자인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한편,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함(제11조)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의 변경을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는 5년 이내에는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창업자의 공장이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제23조)
1995. 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창업을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 ○ 중소기업진흥법상의 창업조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규정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알선

개정일자	주요 내용
	및 해외기술을 알선·보급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도록 함 ○ 창업보육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창업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창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대상을 23개 법률 38개 사항에서 30개 법률 62개 사항으로 확대함
1992.12. 8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에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등 11개 사항을 추가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절차 대행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함 -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범위에 창업절차의 대행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추가함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입법평가 대상 법규정과 문제상황

(1) 창업사업계획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내지 제25조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지침(중소기업청 고시 제2005-12호)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가 자기 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에 의하여 29개 법률과 53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하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제도를 말한다. 즉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제조업의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절차를 시·군·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로서, 사업계획을 접수한 시·군·구로 하여금 그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창업을 활성화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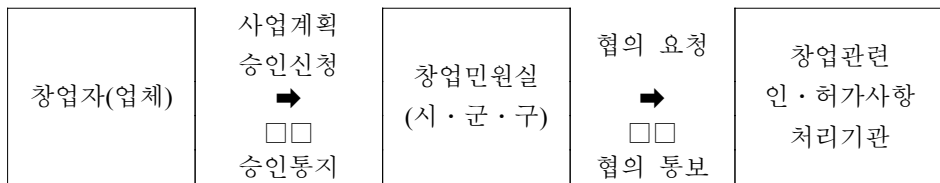
창업사업계획승인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인 사업자가 이미 자기 명의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제2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둘째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공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 소유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셋째 창업자인 경우에도 기존의 사업장을 승계하는 등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넷째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다섯째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하여 창업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중

소기업자가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절차 부분만 창업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창업사업계획서의 승인신청을 받은 승인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창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창업자들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전협의제도가 있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입지기준 확인신청제도와 유사하나, 창업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애로사항 해소에 의의가 있는 제도이다.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그 신청서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전협의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가능성에 관하여 통지를 하게 된다.

<표 54>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 절차



<표 55> 창업사업계획승인 및 해외투자 현황

구 분	‘99	‘00	‘01	‘02	‘03
창업사업계획승인업체수	1,692	1,869	1,560	1,715	991
해외투자 업체수	464	623	814	1,070	1,252

중소기업지원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시·군·구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의제 처리하는 인·허가사항을 과거 47개에서 16개를 추가한 63개로 확대하였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한 일괄의제처리 대상은 공장 설립시 요구되는 인·허가사항으로서 창업과 관련된 개별법에서 규정된 인·허가를 이 법에 의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일괄의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창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추가된 16개의 인·허가사항은 그동안 신설·강화되거나 미반영된 사항들이며, 특히 인·허가 소요기간이 가장 장기간 소요되는 사전환경성검토(30일)를 일괄의제처리 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창업자들의 편의가 보다 확대되어 중소기업 창업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사항은 공장의 규모·입지·업종·지역·사용시설 등에 따라 각 개별법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허가사항을 의제처리대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2001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조직이 도입된 것이다. 그 실질은 합자회사와 유사하지만 형식은 법인이 아닌 조합으로서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의 법리에 의하여야 한다.

<표 56> 창업투자조합 등록현황

(단위 : 개, 억원)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0
신규조합	61	39	40	45	48	66	33
금 액	5,722	4,550	5,274	5,740	7,806	10,736	5,549
현존조합	412	430	424	400	350	332	324
금 액	32,698	35,787	38,172	39,364	38,336	39,480	40,380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은 그 목적이 투자라고 하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공동 목적으로 하는 조합과는 법적 차이를 두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고, 일종의 투자펀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투자자보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조합의 채권자보호에 대해서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조합 법리의 평면적 적용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 제20조 (조합의 결성 등)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출자자 중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외의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이 된다.
- ③조합원은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액의 전액을 한꺼번에 출자하거나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 ④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 기간 등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서는 창업투자조합의 정의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등록하여야 하는 조합을 다시 제2조의 정의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순환논리에 빠져 있다

-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란 창업자에게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창업투자조합은 일반적인 조합과 달리 유한책임을 지는 구성원을 가진 단체이다. 기존 민법상의 조합이 창업투자조합이란 용어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조합이 그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책임에 대한 혼동이 발생하여 투자자나 제3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창업투자조합은 창업투자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창업투자조합이라는 용어는 동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는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조합재산이 영향을 받은 것을 방지하여 다른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조합원의 개인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삭제하거나 또는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조합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제1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4.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29>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조합재산 분배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하고 있지 않다. 창업투자조합에서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유한책임 지므로 조합재산의 분배나 출자환급을 자유롭게 인정하면 조합의 채권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조합재산분배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를 해산사유로 하고 있지만,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시켜 조합을 계속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유한책임조합원이 조합의 존속을 원하는 경우 새롭게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창업투자조합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자(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 해외기술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창업투자회사의 사업범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이 추가되었다.

현재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결성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창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이 창업자(창업한지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한정된 것과 달리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일자리창출·부실자산인수·대중소기업협력펀드 등 다양한 목적으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여 그 투자대상의 범위가 창업투자조합보다 넓다.

<표 57>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 비교

구분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 대상	-창업자(7년이내) 및 벤처기업	-중소기업
투자 방법	-신주인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제한없음(조합설립목적에 따라 인정)
운영 주체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결성·위탁
투자 실적	-창업자,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인수 등의 투자금액만 인정	-조합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투자금액 인정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⁴⁰⁾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행위 제한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까지 민간 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적인 커피 전문업체인 스타벅스가 벤처

4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① 숙박 및 음식점업 ② 금융 및 보험업 ③ 부동산업 ④ 무도장영업업 ⑤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⑥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⑦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

캐피탈로 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에 성공한 사례⁴¹⁾를 볼 때, 유흥 사치 업종이 아닌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8월, 발표한 지식경제부의 지식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취업자 중 제조업 비중은 20.3%에서 17.6%(17만 4,000명)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61.6%에서 67.1%(269만 6,000명)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비스창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제한 업종을 완화할 필요가 높다. 다만,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까지 민간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업 등 일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투자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들의 투자가 소비성 업종 등 일부서비스업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7조 및 제21조 제6항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국내 창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투자한 범위 내에서 회사 자본금 및 조합 결성금액의 40%까지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해외투자 제한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 제한규정은 중국 차스닥 시장 출범 등 세계 투자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창업·벤처기업이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해외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조건으로 자국 기업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벤처

41) 커피 전문점인 STARBUCKS의 경우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공하였다(Invesco Private Capital, \$10mil, 1988).

캐피탈이 해외투자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제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 ①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3년이 지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을 달성한 경우에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②제1항에 따른 해외투자 한도는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 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①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 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 ②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투자회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다른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달성소기 못하면 중소기업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 ④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⑥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따라서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무비율 40%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둔 상태에서,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지출지원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자금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 제한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외화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 제한규정폐지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는 단기 금융상품이 아니라 실물기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위험이 적고, 국가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0.18%)⁴²⁾이므로 해외투자 제한규정 폐지로 인해 외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작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면에 해외투자자금을 유치⁴³⁾함으로써 외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국내 창업·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탈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 국가전체 해외 직접투자 실적(억원) : (05) 93,900 → (06) 177,147 → (07) 268,760 → (08.6) 170,850

창투사의 해외투자 실적(억원) : (05) 171 → (06) 318 → (07) 355 → (08.6) 301 → (08.9) 368

43) 창투사의 해외투자자금 유치실적(억원) : (05) 228 → (06) 509 → (07) 702

<표 58> 창업투자회사 등록현황

(단위 : 개, 억원)

연도별	86~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0
신규(취소)	108(21)	65(5)	4(6)	3(20)	- (11)	1(13)	0(3)	13(11)	7(10)	5(9)
등록현황	87	147	145	128	117	105	102	104	101	97
납입자본금	12,400	21,391	22,194	19,651	18,651	16,528	15,368	15,537	15,558	15,368

<표 59>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업종별 신규투자

(단위 : 억원,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9
정보통신	투자금액	2,914	2,757	3,006	2,713	3,137	1,603
	비율	46.2	45.6	39.7	37.0	31.7	28.1
일반제조	투자금액	1,135	1,299	1,378	1,503	2,701	1,500
	비율	18	21.5	18.2	20.5	27.2	26.3
생명공학	투자금액	177	127	651	609	585	348
	비율	2.8	2.1	8.6	8.3	5.9	6.1
엔터테인먼트	투자금액	1,57	1,529	1,946	1,657	1,997	1,167
	비율	23.1	25.3	25.7	22.6	20.1	20.4
서비스 /교육	투자금액	315	157	273	433	961	442
	비율	5	2.6	3.6	5.9	9.7	7.7
원료재생 /환경복원	투자금액	25	12	23	0	50	16
	비율	0.4	0.2	0.3	0.0	0.5	0.3
유통	투자금액	214	127	220	293	354	282
	비율	3.4	2.1	2.9	4.0	3.6	4.9
기타	투자금액	69	36	76	125	132	357
	비율	1.1	0.6	1.0	1.7	1.3	6.2
합계	투자금액	6,306	6,044	7,573	7,333	9,917	5,715
	비율	100	100	100	100	100	100

(3) 부담금의 면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2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기업 활동과 관련된 부담금 11종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 제39조의2 (부담금의 면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1호의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m³ 미만인 사업장에 한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에 한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이 규정은 부담금이 도입된 ‘1960년대 이후 부담금의 종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⁴⁴⁾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으로 인해 기업활동에 큰 애로로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준조세 부담 실태조사⁴⁵⁾”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 규모는 연평균 775만원 정도에 달하고 있다.

<표 60> 부담금의 세부항목별 납부내역

구 분	세 부 항 목	지출금액(천원) (업체당평균)	구 성 비 (%)
법적 부담금	농지조성비	257.7	3.3
	대체초지조성비	0.22	-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394.6	5.1
	폐기물부담금	3,514.5	45.4
	물이용부담금(한강 등 4종)	597.6	7.7
	소 계	4,764.62	61.5
	수질개선부담금	296.8	3.8
	재활용부과금	1,097.9	14.2
	환경개선부담금	409.9	5.3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금	120.8	1.6
	교통유발부담금	66.7	0.9
	기타부담금	990.8	12.8
	소 계	2,982.9	38.5
합 계	7,747.52	100	

44) 우리나라의 부담금 징수현황을 보면 현재 102개 부담금(『부담금관리기본법』 적용을 받는 부담금·사회보험료, 범칙금 등은 제외)이 있으며 징수액은 11조원에 달하여 국세수입의 9% 수준에 해당됨. 부담금이 도입된 '60년대 이후 부담금의 종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90년대 들어서는 환경,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이 증가한 가운데 2001년 ~ 2005년 부담금 징수액 평균 증가율은 12.7% 수준에 이르고 있음(자료:중소기업청).

45)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기간 : 2006.8.19~10.20

이에 따라 정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완화를 통한 창업유인 확대를 위하여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2006.9.28)”을 통해 총 12종의 부담금 감면을 결정하였고, 합의된 부담금 중 『산지관리법』시행령의 개정(2007.2.1)으로 이미 반영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제외한 11종의 부담금을 추가로 면제하였다.

<표 61> 11종의 감면 부담금 내역

구분	부담금명	설치근거	설치목적	부과주체	부과대상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부담금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자체 공공시설 설치관리에 필요한 재원확보	시군구	공공시설수익자 (상수도시설분담금)
2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제40조	전용하는 용지에 상당하는 농지 조성	시군구 읍면	전용하는 자
3	대체초지조성비	초지법 제23조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 수급안정	농협 중앙회	초지를 전용하는 자
4	전력산업기반 기금부담금	전기사업법 제51조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	한국 전력공사	전기사용자
5	배출부과금 (대기환경)	대기환경보전 법제19조	대기오염물질 방지	지방자치 단체	오염물질 배출사업자
6	배출부과금 (수질)	수질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방지	지방환경 관리청 및 시도	기준이상 오염물질 배출자
7	폐기물부담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자원의 낭비방지	지방환경 관리청	제품,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8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한강수계상수 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질개선 사업 및 주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시군수도 사업자	수돗물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구분	부담금명	설치근거	설치목적	부과주체	부과대상
9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상수원의 적정관리	시군수도사업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 최종수요자
10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2조	상수원의 적정관리	수도사업자 및 낙동강수계관리위	수돗물 최종수요자
11	물이용부담금 (영산강, 섬진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상수원수질 개선 등	시군수도사업자	수돗물 최종수요자

이 규정에 관한 비용추계에 의하면 이 규정의 시행기간 동안의 부담금 감면 규모가 약 4,020억원(초지전용의 경우)에서 4,863억원(농지전용의 경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부담금 감면조치는 중소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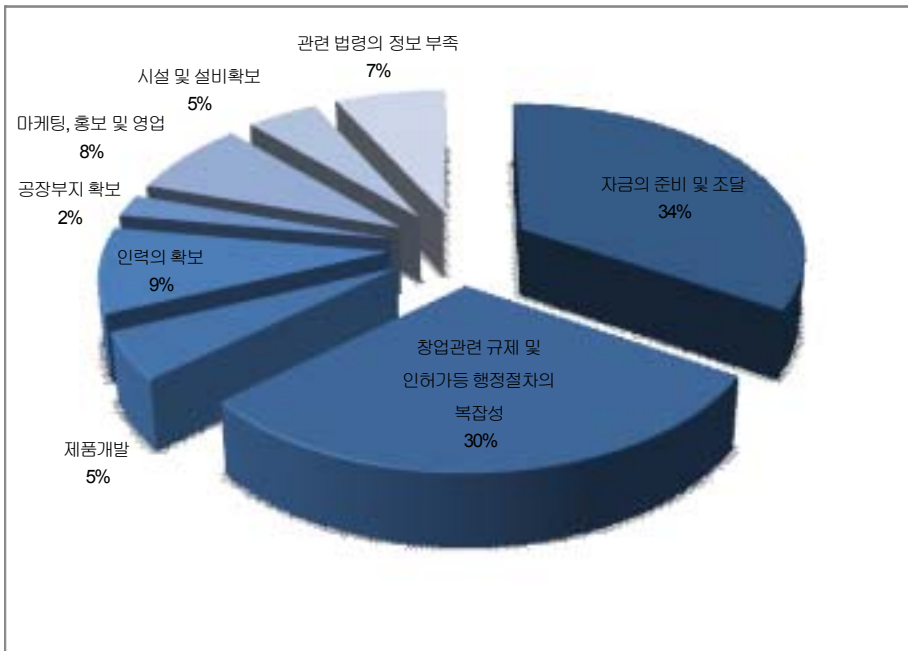
4. 수범자설문조사 및 전문가워크숍의 결과

(1) 중소기업창업 관련 규제 인식정도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 창업투자회사·창업상담회사 등)에 관한 수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창업에 관한 규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설문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범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법제의 규제정도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중소기업의 창업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에 대한 질문에서 ‘자금의 준비 및 조달’로 응답한 사람이 1,228명(복수응답) 중 404명(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창업관련 규제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의 복잡성’으로 응답한 사람이 392명(30%)를 차지하였다. 그 외에는 인력의 확보(108명, 9%), 마케팅·홍보 및 영업(92명, 8%), 관련 법령의 정보부족(88명, 7%), 제품개발(60명, 5%), 시설 및 설비확보(56명, 5%), 공장부지 확보(28명, 2%)의 순이었다.

[그림 12] 중소기업 창업 관련 규제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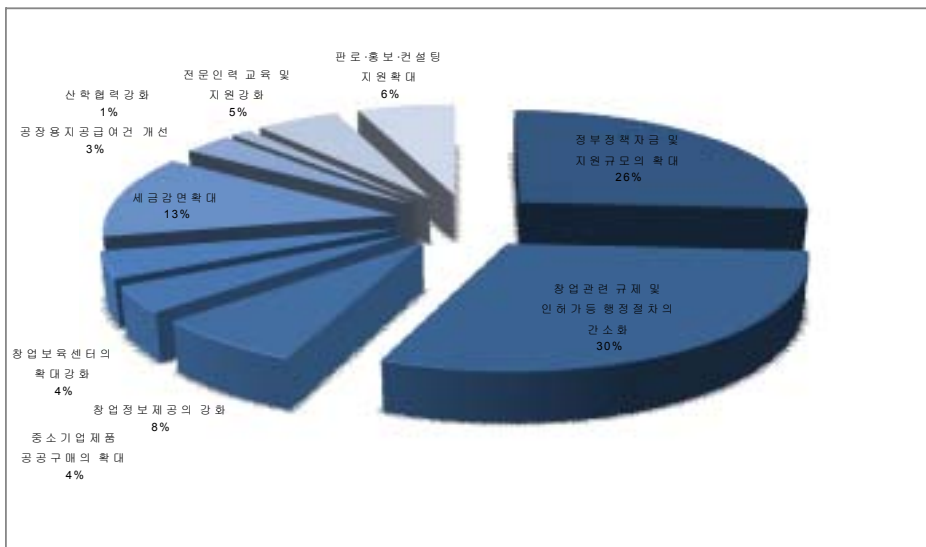
이러한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창업자금의 조달이 창업과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보여지며, 창업지원기금의 확대, 창업투자회사의 숫자 및 업무범위의 확대 등을 통한 창업자금의 공급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창업자금지원제도에 대

한 적극적 홍보와 관련 기관이 창업준비자와 각 기금을 알선해주는 적극적인 서비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역할

또한, 중소기업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나 창업지원제도가 강화하여야 할 역할과 분야에 대한 설문에서는 ‘창업관련 규제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총 1,229명 중 392명(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부정책자금 및 지원규모의 확대’가 중 336명(26%), 세금감면 확대(160명, 13%), 창업정보제공의 강화(96명, 8%), 판로·홍보·컨설팅 지원확대(80명, 6%), 전문인력교육 및 지원강화(68명, 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확대와 창업보육센터의 확대 강화가 각각 52명(5%), 공장용지공급여건 개선(40명, 3%), 산학협력강화(16명, 1%)의 순이었다.

[그림 13] 창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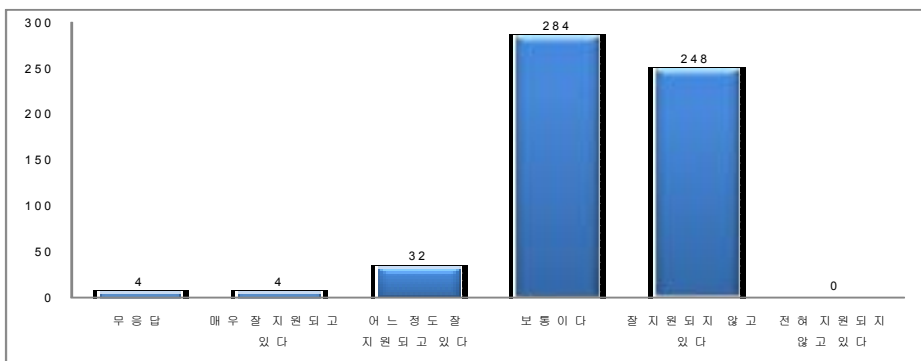
이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현행 각종 법령상의 창업관련 규제나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대하여 수범자들은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곧 창업비용과 직결된다. 현행 중소기업 관련 법령 및 창업관련 법령에서 각종 규제의 완화 및 행정절차간소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수범자인 중소기업자들이 체감하는 정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중소기업 관련 법령 이외의 각종 행정특별법 및 업역별 법령에서는 여전히 많은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창업에 관한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들이 중소기업 관련 법령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서 광범위하게 존치되고 있다는 점에서, 각종 행정특별법 및 건설·정보통신 등 업역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와 행정절차에 대한 합리화 및 간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⁴⁶⁾

(3)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정도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572명의 응답자 중 ‘보통이다’(284명)→‘잘 지원되지 않고 있다’(248명)→‘어느 정도 잘 지원되고 있다’(32명)→‘매우 잘 지원되고 있다’(4명)→무응답(4명)의 순이었다.

[그림 14]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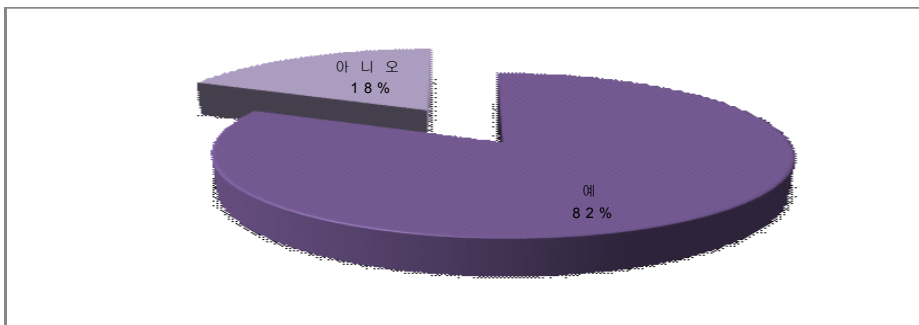
46)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필수인력에 대한 신고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차이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범자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창업관련 법제도적 지원이 아직까지 수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법제도적 수단이 수적으로 많이 보완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수범자들의 수요가 높은 핵심적인 분야가 아니라 관련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설립 등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주변적인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추측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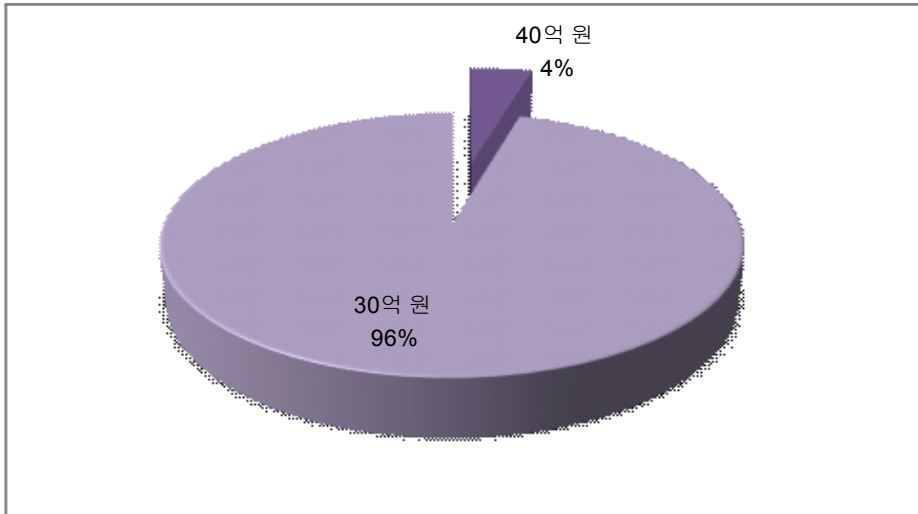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회사로서,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금이 50억 원 이상 및 전문인력 2인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에서 총 572명의 응답자 중 82%에 해당하는 468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납입금은 현재 50억에서 30억 정도가 적당하다는 답변이 96%에 해당하는 448명이 답하였다. 또한 전문인력도 1인 이상이면 적절하다는 답변이 384명으로 82%를 차지하였다.

[그림 1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여부



[그림 16]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납입금 조정 여부



이러한 설문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통하여 창업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중소기업자 또는 창업준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창업투자회사의 출현과 함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재정건전성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납입금의 규모에 따라서 투자대상 영역이나 범위를 한정하는 조치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제 4 절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간접지원 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1. 중소기업창업의 지원제도의 주요내용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는 우수한 기술과 사업성 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속하게 창업을 통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정보제공, 교육, 보육,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는 지원 내용에 따라 컨설팅·교육, 자금, 보육 등으로 구분되며, 그 외에도 창업에 소요되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있다.

(1) 컨설팅·교육

창업자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는 창업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창업에 대한 전문인력과 기관을 통해 창업희망자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창업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 자금지원

창업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소요되는 자금의 문제이다. 모든 정책자금이 그러하듯 창업자금도 크게 융자지원과 투자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원기관을 통해 담보부, 보증서부, 신용부로 대출 지원되며 투자지원은 창업투자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창업기업에 대한 원활한 융자 지원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기술평가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사업도 지원되고 있다.

(3) 창업보육(Business Incubating)

창업보육은 창업초기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가 성공적으로 기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기술·경영지도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며 주로 대학·연구소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동 센터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자는 보육센터 입주를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전국에는 약 270여 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으며 보육센터 입주에는 센터별로 심사가 필요하다.

(4) 창업 절차 지원

실질적으로 창업시 인허가 등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조업의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허가의 일괄신청·처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이 정부에서 제공 할 수 있는 지원형태이다.

2. 간접적 지원제도의 주요내용

중소기업 창업 간접적 지원은 앞서 언급한 컨설팅 업무와 자금지원에 있어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업무를 시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이 이들 기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간접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은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자금투자를 통해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있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

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정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함은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등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로써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제도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이다.

2)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

상담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 및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수립
- 창업자의 공장설립 간소화제도인 “창업사업계획승인”관련 인·허가 절차 대행
- 경영·기술지도, 자금의 알선, 창업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및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 상기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 회사를 중소기업청에 상담회사로 등록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보다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상법상의 회사로서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사업목적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부합
- 임원 자격이 요건에 적합
-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전문인력 2인 이상 (1인은 상근)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 분야

가. 경영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대학 경영학 전임강사 이상 교원

다.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마.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기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에서 5년 이상 보육 매니저로 종사한 자

② 기술 분야

가. 자연과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기술사 또는 기능장, 기사1급 7년 이상 실무종사자

다. 자연과학분야를 강의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

라. 기술지도사

마. 정부출연연구기관중 기초기술분야·산업기술분야 공공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연구 경력자

바.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자

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아. 기타 중소기업청 연구관으로 5년 이상 중소기업 지원사무에 종사한 자

상기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상담회사 전문인력이 자격을 상실한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상기의 자격을 갖춘 경우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류, 사무실 확보현황 서류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변경

기존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납입자본금, 전문인력 보유현황, 사업목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변경된 때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된 내용을 기재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지원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부터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계획서 승인 관련 인·허가 절차 대행용역을 받아 창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창업자가 상담회사에 의뢰하면 당해용역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62> 창업중소기업 지원내용

용역명	세부지원내용	지원금액
사업타당성 검토	업종, 규모, 기업형태 등 사업계획수립의 합리성, 사업성 기술성에 대한 사업성 평가 및 창업절차 안내 등	300만원 이내
창업절차대행	주주구성, 이사선임, 정관작성 등 법인설립대행, 세제감면 내용검토 및 확인서 발급대행, 사업자등록 신고 및 관련 인허가 대행, 창업 초기 기업경영에 대한 상담 등	100만원 이내
창업공장 설립대행	창업사여계획승인(공장설립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대행, 의제처리사항에 따른 인허가 사항의 검토, 세제감면 내용이 검토, 창업자의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사전보고서 작성 및 제출대행 등	100만원 이내
경영 기술지도	창업초기 경영정책 분야, 판매관리, 인사관리, 재무 관리, 기술혁신 분야 등	600만원 이내

6) 중소기업상담회사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상담회사는 1986년 중소기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처음 등장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상담회사들이 형성된 시기는 1990년대 무렵부터였다. 현재 전국적으로 156개 상담회사들이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경영지도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사학위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우수한 창업전문 인력을 두어 창업자에게 충분한 제도적, 기술적 지원과 창업으로부터 피해를 미리 막거나 줄이려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전문상담회사의 수는 9만 5000여 개소의 중소기업체에 비교하면 절대 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상담회사의 희소가치와 사회적 공신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욱이 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역할과 업무의 비중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정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함은 새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에 투자, 출자 또는 용자 형태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지원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상담회사와 함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간접제도의 핵심적 제도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의 창업에 관련 내용을 컨설팅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것에 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들이 창업에 있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창업자금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외에 시장경제 질서에 의해 투자자들의 투자에 의해 창업자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상담회사와 함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 지원제도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이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요 사업 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창업자에 대한 투자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 상기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사의 등록

재구조가 건전한 투자회사를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등록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50억 이상
- 사업목적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부합
- 임원 자격이 요건에 적합
- 2명 이상의 전문인력
-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

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자는 임원으로서 등록하지 못한다.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등의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서 말소하기 전에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와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나 다음에 해당하는 대주주는 대표이사로 등록 할 수 없다.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이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

나. 기술사 자격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마.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검사대상기관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바. 창업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상기의 자격을 갖춘 인력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월 이상 경과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상기의 자격을 갖춘 경우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전문인력 자격증명서류, 사무실 확보현황 서류 등을 포함한 신청서류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상담회사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처음 등장하였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1986년부터 국내의 기존 벤처캐피털 기업과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이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자본금을 비롯한 자체자금과, 일부 투자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결성되는 출자조합의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설 중소기업들의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회사는 자금조성을 위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투자자를 모집, 출자조합을 설립한다. 또, 출자조합원이 100만 원짜리 출자구좌를 1구좌 이상 구입하면, 조합원의 자격으로 투자자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면서 구좌수에 비례한 투자수익을 받게 된다. 투자가 성공할 경우에는 그 과실의 20%를 먼저 떼어서 창업투자회사가 차지하고, 나머지 80%를 조합원들에게 구좌수 비례로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투자가 실패하였을 경우, 조합원들의 투자원금에 대한 보장은 없다. 다만, 기금과 창업투자회사 자신의 출자분을 먼저 손실로 처리하고 조합원 출자분은 후순위로 손실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의

성공적인 투자의 경우를 보면 몇 년 안에 원금의 20~30배가 된 일도 있다.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상의 간접적 지원제도의 법개정 내용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상의 중소기업상담회사 관련 법개정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31호로 제정된 이후 2009년 8월 현재 총 5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대부분의 개정은 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 부수조치로서의 개정이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은 총 11차례에 걸친 개정이었으며 이중 중소기업상담회사 관련 법개정 내용은 총 4차례였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자 및 법률번호	주요 내용
1992. 12. 8 법률 제452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범위에 창업절차의 대행과 관련 되는 용역업무를 추가함.(법 12조 1항 5호 신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취소사유를 정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
1995. 7. 1 법률 제489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업무영역을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알선 및 해외기술을 알선·보급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도록 함.
2002. 6. 26 법률 제667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변경 및 취소사유의 신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소재지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함.(19조 1항)

개정일자 및 법률번호	주요 내용
	<p>◆다음의 자를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자격 결격사유로 신설(19조 2항)</p> <p>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p> <p>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2005. 10. 30 법률 제7634호	<p>◆제20조 중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일부를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을 “일부를 지원”으로 한다.</p>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회사 관련 법개정 내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31호로 제정된 이후 2009년 8월 현재 총 57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대부분의 개정은 타 법률의 개정에 따른 부수조치로서의 개정이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한 중요한 개정은 총 11차례에 걸친 개정이었으며 이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회사 관련 법개정 내용은 총 7차례였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주요 개정내용

개정일자	주요 내용
1992. 12. 8 법률 제4525호	<p>◆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취소사유를 정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p>
1995. 7. 1 법률 제4899호	<p>◆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업무 중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신설</p>

제 4 절 중소기업창업지원법령상 간접지원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개정일자	주요 내용
<p>2000. 4. 22 법률 제619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유한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설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회사나 조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의 취득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재원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법 제8조).
<p>2002. 6. 26 법률 제6675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업무와 무관한 분야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일정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인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회사의 등록요건에 임원의 결격사유추가함(법 제7조제2항제2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부동산업 등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2조제5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5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연차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창업자 또는 벤처기

개정일자	주요 내용
	업에 투자하도록 함(법 제8조의2 및 제12조제3항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조합에서 탈퇴하는 경우 종전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월 이내에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조합원을 새로이 가입시킨 때에는 동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신설).
2005. 4. 1 법률 제7287호	◆창업투자회사의 공시규정 신설(법 제7조의5 및 제32조제1항 제2호의2 신설) ◆창업투자회사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창업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 시정명령 및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도록 함.
2006. 3.24 법률 제7752호	◆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기 위한 요건을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유지 여부 확인,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동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일시, 검사목적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2007.3.27 법률 제8086호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해외투자 여건 개선(법 제7조제7호 및 제8조의3) 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일부 개선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를 도모함.

4. 중소기업창업 간접지원제도에 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입법평가 대상 내용과 문제 상황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 까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많은 중소기업 창업의 경험이 있는 자들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많은 애로점을 호소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자금의 준비 및 조달 그리고 창업관련 규제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복잡성을 꼽고 있다.

본 보고서 집필팀이 2009년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중 중소기업 창업관련 인식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에 있어 애로점을 중복 응답한 결과 총 572명이 응답한 결과 자금의 준비 및 조달에 대해 404명이 창업관련 규제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복잡성을 392명이 지적하였다. 이는 각각 70%와 68.5%에 해당하여 응답자의 3/2 이상이 자금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자금조달의 경우 일부 정부가 직접적으로 용자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시장원리에 의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허가 등 절차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소기업 창업경험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제도가 수요자의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러한 법률 수요자의 입장에서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양질의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시장에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재무적으로 건전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기존 업계의 진입장벽을 뛰어 넘어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이들의 창업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는바 이에 본 보고서는 해당 관련 내용인 동법 조문으로는 제10조와 제31조 그리고 시행령 제9조와 제20조를 대상으로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상의 중소기업상담회사 관련 내용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내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알선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
할 것

동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
건은 동 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규정은 다음
과 같다.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31조제2항 제1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 ②법 제31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
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별표 1의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 2.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 ③법 제31조제2항 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과 시행령을 조합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
으로는 5천만원의 납입자본금 2명 이상의 전문인력 그리고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이 있어야 한다. 회사를 설립
하기 위해서 영업장소인 사무실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나 5천만원 이
상의 자본금과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은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동 시행령에서 처음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설립요건을 처음 규
정 할 때에는 1억의 자본금이 요구되었으며(시행령 제13862호 1993.2.24)
전문인력 역시 2개 종의 5인을 보유하고 3인은 항시 상근하여야 하였
다. 이후 1995년에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립요건을 강화하여 자본납입금을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시행령 141698호 1995.7), 중소기업의 활성화의 목적과 동시에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자본금 2억에서 5천만원으로 전문인력은 3인에서 2인으로 완화하였다(시행령 16311호 1999.5).

따라서 이러한 자본금 규정과 전문인력 보유 기준은 시대적 상황과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기준으로 이해된다. 특히, 현재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중소기업들의 존속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제도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기의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범자의 설문조사 및 전문가의 워크숍을 통해 해당 기준의 완화를 위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관련 내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내용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제10조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한다.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투자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 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아.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또는 임직원
- 자. 제12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43조에 따른 등록 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동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 9 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10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 ②법 제10조제2항 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은행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보험업법』
 9. 『상호저축은행법』
 10.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신용보증기금법』
 1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3. 『신용협동조합법』
 14. 『새마을금고법』
 1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6. 『외국환거래법』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0. 『외국인투자촉진법』
 2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22. 『산업발전법』
- ③법 제10조제2항 제2호바목 및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법 제10조제2항 제2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날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10조제2항 제2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고 그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3.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창업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

⑥법 제10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전문인력. 다만, 법 제10조제2항 제2호 바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 또는 그 사유를 통보받은 날부터 3년(등록말소일부터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또는 이공계열·경상계열 석사

-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라. 이공계열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관련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
- 마. 학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경영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창업투자회사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회사(그 계열사 및 지점을 포함한다)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대출심사업무는 제외한다)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바. 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 사.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자격·학력기준을 충족한 자 중 경력기준에 못 미치는 자 또는 바목에 따른 경력기준에 못 미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사무실

동 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50억원의 납입자본금 2명이상의 전문인력 그리고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이 있어야 한다. 회사를 설립

하기 위해서 영업장소인 사무실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나 5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2명 이상의 전문인력은 중소기업상담회사와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동 시행령에서 처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을 처음 규정 할 때에는 20억의 자본금이 요구되었으나 이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시행령 제12858호 1989.12.22) 이후 1991년에는 자본납입금을 5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조정하였으나(시행령 제141698호 1995.7), 중소기업의 활성화의 목적과 동시에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다시 자본금 100억에서 50억으로 완화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금 규정과 전문인력 보유 기준은 시대적 상황과 중소기업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기준으로 이해된다. 특히, 현재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중소기업들의 존속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제도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기의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범자의 설문조사 및 전문가의 워크숍을 통해 해당 기준의 완화를 위한 평가를 하도록 한다.

5. 수범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 결과

(1)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설립 완화에 관한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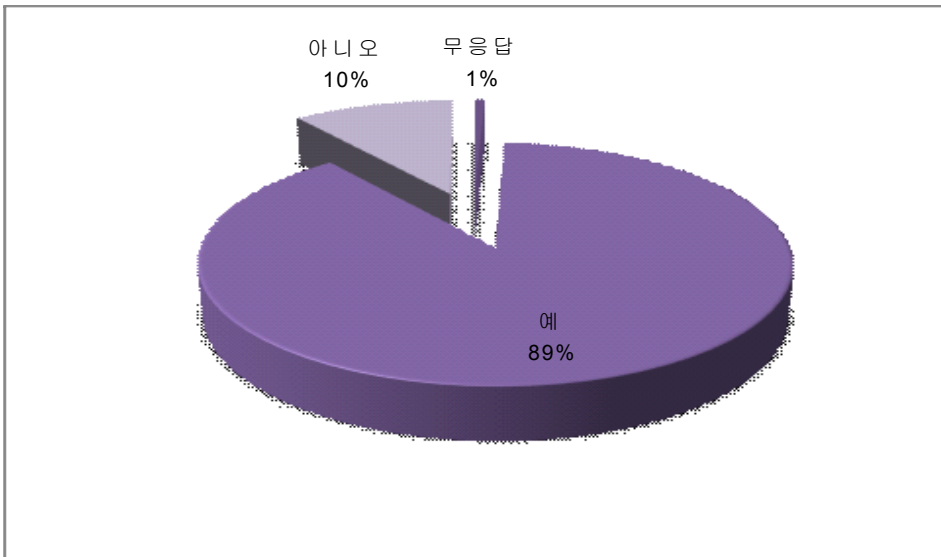
1) 중소기업상담회사에 관한 일반적 문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과 관련 구체적인 쟁점(법정 요건인 자본납입금 및 전문인력 수의 문제)에 관한 수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상담회사를 간단히 설명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의뢰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수범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견을 문의한 배경은 중소기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수범자들이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존재 유무 및 이를 활용하는데 대한 의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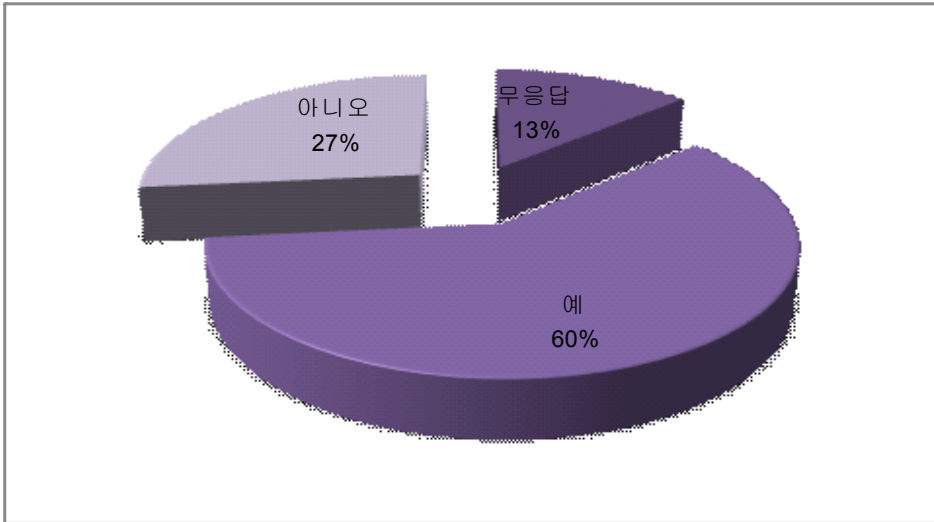
이에 관한 수범자들의 의견을 보면, 총 응답인원 572명 중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절대적인 다수인 508명(89%)이었으며 “아니오”라고 응답한 사람이 60명(10%),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4명(1%)로 나타났다.

[그림 17] 중소기업상담회사의 활용의향에 대한 의견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의뢰하실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에게만 중소기업상담회사 외에 다른 대안을 묻기 위해 직접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실 의향을 물어본 결과 “예”라고 답한 의견은 36명(60%) “아니오”라고 답한 의견은 16명(27%) 역시 무응답은 8명(13%)에 해당하였다.

[그림 18] 상담 창구로서 직접적 전문가 활용의향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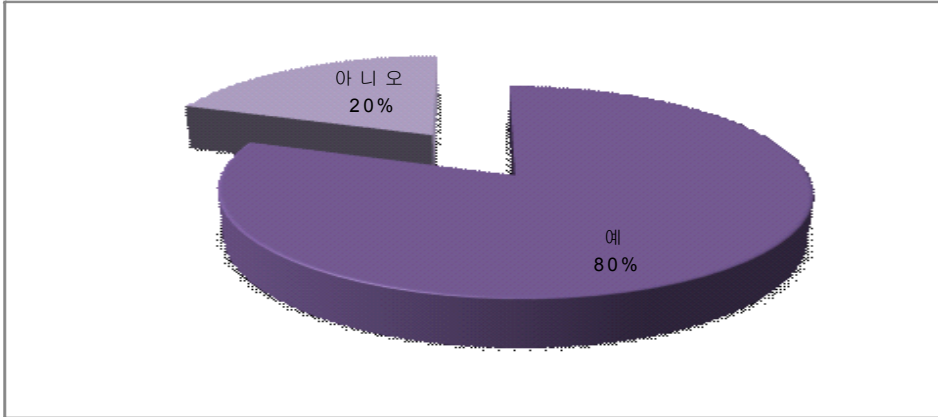
(총 응답인원 : 60명)

이러한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설문조사의 대상자 절대적 다수인 90% 가까이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활용의사를 비취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유용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활용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 중 전문가를 직접 찾아 상담을 하겠다는 의견도 36명이나 있어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상담을 의뢰한 경험이 있음이 확인되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컨설팅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추측을 해볼 수 있다.

2) 법정 요건인 자본 납입금의 문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정요건 중 하나인 5000만원에 대해 완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460명(80%)이 완화를 그리고 112명(20%)이 완화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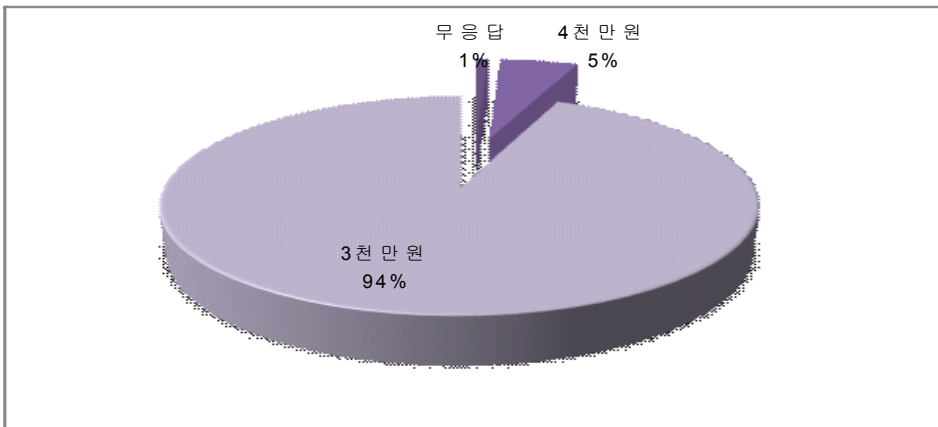
[그림 19] 자본 납입금 5000만원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572명)

완화에 찬성한 사람들에게만 현행 납입금 5000만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기 위해 4000만원과 30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결과 4000만원은 24명(5%)이 3000만원은 432명(94%)이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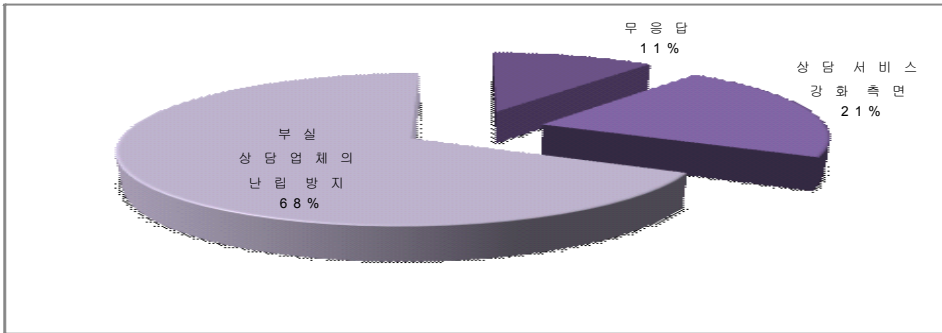
[그림 20] 자본 납입금 완화 수준에 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460명)

반면, 법정 납입금 5000만원을 완화하는데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찬성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상담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반대한 경우가 24명(21%), 부실 상담업체의 난립 방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76명(6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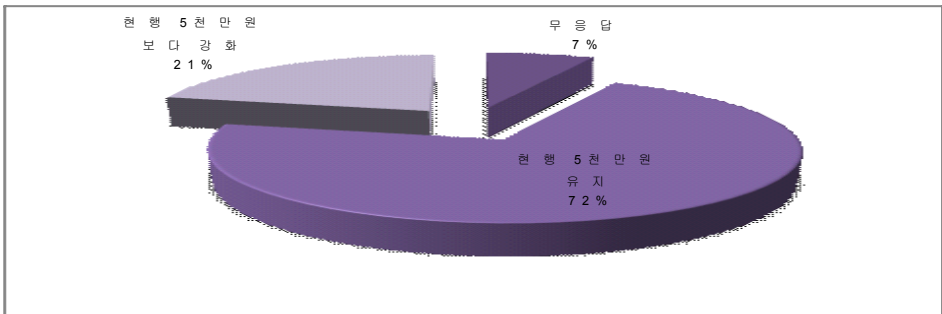
[그림 21] 자본 납입금 완화 반대의 이유



(총 응답인원 : 112명)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납입금은 얼마로 하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현행 5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0명(72%), 오히려 현행 5천만원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4명(21%)로 나타났다.

[그림 22] 자본 납입금 수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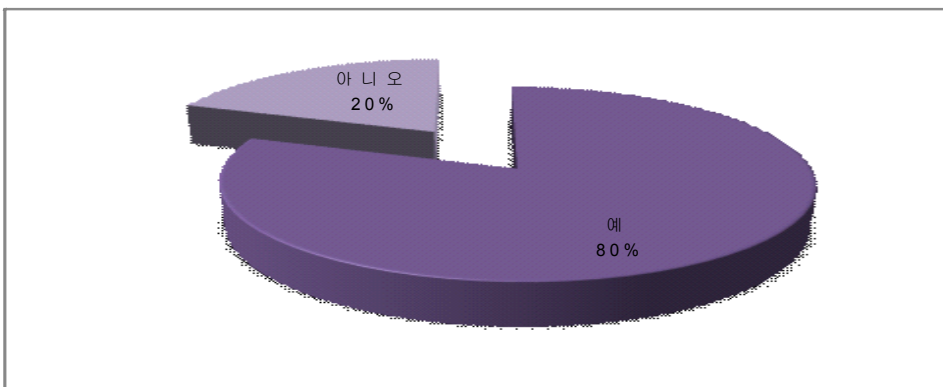
(총 응답인원 : 112명)

이러한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설문조사의 대상자 중 대다수인 80%가 납입금 5000만원이 과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들 중 절대적 다수인 95% 가까이 적절한 납입금 액수를 3000만원이라고 답하며 자본납입금은 가능한 낮추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납입금 완화 반대의 의견도 20%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현행 5000만원이 적정하다고 하였으나 이중 24%는 오히려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실 상담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상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렇게 답한 사람들 가운데 전항의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과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컨설팅 능력에 대한 신뢰도에도 우려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3) 법정 요건인 전문인력 수의 문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정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460명(80%)이 완화를 그리고 112명(20%)이 완화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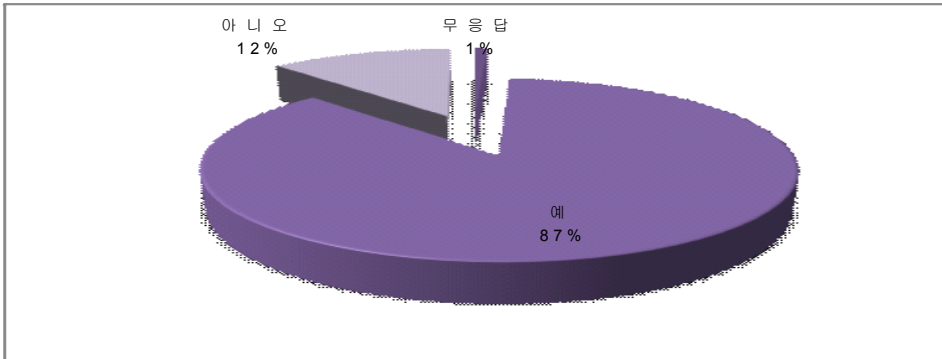
[그림 23] 법정 요건인 전문 인력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572명)

전문인력 보유 완화에 찬성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기준완화 수준으로 1인 보유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87%가 찬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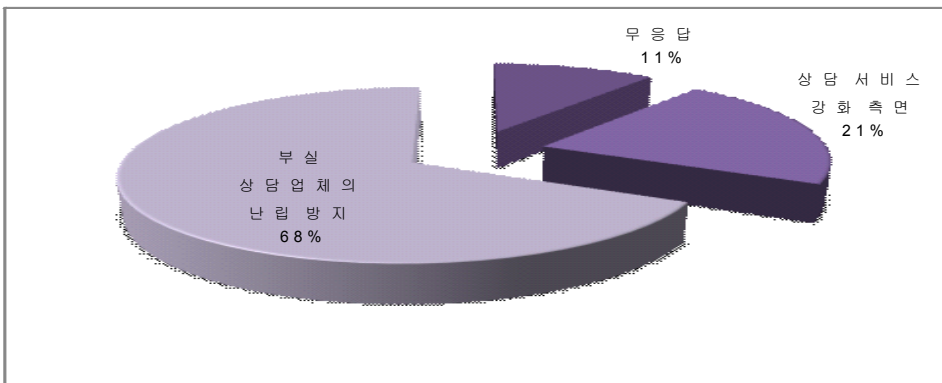
[그림 24] 전문인력 1인 보유에 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460명)

이에 반해 전문인력 보유기준에 반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찬성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상담 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반대한 경우가 24명(21%), 부실 상담업체의 난립 방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76명(68%)로 나타났다.

[그림 25] 전문인력 기준완화 반대의 이유



(총 응답인원 : 112명)

그리고 이들을 상대로 전문인력의 보유 기준은 몇 명이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현행 2인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68명(61%), 오히려 현행 2인 보다 강화하여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40명(36%) 가까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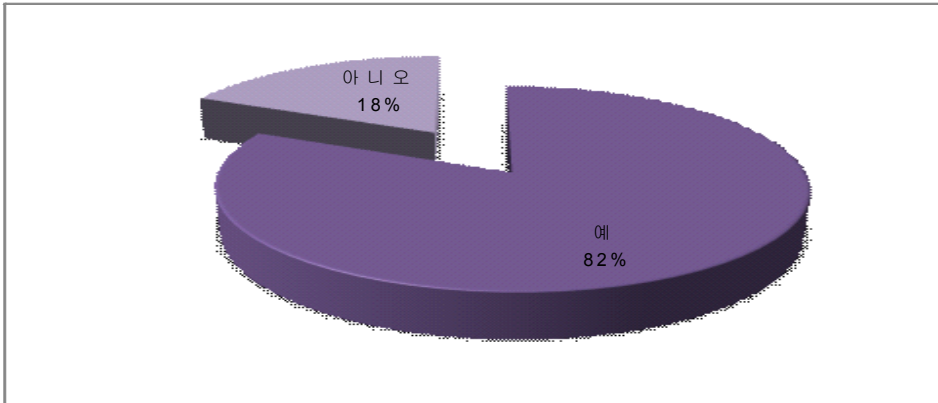
이러한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설문조사의 대상자 중 대다수인 80%가 현행 2인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이들 중 87%인 400명이 1인 기준에 동의하였다. 이에 반해 20%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보유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61%는 현행기준을 유지에 찬성하였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6% 나타났다. 그러나 본 설문조사 중 하나의 모순이 발견되었는데 전문인력 2인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찬성을 한다면 당연히 모든 찬성의견이 1인으로 줄이는 것에도 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보유에 대해서 56명 가까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 수범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중소기업관련 규제완화의 설문에 있어 규제완화에 기계적으로 찬성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 완화에 관한 문의

1) 법정 요건인 자본 납입금의 문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정요건 중 하나인 50억원에 대해 완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468명(80%)이 완화를 그리고 104명(18%)이 완화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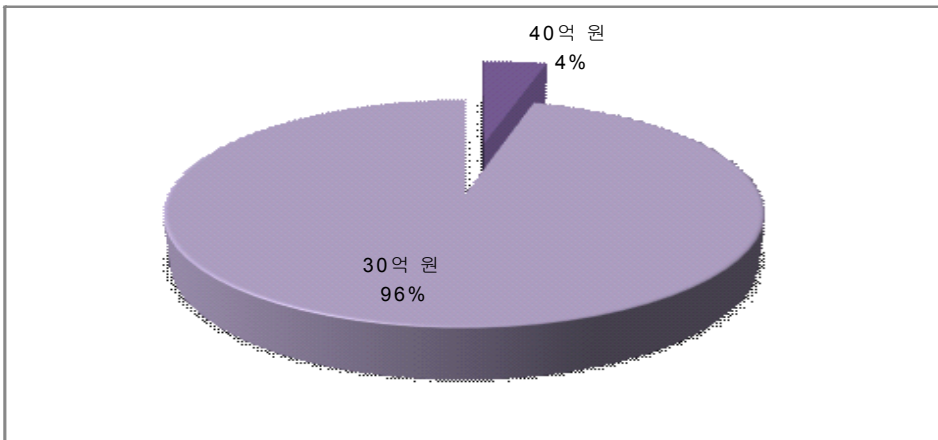
[그림 26] 자본 납입금 50억원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572명)

완화에 찬성한 사람들에게만 현행 납입금 50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묻기 위해 40억과 30억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결과 40억은 20명(4%)이 30억은 448명(96%)이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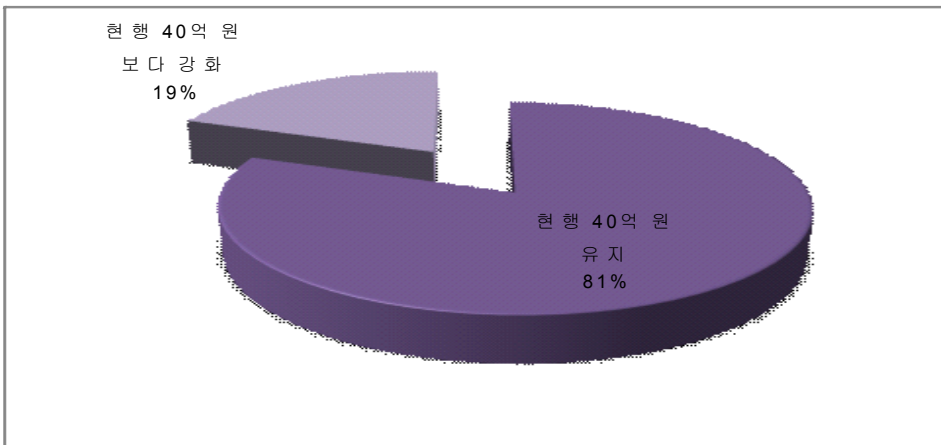
[그림 27] 자본 납입금 완화 수준에 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460명)

반면, 법정 납입금 50억원을 완화하는데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납입금은 얼마로 하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현행 50억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4명(81%), 오히려 현행 50억원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20명(19%)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자본 납입금 수준에 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11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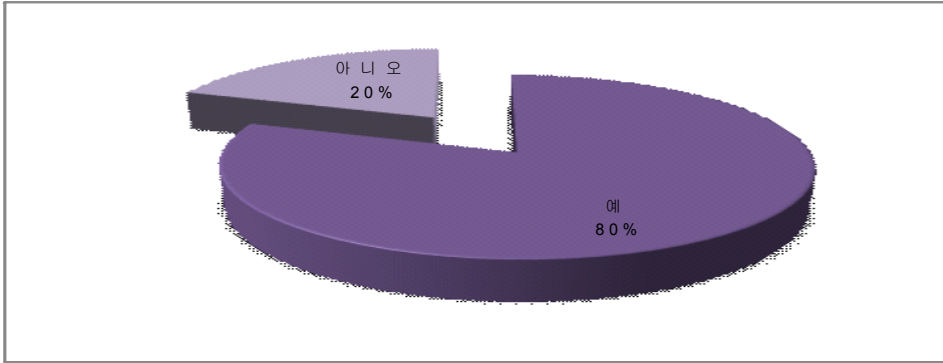
이러한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설문조사의 대상자 중 대다수인 80%가 납입금 50억원이 과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이들 중 절대적 다수인 96% 가까이 적절한 납입금 액수를 30억원이라고 답하며 자본납입금은 가능한 낮추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본납입금 완화 반대의 의견도 20%가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현행 50억원이 적정하다고 하였으나 이중 19%는 오히려 50억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법정 요건인 전문인력 수의 문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창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정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는 468명(82%)이 완화를 그리고 104명(18%)이 완화에 대해 찬성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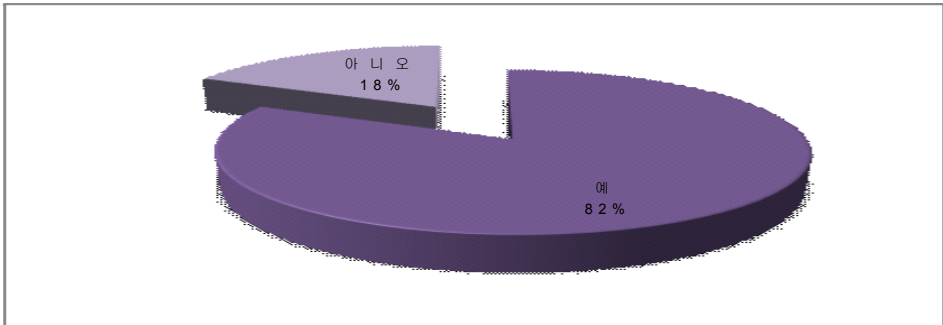
[그림 29] 법정 요건인 전문 인력 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572명)

전문인력 보유 완화에 찬성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기준완화 수준으로 1인 보유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82%가 찬성을 하였다.

[그림 30] 전문인력 1인 보유에 대한 의견



(총 응답인원 : 468명)

이에 반해 전문인력 보유기준에 반대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전문인력의 보유 기준은 몇 명이면 타당하냐는 질문에는 현행 2인을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68명(65%), 오히려 현행 2인 보다 강화하여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36(35%) 가까이 나타났다.

이러한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설문조사의 대상자 중 대다수인 82%가 현행 2인 이상의 전문인력 보유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이들 중 82%인 384명이 1인 기준에 동의하였다. 이에 반해 18%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보유기준 완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65%는 현행기준을 유지에 찬성하였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35% 나타났다. 그러나 중소기업상담회사와 같은 동일한 모순이 발견되었는데 전문인력 2인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찬성을 한다면 당연히 모든 찬성의견이 1인으로 줄이는 것에도 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 보유에 대해서 중소기업상담회사의 56명보다 많은 84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이 역시 규제완화에 기계적으로 찬성의 표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제 4 장 요약 및 정책권고

중소기업 창업규제와 관련 법제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수범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연구진은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 결론에 더 잡아 현행 중소기업 창업규제 관련 법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권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현행 법질서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관련 규제법규가 다양한 법률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지금까지 쟁점별로 논의한 각종 규제법규의 개선에 관한 정책만을 권고할 것이다.

제 1 절 창업절차규제법령의 개선방안

법인설립절차를 중심으로 하는 창업절차에 대한 규제도 실로 다양한 법률들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다양한 법률과 산재되어 있는 규정들에 의해 일반적인 창업절차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상법 제22조(상호등기의 규제) 및 제23조(동일 시군구 지역내 상호사용규제), 상법 제80조(등기시 제출서류), 공증인법 제66조(정관인증절차) 및 동법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상법 제383조(이사의 수 및 임기), 상법 제409조(감사의 선임)를 선정하였다.

이들 규정은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에 있어 규제적 요소로 문제제기가 되어왔고,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 혹은 법인설립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담과 비용을 수반하는 규제으로써 인식되어 온 사항들이다. 이들 규제요소들 중 최근 관련 법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본금 기준 일정규모 이하의 회사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제완화조치의 기준이 실제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들 법령을 대상으로 한 입법평가의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정책 권고를 하고자 한다.

첫째, 상법 제22조와 제23조에서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지역 내에서의 동일·유사상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시 일정한 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나 등록된 상호사용의 규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7%가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중복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함으로써 현행 상법상의 비현실적 상호규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법인설립에 의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사상호의 사용이 금지되는 지역적 범위를 좁히거나 혹은 사용가능한 지역적 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규정의 개선을 권고한다.

둘째, 상법 제292조와 상업등기법 제80조, 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는 법인설립시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발기인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을 설립등기의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서류에 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도록 하는 한편, 자본금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는 인증의무를 면제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면제규정은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배려를 그 취지로 하고 있으나 실제의 중소기업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입법평가의 결과이다. 이에 관한 실무계의 실태조사에서도 소규모회사의 창업시에는 이러한 인증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부담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법상 최저자본금규제가 폐지된 이상 자본금 10억 미만 규모회사의 면제기준을 아예 철폐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창업시에는 위의 인증의무를 면제하는 식의 법개정을 고려할만 하다.

셋째, 상법 제382조 및 제383조는 이사의 선임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사의 원수를 최소 3인 이상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다만 10억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09조는 원칙적으로 감사의 선임을 의무화하면서도 다만 자본금총액이 10억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감사선임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들 규정에 의한 의무경감은 중소기업의 법인설립시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일정규모 이하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사 또는 감사선임의무를 경감시키는 규제방식은 상법상 종전 5천만원 이상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 취지, 즉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라는 취지에 비추어보면 올바른 규제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본 입법평가의 결과이다. 따라서 상법의 규정은 10억 이상의 자본금규모를 가진 상법상의 중소기업 규모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필수적으로 감사를 선임해야만 하는 상황을 벗어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 즉 중소기업의 3인미만 이사 선임기준과 감사선임 면제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기준과 일치시키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 2 절 벤처기업 창업규제법령의 개선방안

벤처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규제법규는 다양한 법률에 산재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창업규제와 관련된 입법평가의 대상법령으로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 제18조의2(실험실공장), 제17조의4 및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내의 공장설립의 특례)를 선택하였다. 원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정된 법률이지 벤처의 창업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

정된 법률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이 그러하듯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벤처기업의 설립과 관련한 다양한 요건이나 절차 등을 동법에 규정해두지 않을 수 없고, 바로 이러한 법정 요건과 절차가 현실에서는 규제로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현장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일정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논의의 대상으로 되었던 쟁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동법 제11조의2의 개정을 제안한다. 이미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7.6%로 나왔다는 점은 현재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만으로는 벤처기업의 창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아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확고하고, 이를 통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이윤을 획득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굳이 그 업무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둘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실험실공장의 특례규정도 실험실공장의 설치요건을 현재 보다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교원이나 연구소의 연구원만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공계 대학원생이나 심지어 대학생의 경우에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해소와 대학 등의 이윤확보 등에 보다 크게 기여할 것이다.

셋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와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은 벤처기업이 창업보육센터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내 공장을 설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의 공장설립 등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내에 공장이 설치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창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공장설립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장설립절차의 간소화 방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집적지역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제 3 절 창업지원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중소기업창업지원과 관련하여 각 제도의 상충이라든지 각 부처 지원의 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법률의 근거없는 제한과 체계상의 문제, 지원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자의 입장에서 지원대상·조건·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창업지원절차와 관련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장기적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설립 승인제도와 일원화함으로써 절차의 중복성과 복잡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행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려면, 사업계획서 및 제반 토목·건축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등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고, 토지매입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창업자는 준비에 소요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창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시간적·경제적 위험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와 공장설립 승인제도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승인기관, 절차, 구비서류 등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도 유사하고 승인을 받음으로써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범위도 유사하다. 다만 중소기업창업자로서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부담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자 중 공장설립시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모르고 공장설립 승인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부담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창업자가 많으므로 중소기업자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제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⁴⁷⁾

사업계획승인제도와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모두 공장의 설립에 관하여 각종 인허가 등을 일원화하여 처리하여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되고, 인허가가 의제되는 범위도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을 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사업계획승인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담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공장설립 승인제도는 이러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혜택의 부여없이 단순히 공장설립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방법이 다소 다르다.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혜택을 부여한다면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므로, 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설립 승인제도로 일원화하게 되면 창업지원 혜택 부여의 기준을 찾을 수 없게 되므로 일원화에 난점이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계획된 입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에 더하여 국토의 난개발우려를 무릅쓰면서도 중소기업창업지원과 같은 정책목표를 위하여 부담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것인가는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러

47) 최성근, 『중소기업 관련법령의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23면.

나 일단 중소기업창업지원 목적상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한다면 과도기적으로는 양 제도의 병존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양 제도를 가능한 한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공장설립제도에서 의제되고 있는 인허가 중 사업계획승인제도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각각 추가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사업계획승인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자가 몰라서 사업계획승인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국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의무비율 40%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둔 상태에서, 국내 창업·벤처기업의 해외지출지원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자금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투자 제한규정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외화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 제한규정 폐지로 국내 자금이 해외로 빠져 나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는 단기 금융상품이 아니라 실물기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단기적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투자위험이 적고, 국가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0.18%)이므로 해외투자 제한규정 폐지로 인해 외화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적을 것으로 보인다.

제 4 절 간접지원 관련 중소기업창업지원 법령의 규제완화

중소기업의 창업과 관련된 규제법규는 다양한 법률에 다양한 규제의 형태로 있다. 동 연구는 창업에 관련된 직접적 규제보다는 중소기업

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규제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상담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20조의 창업자본금 5000만원과 전문인력 2인 보유기준, 그리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 관련 시행령 9조의 창업자본금 50억 전문인력 2인 보유 기준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소기업에게 창업관련 인·허가 절차 대행이나 컨설팅을 하여주는 회사인 중소기업상담회사나 중소기업의 창업에 있어 자금을 투자형식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그 자체로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들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규제는 중소기업 창업자체에 대한 규제로서의 의미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이들 회사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가장 애로점인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여주고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 회사를 손쉽게 창업하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각에서 중소기업상담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요건인 자본금과 전문인력 보유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며 실제로 동 연구에서 시행한 수범자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점을 고려하여 연구진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논의의 대상이었던 쟁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법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 요건인 자본납입금 5000만원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제안한다.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중소기업자문회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이었으며 이들의 회사의 등록 요건 완화로 중소기업 컨설팅이 활성화되

어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며 현재 시행령 상의 자본납입금 5000만원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로 이러한 기준은 중소기업의 창업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단지, 산술적인 규제완화로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에 주목하여 사전적인 제한보다는 사후적인 관리감독에 충실함으로서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요건인 자본납입금 50억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제안한다. 초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설립될 당시의 기준은 20억이었다는 점과 중간에 100억으로 상향조정되었던 것도 중소기업의 활성화의 목적과 동시에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다시 자본금 50억으로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제안한다. 수범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중 50억원과 전문인력 2인 이상 보유의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온 점을 고려하여 볼 때로 이러한 기준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맞아 중소기업들의 존속이 어려운 상태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 외에 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제도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기의 기준을 완화하여야 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경모 외, 『중소기업창업론』, 신광문화사, 2006.
- 강현철·차현숙,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 김성진, 『한국의 중소기업』, 매일경제신문사, 2006.
- 김수용, 『입법평가지침』, 한국법제연구원, 2008.11.
- 김인숙 외, 『독일의 중소기업정책』, 마이크로, 1999.
- 김주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6.
- 박정구, 『글로벌경쟁시대의 중소기업관련법제 개선방향』, 중소기업연구원, 2004.
- 서종상, 『벤처·중소기업 창업실무』, 세학사, 2006.
- 이진국·차현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임명현, 『Evaluation of Legislation』, 한국법제연구원, 2008.
- 조병남 외, 『독일의 자영창업지원정책』, 마이크로, 2001.
-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사연구실, 『2007 중소기업지원제도 핸드북』, 2007.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 『2006년도 중소기업 웹-서베이(미시분야) 결과 및 분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구원, 2006.12.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과제』, 중소기업중앙회, 2007.10.
- 최성근 외, 『중소기업 관련법령의 체계화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0.
- 高橋眞 외, 『中小企業法の理論と實務』, 民事法研究會, 2007.

부 록

부록 1. 창업규제 관련 법령

(1) 법인설립절차 규제법령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상법	소상인에 대한 규제완화	제 9 조 (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호관련 규제	<p>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p> <p>제19조 (회사의 상호)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p> <p>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p> <p>제21조 (상호의 단일성)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p> <p>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p> <p>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p>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p>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동기를 신청할 수 있다.</p> <p>④상호의 가동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p> <p>[본조신설 1995.12.29]</p> <p>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p> <p>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p> <p>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p> <p>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p> <p>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p>
	<p>상업등기 관련 규제</p>	<p>제34조 (통칙) 본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호등기부에 등기한다.</p> <p>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p>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p>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p> <p>제37조 (등기의 효력)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95.12.29]</p> <p>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제39조 (부실의 등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p> <p>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 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p> <p>제172조 (회사의 성립)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p>
	<p>주식회사 설립절차 관련 규제</p>	<p>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p>②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p>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 요 내 용
		<p>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p> <p>③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p> <p>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9. 삭제 <1984.4.10> <p>②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84.4.10></p> <p>③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그 공고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p> <p>④회사는 제3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고, 재무제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경우에는 제450조에서 정한 기간까지 계속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후에도 누구나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p> <p>⑤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할 경우에는</p>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p>게시 기간과 게시 내용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p> <p>⑥회사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5.28></p> <p>[시행일 : 2010.5.29]</p> <p>제290조 (변태설립사항)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2.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p>제291조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p>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제289조제1항에 따라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09.5.28]</p> <p>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각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p>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p>제294조 삭제 <1995.12.29></p> <p>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p> <p>②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제296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p> <p>②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p> <p>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p> <p>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감사인의 선임청구)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p> <p>③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보</p>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p>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p> <p>④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 개정 1995.12.29]</p> <p>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①검사인은 제290조 각호의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p> <p>②검사인은 전항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등본을 각발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③검사인의 조사보고서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대한 설명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p> <p>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p> <p>[본조신설 1995.12.29]</p> <p>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①법원은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각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p> <p>②제1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은 그 주식의</p>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p>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에 관한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p> <p>③법원의 통고가 있을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는 때에는 정관은 통고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p> <p>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p> <p>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p> <p>②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이를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의 인증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2. 제289조제1항과 제290조에 제기한 사항 3.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4. 각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5. 제291조에 제기한 사항 <p>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를 종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9.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p>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p> <p>③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인수의 청약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p> <p>제304조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 ①주식인수인 또는 주식 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 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료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던 된다.</p> <p>②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p> <p>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①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 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p> <p>②전항의 납입은 주식 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p> <p>③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308조 (창립총회) ①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②제363조제1항·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제4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 4.10></p> <p>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이며</p>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p>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p> <p>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①정관으로 제290조에 계기한 사항을 정한 때에는 발기인인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p> <p>②전항의 검사인의 보고서는 이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제298조제4항 단서 및 제2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5.12.29></p>
	설립등기 관련 규제	<p>제317조 (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89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계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개업 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p>그 규정</p> <p>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p> <p>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기재한 사항</p> <p>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p> <p>9.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p> <p>10.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p> <p>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p> <p>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p> <p>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29></p> <p>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p> <p>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p> <p>③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p>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이사선임의무	<p>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5.28]</p> <p>제382조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③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4. 이사·감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 및 피용자가 이사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 및 피용자 <p>[전문개정 2009.1.30]</p> <p>제383조 (원수, 임기) ①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p> <p>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p> <p>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p>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요내용
		<p>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p> <p>④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 2, 제317조제2항 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제3항, 제335조의3 제1항·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 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제2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5.28></p> <p>⑤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526조 제3항, 제527조 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 제1항 및 제527조의5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28></p> <p>⑥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 제1항, 제393조 제1항 및 제412조의3 제1항에 따른 이사회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p>
	감사선임 관련 규제	<p>제409조 (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p> <p>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p>

창업관련법령	창업규제영역	주 요 내 용
		<p>을 정할 수 있다. <신설 1984.4.10></p> <p>④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5.28></p> <p>⑤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8></p> <p>⑥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조, 제412조의2 및 제412조의4제1항·제2항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로 본다. <신설 2009.5.28></p>

(2) 창업지원 관련 법령

창업관련 법률명	주 요 내 용
중소기업기본법	제 5 조 (창업 촉진)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p>제10조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p>초기기업에 대한 투자</p> <p>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p> <p>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p> <p>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p> <p>②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p>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p> <p>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이 경우 사목과 아목은 대표이사에게만 적용한다.</p> <p>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p> <p>나. 파산 선고로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p> <p>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p> <p>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바. 이 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등록취소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책임이</p>

창업관련 법률명	주 요 내 용
	<p>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 또는 창업 투자 업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아.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또는 임직원</p> <p>자. 제12조에 따라 말소하기 전에 제43조에 따른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말소 당시의 임원(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 후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등록 말소일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p> <p>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p> <p>4. 창업투자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창업투자회사에 한한다)</p> <p>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의 알선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p>②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	<p>제13조 (창업 지원) ①정부는 가맹사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이하 “가맹사업창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정부는 가맹사업창업자에게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 내용
	<p>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p>	<p>제 4 조 (창업 등의 활성화)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기능장령법</p>	<p>제10조 (창업자금 대부) ①노동부장관은 명장,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상환 기일 전에 그 대부금을 회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위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영업을 폐지한 경우 3. 대부받은 자금을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자금의 대부 및 회수절차 기타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기상산업진흥법</p>	<p>제 6 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①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건설팅업 또는 기상장비업(이하 “기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기상청장에게 등록하</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p>여야 한다.</p> <p>②기상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상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기상예보업 등에 대한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p>	<p>제 4 조 (창업관련 각종 인·허가등의 통합고시) ① 제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의 인가·허가·등록·신고 및 승인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 및 절차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및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p>	<p>제 9 조 (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p>
<p>문화산업진흥기본법</p>	<p>제 7 조 (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 내용
<p>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p>	<p>제 8 조 (창업지원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소기업중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및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p> <p>제 8 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p> <p>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p>
<p>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p>	<p>제15조 (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신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p>	<p>제 8 조 (소프트웨어 창업의 활성화)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게 같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p>제 8 조 (여성의 창업지원특례)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정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에 있어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p> <p>③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p>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p>제 7 조 (창업의 활성화) ①정부는 온라인콘텐츠사업의 창업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제 4 조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p>제12조 (창업의 활성화)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사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p>

창업관련 법률명	주 요 내 용
	②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p>제 6 조 (창업 및 시설·유통의 현대화 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p>제 8 조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p> <p>②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함에 있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p> <p>③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장소 등의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p>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의 규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p>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p> <p>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 내용
	<p>7. 방송업</p> <p>8. 전기통신업</p> <p>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p> <p>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p> <p>11. 연구개발업</p> <p>12. 광고업</p> <p>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p> <p>14. 전문디자인업</p> <p>15. 전시 및 행사대행업</p> <p>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p> <p>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p> <p>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p> <p>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p> <p>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p> <p>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p> <p>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p>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p> <p>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p> <p>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p> <p>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p> <p>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p>

창업관련 법률명	주 요 내 용
	<p>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법』 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 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p> <p>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p> <p>다. 『여성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p> <p>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p> <p>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 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②제1항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 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p>1. 해당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p> <p>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p> <p>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p> <p>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p> <p>③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p>

창업관련 법률명	주 요 내 용
	<p>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5. 삭제 <2007.12.31></p> <p>6.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p> <p>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에 한한다)</p> <p>②삭제 <2008.12.26></p> <p>③삭제 <2003.12.30></p> <p>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p> <p>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p> <p>1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p> <p>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p> <p>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같은 법 제14</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p>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p> <p>4.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p> <p>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p> <p>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p> <p>⑦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p> <p>⑧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p> <p>제15조 삭제 <2008.12.26></p> <p>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 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p>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p>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p>③삭제 <2006.12.30></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p>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p> <p>②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

창업관련 법률명	주 요 내 용
	<p>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p> <p>③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을 한 자가 새로이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p> <p>⑤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사용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분명하지 아니한 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사용명세서미제출가산세로 부과한다.</p> <p>⑥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규정된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p>4.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 당해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p> <p>5.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p> <p>⑦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p> <p>⑧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⑨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p> <p>⑩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 내용
	<p>한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⑪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⑫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다.</p> <p>⑬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p>	<p>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생산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동일분야의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으로서 선정 당시와 동일 분야의 중소기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동일 분야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p>제32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개정 2008.12.19>)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 내용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p>제63조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p>제 6 조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①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p> <p>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8.3]</p> <p>제10조의2 (주식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대한 특례) ①벤처기업인 주식회사의 자본은 『상법』 제3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②자본을 5천만원 미만으로 하여 벤처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p> <p>제11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 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p>②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p>

창업관련 법률명	주 요 내 용
	<p>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p>④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p>[전문개정 2007.8.3]</p>

창업관련 법률명	주요내용
	<p>제16조 (교육공무원 등의 창업 시 휴직 허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p>②제1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3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30></p> <p>③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그 대학이나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07.8.3]</p> <p>제16조의2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p>

부 록

창업관련 법률명	주 요 내 용
	<p>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력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07.8.3]</p>

부록 2. 수범자 실태조사 설문문항

중소기업 창업 관련 일반적 규제에 대한 인식

1. 귀하께서는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임직원이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 1번의 질문에 응답이 “예” 이신 경우 몇 년 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임직원으로 계셨습니까?

_____년

3. 귀하께서는 현재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셨거나 또는 그 이전에도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문 3-1로 이동
- ② 아니오

3-1. 귀하가 실제 창업 이전에 창업을 위해 준비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6개월 미만
- ② 6개월-1년 미만
- ③ 1년 이상-3년 미만
- ④ 3년 이상-5년 미만
- ⑤ 5년 이상

부 록

4. 귀하의 창업 업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생활용품
- ② 석유화학제품
- ③ 비금속·금속류, 기계장비
- ④ 의료정밀기기
- ⑤ 컴퓨터 사무기기
- ⑥ 전기·전자·통신장비
- ⑦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
- ⑧ 연구개발, 과학서비스업
- ⑨ 바이오·환경산업
- ⑩ 디자인산업
- ⑪ 기타 제조업
- ⑫ 서비스업
- ⑬ 부동산 관련업
- ⑭ 기타 서비스업
- ⑮ 기타 산업

5.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30대
- ② 30-40대
- ③ 40-50대
- ④ 60-70대
- ⑤ 기타

중소기업창업 규제 관련 인식

1. 귀하는 중소기업을 창업을 하거나 준비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자금의 준비 및 조달
- ② 창업관련 규제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의 복잡성
- ③ 제품개발
- ④ 인력의 확보
- ⑤ 공장부지 확보
- ⑥ 마케팅, 홍보 및 영업
- ⑦ 시설 및 설비확보
- ⑧ 관련 법령의 정보 부족

2. 귀하는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또는 창업지원제도가 강화하여야 할 역할과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가능)

- ① 정부정책자금 및 지원규모의 확대
- ② 창업관련 규제 및 인허가등 행정절차의 간소화
- ③ 창업정보제공의 강화
- ④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의 확대
- ⑤ 창업보육센터의 확대강화
- ⑥ 세금감면확대
- ⑦ 공장용지공급여건 개선
- ⑧ 산학협력강화
- ⑨ 전문인력 교육 및 지원강화

⑩ 판로·홍보·컨설팅 지원확대

3.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어느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지원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잘 지원되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지원되지 않고 있다.
- ⑤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다.

4. 현재 상법에 의하면 회사 설립시 자본금 5억 이상이면 그 기업이 소규모회사에 해당하더라도 등기이사를 3인 이상 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규제가 실제 기업현실을 무시한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예 ☞ 문 4-1로 이동
- ② 아니오

4-1. 만일 소규모회사 설립시 등기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담을 개선하여야 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이사를 1인 이상만 선임하는 것으로 규율한다.
- ②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할 회사의 자본금 규모기준을 높여 규제를 완화한다.
- ③ 3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해야 할 회사의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규모회사 기준에 따라 종사자수를 반영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5. 중소기업의 창업시 일정 지역 내에서 동일·유사한 상호나 등록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불필요한 규제로써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불필요한 규제도 아니며 개선할 필요도 없다.
 - ② 동일 또는 유사상호를 중복 사용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넓혀야 한다.
 - ③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 ④ 중소기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하여야 한다.
6.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5천만원의 최저자본금을 필요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규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현행 최저 자본금기준은 적절한 것이다.
 - ②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여 무자본(혹은 100원) 창업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③ 최저자본금기준을 5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오히려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기준을 현행보다 높여야 한다.
7. 현행법에 의하면 회사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작성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은 각각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규모회사 창업시에는 이러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귀하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① 소규모회사 창업시에도 그러한 규제는 필요한 것으로 존치하여야 한다.
 - ② 소규모회사를 창업하는 경우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조차도 불필요한 것으로써 폐지되어야 한다.

③ 소규모회사 창업시에는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이 필요하지만 공증인의 인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공증인의 인증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좋다.

8. 소규모회사 창업이라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면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귀하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① 현행 제도는 적절하다.

② 회사가 정관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법이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좋다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규모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아예 감사의 선임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창업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1.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의 창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어느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 지원되고 있다.
- ② 어느 정도 잘 지원되고 있다.
- ③ 보통이다.
- ④ 잘 지원되지 않고 있다.
- ⑤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다.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현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는

① 대학·연구기관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②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 ③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문 2-1로 이동
- ② 아니오

2-1.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보기 중 모두 골라주세요.

-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 ②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 ③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3. 현행법에 의하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공계 교수나 연구원에게 대학 및 연구소의 실험실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나 연구원 이외의 석사과정생이나 박사과정생에게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① 전혀 불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 ③ 박사과정생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한다.
- ④ 석사과정생에게도 허용해야 한다.
- ⑤ 학부과정생에게 허용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4. 현행법에 의하면, 벤처기업이 창업보육센터나 신기술창업집적지역내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공장설립은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보다 더 엄격하게 승인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 ②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기보다는 대학의 장이나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승인뿐만 아니라 대학의 장이나 연구기관장의 승인도 없어야 한다.
- ⑤ 사전 승인보다는 사후 통보가 더 타당하다.

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투사 창업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1.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상담회사란 경영 지도사, 경영학 박사, 변호사, 자연과학 전공 박사 및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의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문 1-1로 이동

1-1.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의뢰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직접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실 의향이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 현재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금이 5천만원이상 및 전문인력 2인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문 2-1 및 2-2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2-3, 2-4 및 2-5로 이동

2-1. 완화를 위해 납입금은 얼마로 조정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4천만원
- ② 3천만원

2-2. 완화를 위해 전문가 역시 1인 보유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3.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상담 서비스 강화 측면
- ② 부실 상담업체의 난립 방지

2-4. 납입금은 얼마로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5천만원 유지
- ② 현행 5천만원 보다 강화

2-5. 전문가는 몇 명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2명 유지
- ② 3명 이상으로 강화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합니다.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로서 납입금이 50억 원 이상 및 전문 인력 2인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창업

투자회사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문 3-1 및 3-2로 이동
- ② 아니오 ☞ 문 3-3 및 3-4로 이동

3-1. 완화를 위해 납입금은 얼마로 조정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40억 원
- ② 30억 원

3-2. 완화를 위해 전문가 역시 1인 보유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3. 납입금은 얼마로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40억 원 유지
- ② 현행 40억 원 보다 강화

3-4. 전문가는 몇 명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행 2명 유지
- ② 3명 이상으로 강화

중소기업 사업 전환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1. 귀하는 영위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전환을 하셨거나 고려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 ② 없다

2. 사업전환 지원대상 기업의 현재 영위업종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으로 한정하였으나, 현재에는 대부분의 업종으로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전환 지원대상 업종의 제한 폐지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적절하다 ⇨ 2-1번으로 이동
- ② 부적절하다 ⇨ 2-2번으로 이동

2-1. ‘적절함’으로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폭넓은 사업전환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 ②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
- ③ 사업전환을 위하여 폐업과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를 절감
- ④ 사업전환을 통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함

2-2 ‘부적절함’으로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인기있는 업종에서 경쟁이 치열해짐
- ② 사업전환지원을 받은 업체와 그렇지 못한 선발업체간의 형평성이 문제됨

- ③ 사업영역은 각 기업의 책임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불필요함
- ④ 지원대상 업종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사업전환시 지원을 폐지하여야 함

3. 사업전환을 통해 진출하려는 업종을 확대하되 지원배제 업종을 일부 업종(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산업용 세탁업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업종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 ☞ 3-1로 이동
- ② 부적절하다 ☞ 3-2로 이동

3-1. ‘적절함’으로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부 소비적 업종에 대한 지원은 불필요함
- ② 개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민경제발전이라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함
- ③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함
- ④ 사업전환대상의 확대는 사양산업(광업) 또는 경쟁과열업종(건설업)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

3-2. ‘부적절함’으로 답하신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원대상을 일부 전략업종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업종에 대해서 사업전환 지원을 하여야 함
- ③ 지원대상을 업종에 따라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시장포화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함
- ④ 지원대상의 확대는 시장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음

4. 건설업 및 광업을 사업전환지원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① 적절하다
- ② 부적절하다

(이유: _____)

5. 사업전환지원절차의 심의과정에서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가 폐지되어 사업전환신청에서 지원결정까지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하다
- ② 더 단축될 필요가 있다
- ③ 심의과정을 30일로 유지하거나 절차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 ④ 기간과 관계없이 사업전환계획심의위원회의 존치가 필요하다